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619-01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 디지털성폭력, 데이트 폭력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이화진(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강지영(제주여성상담소 성인권교육팀장)

정여진(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박지은(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조원)

본 보고서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구 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2020 제주특별자치도 연구 용역 과제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
출합니다.

2020년 10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 무 숙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여성폭력 관련 법 규정 및 정책은 폭력 범주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 관한 것으로 협소하게 규정해 왔음
- 최근 남성과 여성이라는 사회 구조적 성 불평등 관점에서 비롯된 젠더폭력이 다양한 양상을 지닌 채 발생하고 있음
 -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 미투(Me Too) 운동의 특성을 반영한 직장 내 성희롱, 디지털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 젠더 관점에 기반한 다양한 폭력의 양상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의 정의와 법제화 및 정책수립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음
- 제주지역 여성폭력 관련 정책은 국가의 정책기조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본으로 기존의 3가지 유형의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관한 보호 및 지원에 그치고 있음
- 기존의 지역 내 여성폭력 실태 관련 연구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범주를 중심으로 다루었을 뿐 최근의 사회변화를 반영하는데 부족함
-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적인 차별에 기반한 젠더폭력의 최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그동안 실태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디지털성폭력과 데이트 폭력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함

2. 연구 내용

- 여성폭력 관련 정책 및 현황 분석
 - 중앙정부의 젠더폭력 관련 주요 정책현황 분석
 - 젠더폭력(디지털성폭력, 데이트 폭력) 법 제정 현황 분석

- 해외의 관련정책 및 법제도 검토
- 디지털성폭력, 데이트 폭력 분야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자료 검토

○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 파악

- 젠더폭력 일반(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직장 내 성희롱 등)
- 디지털성폭력 : 디지털성폭력 관련 인식, 피해경험 및 대응, 가해경험, 폭력피해 대응, 정책수요
- 데이트 폭력 : 데이트 폭력 인식, 경험, 대응, 정책수요

○ 도내 젠더폭력 실태파악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 피해자 지원방안, 도민의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 등

3. 연구방법

가. 연구절차

○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방향 및 내용 구성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 선행 조사연구 검토 • 관련 분야 정책 현황 검토 •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3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회)
4단계	조사 실시	⇒	• 설문조사 (16세 이상 50세 미만 남녀 530명) • 심층면접 (폭력 피해자 10명, 관련기관 종사자 5명)
5단계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 도출	⇒	• 조사 결과 분석 및 집필

나. 연구방법

○ 여성폭력 관련분야 문헌자료 검토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등)

○ 설문조사

- 대상 : 도내 16세 이상 50세 미만 남녀 530명

- 내용 :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피해경험 및 대응, 피해 영향, 지원서비스 이용실태, 정책수요 등

- 디지털성폭력 : 디지털성폭력 인식, 관련법·제도 인지, 디지털성폭력 경험 및 대응, 정책수요

- 데이트 폭력 : 연인간의 통념, 데이트 폭력 인식, 데이트 폭력 경험 및 대응, 필요한 지원 및 정책수요

○ 심층면접

- 대상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담당자, 피해경험자, 기타 관련 기관 담당자 등

- 내용 : 폭력 피해 경험, 피해대응 및 영향, 피해자와의 관계, 정책수요 등

제2장 젠더폭력 개념 및 정책동향

1. 젠더폭력의 개념 및 범위

○ 젠더폭력이란 전반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권력이 성별 위계질서와 연관하여 작동하는 폭력이라는 인식을 담은 개념으로 국제법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젠더폭력의 법적 정의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여성폭력의 범위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함

○ 본 보고서에서는 젠더폭력의 범주인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등 기존에 주로 연구된 범주 이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폭력과 데이트 폭력을 중심으로 실태파악과 정책제안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함

2. 디지털성폭력 관련법 및 정책

- 디지털성폭력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행사하는 성범죄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따위가 이에 속함
- 디지털성폭력 관련법으로는 불법 촬영물의 제작, 유포와 관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3. 데이트 폭력 관련법 및 정책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연인관계라는 특성으로 범죄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움
- 가정폭력방지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연인관계에 발생하는 폭력은 별도의 법적장치가 부족하고 통상적인 폭력 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 배우자폭력은 그동안 많은 연구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연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나 심층적인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음
- 정부는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등 신종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대두된 젠더폭력의 처벌 및 보호체계 마련”을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하고 이에 대한 피해방지 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조치 강화를 위한 관련부서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함

4. 해외사례를 통해본 시사점

- 디지털성폭력 관련정책은 미국과 영국에서 정책기조로 활용하는 방안 중 피해 영상물 유통에 관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묻도록 조치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를 강화해 나갈 때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성이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영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손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플랫폼 구축 및 운영방안도 고려할만함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에 관한 대응을 위해 영국 가정폭력방지법의 데이트 폭력 행위를 확대 적용하는 방법을 참조할만하고 특히 새로운 파트너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의 시행은 관련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을 고민한 필요가 있음
- 또한 약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독일의 폭력보호법의 기본정신을 참고로 피해자의 주거를 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제3장 젠더폭력 현황

1. 전국 젠더폭력 현황

- 검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전국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3만 건 이상을 차지함
-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디지털성폭력에 포함되는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2017년 이후 약 20%(2018년 20.2%, 2019년 19.0%) 정도를 차지하며 최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의 발생건수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전국 데이트 폭력 현황은 최근 3년간 약 14,000건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폭력범죄(66.0%)가 가장 많고 사기나 횡령 절도 등 지능범죄가 12.0%를 차지함
- 폭력범죄나 지능범죄를 기준으로 볼 때 최근 3년간 발생비율이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 제주지역 젠더폭력 현황

-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디지털성폭력의 비율은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가 2019년 기준으로 (전국 19.0%, 제주 13.7%)로 전국에 비해 약간 낮고, 통신매체 음란 범죄는 (전국 4.3%, 제주 4.6%)로 전국수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발생비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제주지역 데이트 폭력은 경찰청 관련범죄 검거 건수로 볼 때 약 100건 내외로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범죄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해마다 약 60%선에 이르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경범죄 등 기타와 체포·감금·협박이 상당 비율로 집계되고 있음

제4장 젠더폭력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결과

가. 젠더폭력 인식/경험/대응

- 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데이트 폭력(연인관계, 디지털 폭력, 부부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항목을 선정하여 5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으로 인식)로 조사함
 -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폭력 인식이 높은 항목은 디지털 폭력인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평균 4.14) 라는 항목이고 가장 인식이 낮은 항목은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평균 3.31)이라는 항목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해와 성매매의 폭력성에 대한 인식은 낮다고 할 수 있음
 -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항목에서 각각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여 남성들이 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젠더폭력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폭력 경험이 높은 비율로 조사된 유형은 성희롱(18.1%), 성추행(10.6%), 가정폭력(6.0%)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 젠더폭력 경험도 대부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성추행(여성 14.5%, 남성 4.7%)과 성희롱(여성 25.9%, 남성 6.6%), 스토킹(여성 8.5%, 남성 0.9%) 순으로 조사되어,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서 남성들의 젠더폭력 경험이 드러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디지털성폭력 경험은 10대(3.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사이버 환경에서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많음이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남
- 젠더폭력 대응방식은 전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음(43.0%)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친구에게 도움 요청(19.5%), 경찰에 신고(10.7%), 가족에게 도움 요청(10.1%)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4.0%로 비교적 적은 비율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40.7%)보다 남성(64.3%)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높아 남성 응답자의 상당수가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이는 경험한 젠더폭력 유형이 대부분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성희롱, 성추행, 스토킹)이고,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문제 삼기 어렵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됨

나. 디지털성폭력 인식 및 경험

1) 컴퓨터 및 스마트폰 이용 시간/교육 경험

- 컴퓨터 이용시간은 평일(남성 2.7시간, 여성 1.7시간)과 주말(남성 2.5시간, 여성 1.2시간)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길게 조사되었고 연령별로는 평일엔 30대(2.6시간), 주말엔 10대(2.6시간)의 이용시간이 길게 조사됨
-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평일엔 여성(3.9시간)이 남성(3.6시간)보다 사용시간이 약간 길었고 연령별로는 20대가 하루 평균 5.0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정보통신 윤리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절반(43.2%)정도가 수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응답자의 10.6%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남성(6.6%)보다 여성(13.2%)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경험이 있는 경우 연령별로는 10대(59.0%)가 가장 높고 40대(31.4%)가 가장 수강경험이 낮아 연령이 높을수록 정보통신 윤리교육 경험이 적음
- 폭력예방교육이나 성평등 교육 수강 유경험 비율은 74.5%로 비교적 높았고, 여성(76.3%)이 남성(71.8%)보다 약간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84.6%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폭력예방교육 경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됨

2)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률/제도/범죄 인식

-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약 14%,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 75.3%를 차지하여 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성별 연령별 차이는 적게 나타남
- 디지털성폭력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90%이상 안다고 응답해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음란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 항목에서 79.2%가 안다고 응답해 가장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 영상 전달은 범죄’(‘모른다’ 여성 3.2%, 남성 7.5%) 항목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 촬영 행위 처벌’(‘모른다’ 여성 2.2%, 남성 7.5%)는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법과 제도에 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성폭력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어도 피해자 책임’(평균 3.39)에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 ‘가해자를 밝히는 것이 너무 어려우며 처벌도 매우 가볍다’(평균 3.12)는 항목에 동의 정도가 가장 낮게 조사됨
 - 성별로는 다수의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인식도를 보임

3) 디지털성폭력 피해 경험/대응

□ 음란물, 메시지, 성희롱 경험

- 사이버 상에서 성적 메시지나 음란물을 받거나 성희롱 경험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 받아본 적이 있다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12.6%, 성별로는 여성(13.6%)이 남성(11.3%)보다 수신경험이 있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음란물 수신 경험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나타남
- 음란 메시지 발신자는 전체적으로 기타(알 수 없음)(22.6%)와 온라인을 통해 아는 사람(22.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카페 회원이나 블로거(14.0%), 게임 또는 동호회 멤버(12.9%), 주변지인(10.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모르는 사람인 기타(30.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남성은 온라인을 통해 아는 사람(30.3%), 게임 혹은 동호회 멤버(27.3%), 동성친구(12.1%)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의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영역의 차이가 발견됨

- 메시지 발신매체는 전체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31.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메일이나 문자·전화(30.8%),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메신저 등)(14.4%) 순으로 나타남

□ 디지털성폭력 불안으로 인한 행위

-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불안으로 'SNS 계정의 공개설정 범위재설정'(29.4%), '온라인에서 내 일상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음'(21.5%), '몰래카메라가 있을까 봐 두려워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장소 이용 주저함'(21.1%)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들이 훨씬 높게 나타남

□ 피해 경험 시 대응

- 디지털성폭력 피해 시 대응 방법으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음(34.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경찰에 신고(11.9%), 해당 사이트 탈퇴(10.7%), 해당 사이트 아이디 새로 작성(9.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은 해당 사이트 완전 탈퇴(14.3%)와 아이디 새로 작성 재사용(12.5%) 순으로 응답한 반면, 남성은 경찰에 신고(17.9%)와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 요청(14.3%) 순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음
-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41.4%)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24.1%),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17.2%) 순으로 조사되었고, 성별로는 여성(29.4%)은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남성(66.7%)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4) 디지털성폭력 발생원인 및 필요한 지원

- 디지털성폭력 발생원인은 관련법의 처벌조항 미비(32.6%),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21.9%), 성인권이나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16.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관련법의 처벌조항 미비함(여성 36.6%, 남성 26.8%),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여성 24.0%, 남성 18.8%) 항목에서는 여성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디지털성폭력 피해 시 원하는 도움에 관한 응답 1순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법적 제재(34.9%), 피해자 보호 및 지원(23.2%),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17.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적 제재(여성 40.4%, 남성 26.8%)와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여성 18.6%, 남성 15.0%)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남성(27.7%)이 여성(20.2%)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5) 디지털성폭력 가해 행위

○ 디지털성폭력 가해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 ‘야한농담’이나 ‘부모비하’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항목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임

○ 남성(9.9%)이 여성(2.8%)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의 응답률을 기록함

- 연령별로는 10대(12.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20대(6.5%) 순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야한농담’이나 ‘부모비하’와 같은 행위를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남

○ 이용 매체는 전체적으로 게임채팅(41.0%)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메일이나 문자·전화(17.9%),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SNS(15.4%), 인스턴트(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다이렉트메시지 등) 메신저(15.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이메일이나 문자·전화(30.8%) 이용이 가장 많고 남성은 게임채팅(53.8%)을 통한 가해행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해행위 후 심리적 반응으로는 ‘아무생각도 들지 않았다’(26.7%),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들었다’(20.0%),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16.7%), ‘별일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16.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55.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38.1%), ‘별일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23.8%)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다. 데이트 폭력

1) 연인관계 통념에 대한 인식

- 연인간의 통념에 대한 조사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두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 연인 간의 통념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음
-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을 정도라면 폭력 아님’(평균 3.65) 항목과 성적인 폭력인 ‘원치 않는 섹스 동영상이나 나체사진 촬영’(평균 3.64)이 가장 높은 폭력 인식도를 나타냈고, 경제적 폭력인 ‘호의로 빌려준 돈이라도 갚지 않으면 경제적 폭력’(평균 2.96) 항목과 언어폭력인 ‘연인의 말에 위협과 모욕을 느낀다면 데이트 폭력’(평균 3.07) 항목에 가장 낮은 인식을 나타냄
-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폭력인식이 높게 나타남

2) 데이트 폭력 경험

- 데이트 폭력 경험 조사 결과 행위통제 항목인 ‘휴대폰이나 이메일 점검’(8.9%), ‘웃차림 간섭이나 제한’(8.3%)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언어폭력인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사용’(7.5%),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고함’(5.5%), 그리고 성적 폭력으로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다리 등) 만지는 행위’(5.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은 ‘웃차림 간섭이나 제한’(9.1%), ‘휴대폰이나 이메일 · SNS 점검’ (7.9%)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휴대폰이나 이메일 · SNS 점검’(10.3%),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사용’(8.5%)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웃차림 간섭이나 제한’(여성 9.1%, 남성 7.0%), ‘허락 없이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다리 등) 만지는 행위’(여성 7.6%, 남성 2.3%), ‘섹스하기 위한 완력이나 흥기 사용’(여성 0.9%, 남성 0.5%) 항목이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음
- 남성들이 ‘상대방으로부터 휴대폰이나 이메일 점검’(여성 7.9%, 남성 10.3%),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사용’(여성 6.9%, 남성 8.5%),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고함’(여성 4.7%, 남성 6.6%), ‘빌려간 돈 갚지 않음’(여성 0.9%, 남성 3.8%) 항목에서 여성보다 높은 비율의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데이트 폭력 피해 시 대응 방법

- 데이트 폭력 경험 시 상대와의 관계 대응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27.4%), 다음으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감’(22.6%), ‘가만히 있음’(12.9%) 순으로 나타나 주로 소극적 대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임
 - 성별로는 여성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32.5%),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감’(15.7%)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감’(36.6%), ‘가만히 있음’(17.1%),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17.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데이트 폭력 경험 이후 외부적 조치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51.9%)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헤어지겠다고 통보 후 연락 두절’(15.4%), ‘가족·친구에게 알리고 도움 청함’(14.4%) 순으로 나타남
- 데이트 폭력 경험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다고 생각’(43.9%)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상대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19.7%), ‘연인 간 자연스러운 행위로 생각’(15.2%)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 차이는 미미함

라. 젠더폭력 정책 수요

1) 기관 인지도/여성폭력의 원인

- 여성폭력 지원 기관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경찰서(38.2%), 여성긴급전화 1366(22.2%), 성폭력 상담소(18.9%) 순으로 조사됨
 - 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여성 25.7%, 남성 16.5%)과 해바라기 센터(여성 9.5%, 남성 5.8%), 남성은 경찰서(여성 35.6%, 남성 42.5%), 성폭력 상담소(여성 18.3%, 남성 20.0%), 가정폭력 상담소(여성 11.0%, 남성 14.9%)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 여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약’이 51.3%로 가장 높았고, ‘범죄자에 대한 관리 소홀’(14.0%), ‘가부장적 사고와 문화’(13.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약’(여성 53.9%, 남성 47.4%) 항목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남성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 소홀’(여성 12.0%, 남성 16.9%)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2) 정책 인지도/만족도/정책수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방지 점검(62.4%),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40.0%),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39.8%), 여성폭력 핫라인대응시스템 구축·운영(39.7%) 순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여성 45.9%, 남성 31.3%),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 점검(여성 68.4%, 남성 53.6%),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여성 28.2%, 남성 18.0%)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정책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나타냄
- 여성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방지 점검(평균 2.72),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구축·운영(평균 2.70),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평균 2.6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여성 2.83, 남성 2.29)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방지 점검(여성 2.80, 남성 2.56)에서 남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응답으로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 가해자의 처벌강화(39.8%)와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21.6%), 가해자 접근금지 및 신변보호 강화(18.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 피해자를 위한 영상물 삭제지원 확대(31.9%), 디지털성폭력 신고 포상제 실시(14.2%),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13.9%)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제5장 제주지역 젠더폭력 피해자 및 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가. 피해자 대상 심층면접 조사 결과

〈젠더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결과〉

구분	주요 결과
· 일상적 불안	· 거주 공간, 학교, 길거리, 등 공공영역에서 불안감 · 직·간접적으로 성적 굴욕감, 불쾌감 경험 · 주변사람들의 경험 다수 진술 · 피해경험 시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 기피함
· 디지털성폭력 경험 및 대응	· 디지털 환경에서 여성 혐오, 성적 대상화 심각 · 디지털성폭력에 불안감으로 활동 제약과 위축 경험 · 디지털성폭력 장난으로 인식하는 경우 많음 ·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남성끼리는 피해자 공감하기 어려움 · 피해 경험 사례 : 불법촬영, 몸캠, 피해영상물 유포, 유포불안, 사이버성희롱, 이미지 합성, 온라인 그루밍, 채팅어플 상 피해 등 다양함 · 피해자 : 자기 탓으로 생각, 개인정보 유출, 대인관계 불신, 말하기 어려움 호소
· 데이트 폭력 경험 및 대응	· 이별통보 시 피해 경험, 스토킹, 행위통제, 성적폭력, 경제적 폭력 등 ·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폭력은 주로 여성이 경험 · 피해 경험 시 개인적 해결 혹은 친구에게 도움, 대응하지 않음 · 지역특성으로 소문날까봐 드러내지 못함 · 헤어지고 난 후에 폭력임을 알게 됨
· 정책수요	·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 2차 피해 방지 등 인식개선 필요 - 피해상황에 대처방법, 폭력행위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 전달 · 청소년 피해자 상담·지원 : 보호자 동의 없이 익명으로 지원 가능해야 함 · 트라우마 치료 지원, 가해자와의 분리, 생계비 지원 등 보완 · 디지털성폭력 예방, 여성혐오 현상도 처벌해야 함 - 청소년 또래 문화에서 발생하는 적절한 대처 필요

나. 여성폭력 지원 기관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 결과

〈여성폭력 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구분	주요 결과
· 피해발생 양상	· 디지털성폭력 - 피해 영상물 유포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되므로 대인관계 심각한 문제 발생 - 유포 불안으로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 많음 - 10대는 채팅어플을 통한 그루밍 피해, 20대는 연인이나 선후배 관계에서 디지털성폭력 발생 · 데이트 폭력 - 통제폭력과 신체폭력 협박, 경제적 폭력 등 동반해서 나타남 - 연인관계에서 협박도구로 비동의 촬영물 유포 사용
· 피해자 특징 및 피해의 영향	· 피해자의 심리상태 - 당혹감, 대인관계불신, 자책감 · 피해의 영향 - 행위통제나 거주지 제약, 강제 결혼으로 연결되기도 함
· 대응이 어려운 이유	· 지역의 특수성으로 알려질까봐 두려워 상담하기까지 오래 걸림 · 강한 공동체 사회에서 주변인들도 도움을 주기 어렵고 외면하기 쉬움 · 촬영물의 유포불안으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함 · 심리적·정서적 고립 상황에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움
· 정책수요	· 교육의 내실화 - 초등학생 포함 디지털성폭력, 폭력예방교육 필요 -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강화 교육 필요 - 교육청 내 성평등 전담팀 설치 필요 · 기관 간 협력 - 행정부서, 교육청의 협력으로 교육 강화 방안 마련 - 경찰과 피해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수사참여 인력의 인식강화 ·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필요 · 법적제도 보완 : 데이트 폭력 관련 법적 공백 보완 필요

제6장 정책제안

1. 조사결과 시사점

가.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디지털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련법과 제도의 인식 부족

-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적인 환경에서 정보통신 윤리교육 경험은 전체적으로 절반(43.2%)정도가 수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응답자의 10.6%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연령별로는 10대(59.0%)가 가장 높고 40대(31.4%)가 가장 낮게 나타나 여전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할 수 있음

- 폭력예방교육이나 성평등 교육 경험은 전체적으로 74.5%로 정보통신 윤리교육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30대 71.9%, 40대 60.7%) 폭력예방교육 경험이 적어 공직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일반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할 수 있음
-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약 14%,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 75.3%를 차지하여 새롭게 개정된 조항이 많은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는 대체로 부족하다 할 수 있음, 특히 ‘음란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 항목에서 79.2%가 안다고 응답해 가장 인지도가 낮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법에 대한 인지가 낮게 조사되어 음란물 영상 전달이나 상대방 몰래 영상물을 촬영하는 행위가 명확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2) 디지털성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에서 성별차이 크고 여성들의 불안감 높음

- 사이버 상에서 성적 메시지 혹은 음란물을 받거나 성희롱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12.6%를 차지하였고 음란 메시지 발신자는 기타(알 수 없음 22.6%)와 온라인을 통해 아는 사람(22.6%)이 가장 높게 나타나 사이버 상의 성폭력 가해대상이 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모르는 사람 30.3%, 주변지인 13.3%)이 남성(온라인을 통해 아는 사람 30.3%, 게임 혹은 동호회 멤버 27.3%) 보다 익명의 대상으로부터 경험하는 디지털성폭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불안으로 행위가 위축되는 경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SNS 계정의 공개설정 범위 재설정’(36.3%), 몰래카메라가 두려워 공공화장실이나 공공장소 이용 주저함’(33.1%) 온라인에서 일상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음’(27.1%) 항목이 높게 나타나 여성들의 디지털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다 할 수 있음
- 디지털성폭력 피해 시 대응 방법으로 여성은 해당 사이트 완전 탈퇴(14.3%)와 아이디 새로 작성 재사용(12.5%) 순으로 응답한 반면, 남성은 경찰에 신고(17.9%)와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 요청(14.3%) 순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고,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여성(29.4%)은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남성(66.7%)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은 사이버 상의 이용방법이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반면, 남성은 디지털성폭력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3) 사이버 상 10대의 야한농담, 부모비하 많고 가해행위는 게임이나 채팅을 통해 실행

- 디지털성폭력 가해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 '야한농담'이나 '부모비하'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남성(9.9%)이 여성(2.8%)에 비해 높았고 특히 1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10대 청소년의 야한 농담이나 부모비하가 가해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채 사용되고 있다 할 수 있음
- 디지털성폭력 가해행위 경험은 성별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성은 이메일이나 문자·전화(30.8%)를 통한 행위가 많고 남성은 게임채팅(53.8%)을 통한 가해행위 경험이 많아 매체의 이용에 성별패턴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고, 가해행위 후 심리적 반응으로는 여성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55.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38.1%), '별일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23.8%)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로 감정적인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

4) 디지털성폭력 발생원인 및 필요한 지원

- 디지털성폭력 피해 시 원하는 도움에 관한 응답으로는 1순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법적 제제(여성 40.4%, 남성 26.8%), 피해자 보호 및 지원(남성 27.7%, 여성 20.2%),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여성 18.6%, 남성 15.0%)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고 여성들은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영상물 삭제를 더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음

5) 데이트 폭력 경험 및 대응 : 성별로 매우 다르고 소극적, 관계 안에서 해결 경향 높음

- 데이트 폭력 경험 조사 결과 여성은 '웃차림 간섭이나 제한'(9.1%), '휴대폰이나 이메일·SNS 점검'(7.9%)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휴대폰이나 이메일·SNS 점

감'(10.3%),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사용'(8.5%)에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데이트 폭력의 피해가 여성만의 일이 아니지만 여성과 남성의 폭력인식과 경험 유형은 매우 상이하다 할 수 있음

- 데이트 폭력 경험 시 상대와의 관계 대응에서 여성은 주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32.5%),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감'(15.7%)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주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거나(36.6%), '가만히 있는'(17.1%)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들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남성은 데이트 폭력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음
- 데이트 폭력 경험 이후 외부적 조치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51.9%)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헤어지겠다고 통보 후 연락 두절'(15.4%), '가족·친구에게 알리고 도움 청함'(14.4%) 순으로 나타났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기관 방문은 매우 적어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처음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매우 심각한 피해가 있어야 외부로 사건을 드러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6) 젠더폭력 정책 수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방지 점검(62.4%),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40.0%), 불법촬영물 삭제지원(39.8%), 여성폭력 핫라인대응시스템 구축·운영(39.7%) 순으로 나타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이나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되는 여성폭력 핫라인대응시스템에 대한 홍보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를 위한 영상물 삭제지원 확대(31.9%), 디지털성폭력 신고 포상제 실시(14.2%),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13.9%) 순으로 높게 나타나 관련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심층면접 조사 결과 시사점

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안감 :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님

- 심층면접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수시로 느끼며 주변 사람들의 경험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접한 정보 등이 불안감의 원인으로 작용함
- 일상적 불안 피해는 실제로 자신의 주변 지인들이 겪은 피해를 내면화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촬영된 영상물이 유포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상시적으로 존재함

나) 디지털 환경에서 10대와 20대의 범죄인식 부족, 여성혐오와 성적 대상화 만연

- 디지털 환경에서 여성혐오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심각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10대나 20대 젊은 세대 구성원들이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장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불법 행위인 줄 알면서도 남성끼리는 피해자를 공감하는 발언을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남아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도 가부장적 분위기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다) 10대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채팅어플 상 피해 심각함

- 피해경험 사례는 불법촬영, 몸캠, 피해 영상물 유포, 사이버 성희롱, 이미지 합성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의 온라인 그루밍 피해, 채팅어플에서의 피해가 심각하다 할 수 있음
-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의 경우 처음엔 자기 탓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의 두려움이 컸으며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없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됨

라) 소극적 대응 : 가부장적 인식과 지역의 특성으로 드러내기 어려움

- 피해자들은 디지털성폭력과 데이트 폭력 피해를 외부에 드러내기 어려워 개인적으로 해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음
- 데이트 폭력을 드러내기 어려워 강제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피해 촬영물 유포 불안으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함
- 기관 종사자들은 피해자들의 소극적 대응은 지역의 특성 상 금방 개인 신상이 드러나고 소문날까 두려워 피해 경험 이후 신고나 상담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됨
- 공동체 문화가 강한 특성으로 주변인들도 도움을 주지 않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음

- 마) 인식개선 교육 : 피해자 책임, 2차 피해, 피해상황 대처법, 폭력행위 개념 교육 필요
- 피해자는 폭력피해를 자기 탓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일부는 연인과 헤어지고 난 후에 폭력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폭력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함
 - 심층면접 조사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소문날까 두려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폭력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 의한 2차 피해의 두려움이라 할 수 있음
 - 피해자와 기관 종사자들이 강조하는 인식개선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피해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폭력행위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와 맥락, 피해자 책임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현실적인 내용임

2. 정책제안

가. 제주지역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언

- 1) 조례제(개)정을 통한 디지털성폭력 대응 체계 구축
 -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디지털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신종 여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고 있음
 - 기존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관련조항을 추가 하거나 디지털성폭력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 추진체계 마련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결과 피해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확대, 디지털신고 포상제, 폭력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확대, 그리고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을 단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피해자 지원 체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관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이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기존의 성폭력 상담소에 디지털성폭력 지원을 위한 활동가

의 역량강화 및 전문 인력 및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 뿐 아니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진흥원의 피해영상물 삭제 및 피해자 지원이 지역단위 피해자들이 이용하기 불충분 할 수 있음
 - 사이버 상으로 진행되는 피해 영상물의 삭제지원 뿐 아니라 의료·심리지원, 법률지원 등 피해경험에 대한 맥락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상담 및 지원이 필요함
-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내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욕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디지털성폭력 모니터링단 운영

- 디지털 환경에서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감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 시민 모니터링단은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이버 상에서 유해 콘텐츠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일을 담당함

5) 청소년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 디지털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구제 절차와 장치가 필요하며,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지원 체계로 수립되어야 함
- 청소년은 온라인 그루밍으로 성적 만남을 제안 받거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조건만남에 노출되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음
-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교육청 양성평등 조례제정을 통하여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 구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함

6)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의 내실화

- 조사결과 디지털성폭력에 관한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이수경험 비율도 높지 않아 관련 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함
-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 중 디지털성폭력에서 여성의 이미지가 거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불법 촬영물의 수요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범죄 양상과 문제의 원인을 인권적 관점·성인지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함

7) 디지털성폭력으로부터의 일상적 불안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

- 일상적으로 느끼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및 유포 우려에 대하여 불안한 내담자들을 유형화 하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피해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범죄 불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8) 젠더폭력 현황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

- 디지털성폭력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적인 통계가 부족함, 특히 디지털성폭력 관련 범죄가 유형화되어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사건에 대한 새로운 유형화와 통계생산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제주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조사 지표’와 같은 대규모 조사에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도민들의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관련내용의 현황파악 및 원인진단을 통한 신속한 정책 반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나. 제주지역 데이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언

1)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피해자 지원 기관의 경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법적 근거가 없고 지침도 없으며 상해가 있어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독자적인 제재 규정 마련이 시급하며, 데이트 폭력의 법적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보완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정비 및 관련시책 마련을 통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피해자 지원 강화

- 데이트 폭력 피해 유형 중 통제행위 등은 상해나 폭행과 달리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약하므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경미한 피해부터 중대한 피해까지 피해수준별 대응책을 마련하여 신고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함
-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공백이 많은 상황이며, 의료비와 보호시설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기존의 여성폭력 피해지원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범위의 확대가 필요함

3)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다각화 및 예방교육 내실화

-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피해 당시에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고 시간 경과 후 당시의 경험을 폭력으로 알아차리고 있음, 따라서 데이트 폭력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꼭 필요하며 특히 성인기를 시작하는 대학생 등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교육 대상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함
- 대학가나 기타 핫스팟을 중심으로 데이트 폭력의 유형과 대처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미디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 및 데이트 폭력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교육 실시가 필요함

다. 젠더폭력 가해자 교정 지원 확대

- 현재 여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디지털성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 가해자 대상 교정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임
- 제주보호관찰소와 일선 성폭력 상담소, 교육청, 경찰청, 전문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디지털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 신종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을 교정 프로그램에 우선 추가하고 향후 관련범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정 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제 1 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6
3. 연구방법	7
가. 연구절차	7
나. 연구방법	7
제 2 장 젠더폭력 개념 및 정책 동향	9
1. 젠더폭력의 개념 및 범위	11
2. 젠더폭력 정책 동향	13
가. 디지털성폭력 관련법 및 정책	13
나. 데이트 폭력 관련법 및 정책	16
다. 제주특별자치도 젠더폭력 정책	18
라. 해외 사례 및 시사점	19
제 3 장 젠더폭력 현황(디지털성폭력, 데이트 폭력)	27
1. 전국 젠더폭력 현황	29
가. 디지털성폭력 현황	29
나. 데이트 폭력 현황	30
2. 제주지역 젠더폭력 현황	31
가. 제주지역 디지털성폭력 현황	31
나. 제주지역 데이트 폭력 현황	33
제 4 장 젠더폭력(디지털성폭력,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 결과	35
1. 조사개요	37
가. 조사 설계 및 방법	37
나. 조사 내용	37
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38
2. 조사결과	40
가. 젠더폭력 인식/경험/대응	40
나. 디지털성폭력	45

다. 데이트 폭력	70
3. 소결	86
가.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경험/대응	86
나. 디지털성폭력	86
다. 데이트 폭력	90
라. 젠더폭력 정책 수요	92
제 5 장 제주지역 젠더폭력 피해자 및 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95
1. 조사개요	97
2. 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98
3. 피해자 심층면접 결과	99
가. 심층면접 내용	99
나. 면접조사 결과	100
4. 관련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130
가. 심층면접 내용	130
나. 면접조사 결과	131
5. 소결	144
가. 피해자 심층면접 결과	144
나. 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148
제 6 장 정책제안	151
1.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53
가.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53
나. 심층면접 조사 결과 시사점	156
2. 정책제안	158
가. 제주지역 디지털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언	158
나. 제주지역 데이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언	166
다. 젠더폭력 가해자 교정 지원 확대	168
참고문헌	171
부록	173

표 목 차

<표 2-1> 디지털성폭력 관련법과 처벌내용	14
<표 3-1>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2017-2019)	29
<표 3-2> 전국 학교 폭력 피해 유형	29
<표 3-3> 전국 학교 폭력 피해 유형(초·중·고)	30
<표 3-4> 전국 데이트 폭력	31
<표 3-5> 제주지역 연도별 성범죄 발생현황	31
<표 3-6> 제주지역 성폭력 피해자 연령	32
<표 3-7> 제주도 학교 폭력 피해 유형	33
<표 3-8> 제주지역 성폭력 현황(성폭력 상담소)	33
<표 3-9> 제주지방경찰청 데이트 폭력 검거현황	34
<표 3-10> 1366 제주센터 상담유형별 현황(2018-2020.05)	34
<표 4-1> 설문조사 내용	38
<표 4-2>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9
<표 4-3> 폭력에 대한 인식	41
<표 4-4> 젠더폭력 경험 유무(성별, 연령별)	42
<표 4-5>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식	44
<표 4-6>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	45
<표 4-7>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46
<표 4-8> 정보통신 윤리교육 경험	48
<표 4-9> 폭력예방교육 수강 경험	49
<표 4-10> 디지털성폭력 관련법 인식 정도	50
<표 4-11> 디지털성폭력 관련법과 제도 인식	51
<표 4-12>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인식	52
<표 4-13> 사이버 음란물·성희롱 수신 경험 유무	54
<표 4-14> 메시지 발신자(중복응답)	54
<표 4-15> 메시지 발신 매체	56
<표 4-16> 디지털성폭력 우려로 인한 행위	58
<표 4-17> 디지털성폭력 대응 방법(중복응답)	59
<표 4-18> 대응하지 않은 이유	61
<표 4-19> 전문(상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	62
<표 4-20> 디지털성폭력 발생원인	63

<표 4-21> 디지털성폭력에 필요한 지원(1순위)	64
<표 4-22> 피해 시 원하는 도움(1순위+2순위)	65
<표 4-23> 디지털성폭력 가해 경험	66
<표 4-24> 온라인에서 섹드립(야한 농담)이나 패드립(부모 비하)	67
<표 4-25> 가해 행위 시 이용 매체	68
<표 4-26> 가해 행위 후 심리적 반응	69
<표 4-27> 연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념	70
<표 4-28>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72
<표 4-29> 최근 3년 이내 데이트 상대가 나에게 한 행동(중복응답)	74
<표 4-30> 관계에서의 대응	75
<표 4-31> 데이트 폭력 경험 후 외부 조치(중복응답)	77
<표 4-32> 데이트 폭력 경험 후 무 대응 이유	78
<표 4-33> 여성폭력 지원 기관에 대한 인지	79
<표 4-34> 여성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80
<표 4-3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관련 정책 인지도	82
<표 4-36>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 만족도	83
<표 4-37>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	84
<표 4-38>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	85
<표 5-1> 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99
<표 5-2> 심층면접 내용	100
<표 5-3> 심층면접 내용	131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절차	7
<그림 2-1> 스톱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개요	17
<그림 3-1> 전국 학교 폭력 사이버 괴롭힘 피해	30
<그림 3-2>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폭력 현황	32
<그림 4-1> 폭력에 대한 인식(성별, 연령별)	41
<그림 4-2> 젠더폭력 경험 유무	43
<그림 4-3>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식	44
<그림 4-4>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평일)	45
<그림 4-5>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주말)	46
<그림 4-6>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평일)	47
<그림 4-7>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주말)	47
<그림 4-8> 정보통신 윤리교육 경험	48
<그림 4-9> 디지털성폭력 관련법과 제도 인식	52
<그림 4-10>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인식	53
<그림 4-11> 메시지 발신자(중복응답)	55
<그림 4-12> 메시지 발신 매체	56
<그림 4-13> 디지털성폭력 우려로 인한 행위	58
<그림 4-14> 디지털성폭력 대응 방법(중복응답)	60
<그림 4-15> 대응하지 않은 이유	61
<그림 4-16> 디지털성폭력 발생원인	63
<그림 4-17> 피해 시 원하는 도움(1순위, 2순위)	65
<그림 4-18> 디지털성폭력 가해 경험 있음	66
<그림 4-19> 가해 행위 시 이용 매체	68
<그림 4-20> 가해 행위 후 심리적 반응	69
<그림 4-21> 연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념	71
<그림 4-22>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72
<그림 4-23> 최근 3년 이내 데이트 상대가 나에게 한 행동(중복응답)	74
<그림 4-24> 관계에서의 대응	76
<그림 4-25> 데이트 폭력 경험 후 외부 조치	77
<그림 4-26> 데이트 폭력 경험 후 무 대응 이유	78
<그림 4-27> 여성폭력 지원 기관에 대한 인지	80

<그림 4-28> 여성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81
<그림 4-29>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관련 정책 인지도	82
<그림 4-30>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 만족도	83
<그림 4-31>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	84
<그림 4-32>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	85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젠더폭력은 ‘특정성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행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으로 주로 여성과 남성간의 사회적인 성적 차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행해지는 물리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의미(여성가족부, 2017)하며 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 할 수 있음
- 여성폭력 관련 법 규정 및 정책은 폭력 범주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 관한 것으로 협소하게 규정해 왔음
- 최근 남성과 여성이라는 사회 구조적 성 불평등 관점에서 비롯된 젠더폭력이 다양한 양상을 지닌 채 발생하고 있음
 -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 미투(Me Too) 운동의 특성을 반영한 직장 내 성희롱, 디지털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 젠더 관점에 기반한 다양한 폭력의 양상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의 정의와 법제화 및 정책수립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음(여성가족부, 2018)
 - 그동안 여성에 대한 피해자 관점과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구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 양상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선언하고 국가의 법적, 제도적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여성폭력방지법 제정 2018. 12. 7)
- 그동안 지역단위에서 여성폭력을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폭력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다수의 지역에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관련 규정 및 정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음(경기 2018, 경북 2018, 서울 2017 등)
 - 각 지자체 별로 지역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음
- 제주지역 여성폭력 관련 정책은 국가의 정책기조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은 중앙정부의 정

책을 기본으로 기존의 3가지 유형의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관한 보호 및 지원에 그치고 있음

- 기존의 지역 내 여성폭력 실태 관련 연구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범주를 중심으로 다루었을 뿐 최근의 사회변화를 반영하는데 부족함 (이화진 2014, 2015)
 - 2014년에 실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중심의 폭력인식과 피해경험 및 대응, 정책수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로 폭력의 유형이 법적 규범에 맞추어 진행된 면이 있음
 - 또한 2015년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에서도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으나 여성폭력 유형을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음
 -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의 취지에 맞고 최근의 젠더권력에 기반한 다양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도민들의 인식과 실태파악은 매우 부족하다 할 수 있음
- 성별에 기반한 데이트 폭력, 미투(Me Too)운동¹⁾, 디지털성폭력 등을 포괄하는 지역의 여성폭력에 대한 최근의 변화 및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도민의 인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폭력과 같이 폭력의 발생 및 영향력이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흐려지며 피해가 확장, 지속되는 등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추측함
 - 제주지역에서는 피해자의 적극적 폭로로 촉발되는 미투운동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진행될 뿐 일반도민들에게 확산되지 못하였고,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현황 파악 및 정책개발에 대한 시도가 적었음
 - 시민단체에서는 2018년 3월 제주미투시민행동출범을 계기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있었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은폐된 여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미투운동 현안공유와 대응마련을 위한 유관기관간의 협력논의(제주사회 미투운동과 대안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집담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9)가 있었으나 피해경험

1) 한국의 미투 운동은 2018년 1월 서지현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후 문화계 주요 인사 및 스포츠계, 교육계 등에서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짐, 미투 운동은 그동안 은폐되었던 사회 구조적인 차별이나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을 드러내고 연대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에 의한 폭력에 대응하려는 지역차원의 움직임은 다소 미약한 편임

- 최근 제주지역도 디지털성폭력 관련 주요 사건²⁾이 이슈화되고, 불법촬영물의 유포 및 유포 불안에 대한 피해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보다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의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확장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의 상담실적 중 디지털 성범죄는 2019년 48건, 2020년 5월말 현재 총 30건으로 나타남(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내부자료 2020)
 - 제주지역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적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현황은 2018년 기준으로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관련 상담은 약간 증가(2017년 6.0%, 2018년 7.9%)한 반면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 상담은 대폭 증가(2017년 2.2%, 2018년 10.0%)한 것으로 나타남(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내부자료 2020)
- 여성에 대한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심각성이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범죄 신고 및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최근 증가하고 있음
 - 제주지방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발생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100건을 차지하고 있으나(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20) 1366 제주센터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2019년 데이트 폭력의 상담건수는 모두 321건, 스토킹 상담건수는 21건에 달해(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내부자료 2020) 제주경찰청의 데이트 폭력 검거건수와 비교하여 약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신고하지 못하는 범죄가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이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적인 권력에서 비롯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최근의 폭력유형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

2)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제주에서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퍼뜨린 사건이 발생하여 지역사회 반향을 불러왔음(제주서도 '유사 n번방' 사건...20대 남성 구속 KCTV 2020. 5. 28)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반면 그동안 지역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통한 원인규명과 정책개발을 위한 방향수립 등 일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적인 차별에 기반한 젠더폭력의 최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그동안 실태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디지털성폭력과 데이트 폭력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 여성폭력 관련 정책 및 현황 분석
 - 중앙정부의 젠더폭력 관련 주요 정책현황 분석
 - 젠더폭력(디지털성폭력, 데이트 폭력) 법 제정 현황 분석
 - 해외의 관련정책 및 법제도 검토
 - 디지털성폭력, 데이트 폭력 분야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자료 검토
-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 파악
 - 젠더폭력 일반(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직장 내 성희롱 등)
 - 디지털성폭력 : 디지털성폭력 관련 인식, 피해경험 및 대응, 가해경험, 폭력피해 대응, 정책수요
 - 데이트 폭력 : 데이트 폭력 인식, 경험, 대응, 정책수요 등
- 도내 젠더폭력 실태파악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 피해자 지원방안, 도민의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 등

3. 연구방법

가. 연구절차

○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1-1〉 연구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방향 및 내용 구성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 선행 조사연구 검토 • 관련 분야 정책 현황 검토
3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회)
4단계	조사 실시 (설문조사, 심층면접)	⇨	• 설문조사(16세 이상 50세 미만 도민 530명) • 심층면접(여성폭력 피해자 및 기관 종사자 15명)
5단계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제안	⇨	• 연구진회의(3회) • 조사결과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

나. 연구방법

○ 여성폭력 관련분야 문헌자료 검토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등)

- 관련분야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 학술자료 검토
- 법령 및 조례 등 법률자료, 관련기관(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등) 통계자료, 중앙정부 및 제주지역 유관기관 정책자료 수집 및 검토
- 기타 해외정책 사례 검토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설문조사

- 대상 : 도내 16세 이상 50세 미만 남녀 530명
-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대면 면접조사
- 표집방법 : 제주지역 인구의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비례할당표집, 단 본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여성을 약간 과표집
- 내용 :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피해경험 및 대응, 피해 영향, 지원서비스 이용실태, 정책수요 등
- 디지털성폭력 : 디지털성폭력 인식, 관련법·제도 인지, 디지털성폭력 경험 및 대응, 정책수요
- 데이트 폭력 : 연인간의 통념, 데이트 폭력 인식, 데이트 폭력 경험 및 대응, 필요한 지원 및 정책수요

○ 심층면접

- 대상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담당자, 피해경험자, 기타 관련 기관 담당자 등
- 내용 : 폭력 피해 경험, 피해대응 및 영향, 피해자와의 관계, 정책수요 등
- 방법 : 주요 면접 내용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면접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
- 대상자 선정
 - 폭력 피해자 : 만 16세 이상 20대 중심 피해자 선정, 이를 위하여 청소년 관련기관 이용자,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대상자 섭외
 - 기관 종사자 : 여성폭력 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관련 종사자, 경찰(사이버수사대, 여성 보호 담당부서), 법률전문가 등

제 2 장

젠더폭력 개념 및 정책 동향

1. 젠더폭력의 개념 및 범위
2. 젠더폭력 정책동향

1. 젠더폭력의 개념 및 범위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1990년대 초반부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있어왔음
 - ‘젠더에 기반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유엔(UN)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UN Declaration of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이 선포되면서 구체적으로 등장함³⁾
 - 젠더폭력이란 전반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권력이 성별 위계질서와 연관하여 작동하는 폭력이라는 인식을 담은 개념으로 국제법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그동안 젠더폭력은 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좁은 의미의 여성폭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면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젠더폭력이 여성과 남성 사이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차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의지에 반해 행해지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일컫는 말로 여성 영유아 살해와 여성할례, 강제결혼,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여성혐오, 성착취 등 물리적 차원의 성폭력보다 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 젠더폭력은 생물학적 성(sex)과 성별 정체성 혹은 사회적으로 정의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규범에 따라 스스로 인지한 성 정체성에 기반을 두어 한 개인을 향한 폭력으로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 및 협박, 강압, 자유의 박탈과 경제적 박탈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고(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5: 7)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행위 : 성폭력, 성적갈취, 강요된 성매매, 인신매매, 성희롱 등
 -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 : 가정폭력, 성기절단(할례), 지참금 살인, 명예살인, 여성혐오 범죄
 - 집단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폭력 : 전쟁 시 집단강간 등

3)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UN General Assembly 1993. 12. 20). A/RES/48/104. <http://www.un-documents.net/a48r104.htm> 참조

- 국내에서는 여성폭력을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기존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범주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왔음
 -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실질적 성평등의 실천과제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제정을 포함한 국가의 책임강화를 통한 법제화를 시도함 (장미혜 외. 2017, 황정임 외. 2018)
- 그러나 여성폭력에 대한 하위범주들의 통합적 접근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폭넓은 규정에 필요한 인식과 기반이 취약하고 다양한 폭력의 범주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의 핵심개념에 대한 학술적 검토와 논의의 불충분(신상숙. 2018: 267)으로 법률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이루어짐 제정(2019. 12. 25 시행)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하면 여성폭력의 정의가 ‘성별에 기반한 폭력’에서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수정되는 등 당초의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처벌법이 아닌 기본법이라는 점, 현행 법률을 통해 남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등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박선영. 2019: 3)
- 따라서 젠더폭력은 법적 정의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여성폭력의 범위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함
- 본 보고서에서는 젠더폭력의 범주인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등 기존에 주로 연구된 범주 이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폭력과 데이트 폭력을 중심으로 실태파악과 정책제안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함

2. 젠더폭력 정책 동향

가. 디지털성폭력 관련법 및 정책

- 디지털성폭력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행사하는 성범죄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따위가 이에 속함
 - 디지털성폭력은 현실공간에서 물리적인 접촉 없이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이미지나 영상물의 제작, 유포, 참여, 소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범죄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이 가지는 무한 복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관계성, 집단적 가해행위가 가능하고 온라인에서의 소비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 의한 가해가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음
- 디지털성폭력 관련법으로는 불법 촬영물의 제작, 유포와 관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표 2-1〉 디지털성폭력 관련법과 처벌내용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	시행일자 및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 14조의 2), 시행일자 : 1998. 12.28 - 비동의 촬영만 처벌 - 타인의 신체촬영만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 13조), 시행일자 : 2010. 4. 15 - 비동의 촬영, 비동의 유포 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영리목적의 비동의 촬영물 비동의 유포 시 가중처벌(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 14조), 시행일자 : 2013. 6. 19 - 동의촬영 후 비동의 유포 시 처벌, 비동의 촬영시보다 처벌수위 낮음(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 시행일자 : 2018. 12.18 - 피해자 자신이 촬영한 촬영물의 비동의유포시 처벌추가 - 촬영과 유포 별도 규정 - 비동의 촬영죄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 동의 촬영 후 비동의 유포도 비동의 촬영과 동일하게 처벌 -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외에 복제물을 추가 - 영리목적의 동의, 비동의촬영물, 복제물의 비동의유포시 벌금형 삭제통한 처벌강화(7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으로 개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 1) 개정일자 : 2020. 5.19 - (불법 성적)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제 14조 2) : 시행일자 :2020. 6. 25 - 지인합성 법제화 - 반포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그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벌금형 상향 조정(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자 가중처벌(7년이하 징역)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 14조 3) : 개정일자 :2020. 5. 19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 -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강요 : 3년 이상 유기징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2018년 6월 개정 -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금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1조)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 무기징역 혹은 5년이하의 유기징역, 미수범도 처벌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10년 이하 징역 -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3년 이하 징역 -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정부는 2020년 4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함⁴⁾
 -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지털성폭력에 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피해자 보호의 내실화 등을 위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음
-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제작행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판매행위 형량확대를 비롯한 법정형량을 강화하고 형 집행의 내실화를 위하여 신고포상금제 및 잠입 수사 도입으로 초기 단계의 적극 수사가 가능하도록 함
 - 디지털성폭력물 소지 및 구매행위에 관한 처벌조항 신설함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법률상에 ‘피해자’로 명시하여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함
 - 온라인상의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차단함
- 수요차단 및 인식개선을 위해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하고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
 - 이를 위하여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특히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임
 - 디지털성폭력 근절과 예방수칙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 협력으로 초·중·고 학교에서의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상담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피해 대처방안에 대한 안내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연계를 강화할 예정임
-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24시간 원스톱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선 삭제, 후 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신속변경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2020년 3월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구성하

4) 디지털성폭력,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히”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0. 4. 23)

여 운영하고 있음⁵⁾

-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피해사례 신청을 받고 신속한 삭제, 심리치료, 상담 및 수사, 법률지원 등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지원이 가능함

나. 데이트 폭력 관련법 및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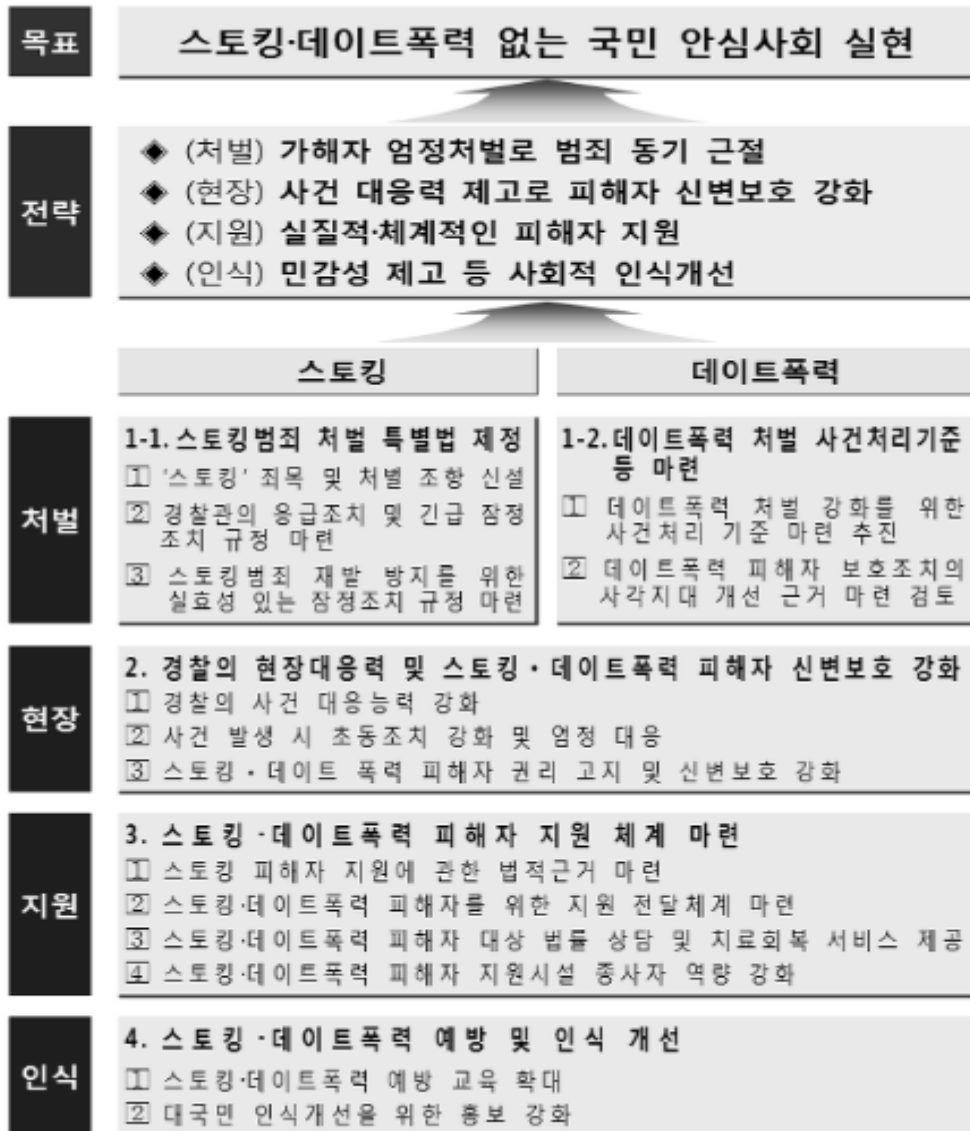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연인관계라는 특성으로 범죄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움
 - 가정폭력방지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별도의 법적장치가 부족하고 통상적인 폭력 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범칙금이 워낙 적어 범죄억제 효과도 미미한 실정임
- 배우자폭력은 그동안 많은 연구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연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나 심층적인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음
- 정부는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등 신종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대두된 젠더폭력의 처벌 및 보호체계 마련”을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하고 이에 대한 피해방지 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조치 강화를 위한 관련부서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함 (2018. 2. 22)⁶⁾
 - 스토킹 범죄 처벌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엄정한 사건의 처리기준을 관련부처와 논의하여 마련함
 -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경찰의 현장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5) “여가부, 텔레그램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 소홀함 없도록 끝까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4. 1)

6)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설명제 코너 참조
http://www.mogef.go.kr/io/ind/io_ind_s044d.do?mid=info310

○ 데이트 폭력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추진 내용은 다음의 그림과 같음

〈그림 2-1〉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개요



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213

다. 제주특별자치도 젠더폭력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등 관련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도 차원에서 미투 확산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관련기관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미투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 양성평등 인식 확산 및 도민대상 성인지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기관 설치, 미투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 확대, 신고 절차 집중홍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함⁷⁾
 - 아울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협력체계를 운영하여 젠더폭력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추진사업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⁸⁾
- 매년 여성폭력 추방주간에 관련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거리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신종 젠더폭력인 디지털성폭력과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에 관한 대응 및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19년에 처음으로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주간을 맞아 데이트 폭력 인식개선 사업으로 데이트 폭력 집담회와 데이트 폭력 예방 캠페인을 대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음

□ 디지털성폭력 대응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해 관광지나 공원 등 공공장소의 화장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탐지기 설치,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캠페인,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 배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공공장소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의 여성안전 취약지역을 대대적으로 조사⁹⁾하고 여성안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및 불법 촬영 방

7) “제주도, ‘미투’ 확산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도자료(2018. 3. 23)

8) “지역협력체계 운영으로 폭력 없는 안전 제주 실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도자료(2018. 3. 30)

9) 제주특별자치도. 2017. 「여성폭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 조사」 참조

지를 위한 카메라 탐지기 등을 설치하였음

- 지역 유관기관과의 합동 캠페인은 경찰청,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16개 기관과 협력하여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였음¹⁰⁾
-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담은 카드뉴스 2종을 제작하여 교육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음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와 사이버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 수사대 내에 사이버성폭력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음¹¹⁾

- 사이버 성폭력 전담팀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디지털성폭력 수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 내 여성청소년과를 비롯한 여타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음¹²⁾
- 피해 영상물의 삭제제를 위한 원스톱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피해발생 확인 즉시 신속하게 삭제지원을 하고 있음

○ 2020년 3월부터 디지털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디지털성폭력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라. 해외 사례 및 시사점

1) 디지털성폭력 관련 해외정책

가) 미국

○ 미국의 각 주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이버 관음행위와 동의 없는 촬영 행위에

10) “민·관·경 협력하여 디지털성폭력 예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보도자료 (2020. 5. 3)
 11) 사이버 성폭력팀은 2018년 불법촬영물 유포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특별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2019년 1월 전국 지방청에 정식 직제화 되었음 (“경찰, 사이버 조직·인력을 대폭 늘려서 사이버 성폭력·도박 등 총력 대응” 경찰청 보도자료 2019. 1. 25)
 12) 최근 제주지방경찰청 주최 유관기관 협력 정책 간담회는 성범죄 관련(2019. 11. 21), 디지털성폭력 관련(2020. 4. 8) 행정기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참석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제주지방경찰청, 성범죄 유관기관 합동정책 간담회 개최”. 2019. 11. 21 보도자료, “제주경찰청, 디지털성폭력 유관기관 협업 간담회”. 2020. 4. 8 보도자료 참조)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연방차원에서는 「비디오관음방지법」(Federal 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¹³⁾을 통하여 동의 없이 사적 영역의 화상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성범죄로 취급하지는 않고 있음

- 비동의 성적 영상에 관한 불법유포에 관한 처벌은 연방차원에서 2016년부터 논의되었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불법 콘텐츠의 삭제, 민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사적인 성적 영상물을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다루고 해당 게시물 삭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게시물 차단 및 손해배상도 함께 실시하고 있음
- 범죄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으로 사이버인권기구(Cyber Civil Rights Initiative)가 주도하는 입법 가이드 및 모범 법률안 제시, 피해자들의 게시물 삭제 가이드라인 및 전문변호사 정보제공, 피해자 조사 실시 등의 역할이 있고 청소년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https://www.cybercivilrights.org/>)

나) 영국

- 영국은 「성범죄법」(Sexual Offence Act 2003),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에서 불법촬영과 유포에 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음(전윤정, 2020)
 - 성범죄법상 동의 없이 사적행위의 관음, 장비설치, 이미지 구성, 기구 설치 또는 구조물 건축, 고통을 주기 위한 은밀한 성적 사진 및 필름 유포에 관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보호법 상 촬영, 배포, 상영, 배포 또는 상영목적의 소지, 방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음

13) Federal 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of 2004. 18 USC, Code § 1801, USC 2252(a), (b)
전윤정, 2020.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 1690호.

- 불법촬영 관련 영국 규정은 성범죄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적 목적의 관음행위에 따라 신체 특정 부분의 노출, 화장실 사용, 성적 행위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불법유포 관련 처벌 법률은 개인의 동의가 없고 개인에게 고통을 줄 의도를 가진 경우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음
-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불법 콘텐츠 심의 및 삭제와 함께 민사상 구제로 불법행위법 상 개인정보의 남용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학대금지법에 의한 구제책도 마련하고 있음
 - 성적 영상물의 동의 없는 게시를 미국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의한 구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피해 영상물 유통에 관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묻도록 조치하는 것도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게시하도록 조장했는지 여부와 해당 콘텐츠의 경고와 함께 신속하게 삭제되었는지가 관건으로 관련 규정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피해자 지원 단체로는 리벤지포르노 피해지원(Revenge Porn Helpline)은 ‘South West Grid for Learning’(<https://esi.swgfl.org.uk/Home/Swgfl/Index>)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
 - 온라인 콘텐츠 삭제지원 및 관련소송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음

다) 호주

- 호주의 디지털성폭력 관련법은 「형법」(Criminal Code Act 1995 §474, 17)과 최근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관한 불법촬영과 유포, 성착취 근절을 위하여 제정된 「아동 성착취에 관한법」(Cobattling Child Sexual Exploitation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19)에 명시되어 있음(전윤정, 2020)
- 호주정부는 디지털성폭력에 해당하는 비동의 성적촬영 및 유포행위를 ‘이미지 기반 학대(Image based Abuse, IBA)’로 정의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음(Henry et al, 2017, 서울시, 2018 「디지털성폭력 유통실태 보고서」: p. 11에서 재인용)
- 이미지 기반 학대 행위와 관련하여 모든 지방정부가 처벌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이미지 기반 학대 행위와 그루밍, 아동성착취, 스토킹, 괴롭힘, 혹은 협박 등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강화하고 있음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소유·배포·유포 행위는 7개 주에서 형사처벌이 되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보복성 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을 부과하고 협박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며 피해영상에 대한 삭제요구에 불이행시 추가로 징역 및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음
- 호주정부는 2015년 온라인위원회(Office of e safety Commissioner)를 설립하고 보복성 포르노를 포함한 온라인 안전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호주의 디지털성폭력 신고 및 교육 콘텐츠 플랫폼인 E-safety에서는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신고 및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등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와 청소년, 부모, 보호자, 교육자 등을 위한 교육자료 및 미디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라) 소결 및 시사점

- 미국은 범죄발생 후 완전한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디지털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특히 미성년자의 성 인식 및 피해 예방 교육이 강조되고 있음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물어 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함
- 미국과 영국에서 정책기조로 활용하는 방안 중 피해 영상물 유통에 관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묻도록 조치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를 강화해 나갈 때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성이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호주에서는 2018년과 2019년 디지털성폭력 관련법이 개정되어 디지털 성 착취물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통한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는 우리정부의 디지털 성폭력 관련 입법 공백을 메우고 관련 법 규정의 강화와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영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손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호주에

서 실시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플랫폼 구축 및 운영방안도 고려할만함

2) 데이트 폭력 관련 해외정책

가) 미국

-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학교에서의 이성 간 폭력 등 데이트 폭력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라 학계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이 전개되었음
 - 학교 캠퍼스 내 데이트 폭력 관련 입법은 스토킹보호명령제도(Stalking Protection Order) 와 성폭력피해자보호명령제도(Sexual Assault Victim Protection Order)가 대표적임(홍영오 외. 2015 : 349)
- 미국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하는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연방차원에서 여성폭력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연방기관인 여성폭력방지사무소를 설립하여 여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총기소지 제한, 여성폭력방지법 기금을 통해 매년 50만 명의 법집행기관의 직원과 검사, 판사, 피해자 변호인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폭력 전담 특수부서가 설치된 검찰과 경찰, 법원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엄격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핫라인을 설치하고 기금을 마련하여 주거 지원을 하고 피해자 건강관리 및 폭력방지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이나 성소수자 등 취약계층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음
- 2013년 캠퍼스보안공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학들이 캠퍼스 내 성폭력의 예방과 각성, 적절하고 공정한 조사 및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정책으로 삼을 것과 피해자들의 권리와 원조에 관한 정보들을 연간보고서에 실을 것을 명함으로써 캠퍼스 내 성폭력 예방 및 적절한 대처를 도모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아리조나 주(State of Arizona)의 데이트 폭력 대응

- 혼인중이거나 동거,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었던 기존 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명령이 2009년 케이티법¹⁴⁾(Kaity's Law)의 제정으로 연인관계에 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남자친구에 의해 성폭력이나 스토킹, 살해의 위협을 받을 위기에 처한 여성이 가해자로 하여금 총기몰수, 교정처분이수, 반복적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등이 이루어지도록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보호가 가능해짐

나) 영국

- 영국은 최근 가정폭력의 개념에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포함하여 배우자나 동거남에 의한 폭력피해자 뿐 만 아니라 연인에 의한 폭력피해를 포함하여 피해자 보호의 영역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의 정의는 친밀한 파트너 또는 가족 구성원이 16세 이상의 사람을 성별 또는 성적 정체성과 관계없이 통제(controlling), 강요(coercive), 위협(threatening), 폭력(violence), 학대(abuse)를 가하는 행위 즉 심리적 신체적 성적, 재정적 및 정서적 학대를 포함함(홍영호, 2015; 348)

- 가정폭력방지법과 함께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를 두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는 가정폭력의 전과가 있는 상대의 새로운 파트너가 상대방의 과거 전과를 인지한 상황에서 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절차를 통해 잠재적 피해의 위험 정도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
- 모든 여성들은 폭력 전과가 있는 파트너에 대한 정보를 문의할 권리(right of ask),에 기초하여 폭력피해의 위험에 놓인 피해자는 사전적으로 필요 정보를 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주요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

14) 2009년 애리조나 주 케이티라는 여성이 17세에 헤어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 것을 계기로 보호명령 대상을 결혼상태뿐 아니라 연인관계까지 확대하는 법률
<https://www.mesaaz.gov/home/showdocument?id=4732> 참조

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음

- 이 제도는 알권리(right of know)에 기초하여 보호책임이 있는 기관이 가정폭력 전과자에 의한 폭력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정보를 인지할 경우 정보공개의 합법성과 필요성 등을 심사함
- 일병 클레어법¹⁵⁾(Clare) 이라고도 하는 가정폭력전과 공개제도는 잠재적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파트너의 폭력전과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영국은 데이트 폭력 피해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 공개 관련 인권보호법, 정보보호법 준수, 절차에 대한 합법성과 필요성, 균형성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여러 장치를 통해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예방이라는 공익과 약자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 하고 있음

다) 독일

- 독일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발생 시 ‘가해자는 떠나고 피해자가 집에 머문다’는 원칙을 세우고 2002년 폭력보호법(Gewalt schutz gesetz)을 제정하였고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법무부 등 연방정부 내 유관기관, 연방과 주정부 기관과 비정부기관간의 데이트 폭력 및 여성폭력 예방 및 조치에 정책적인 연계와 협력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폭력피해 발생 시 ‘거처양도명령제도(Wohnungs berlassung)’¹⁶⁾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에게 격리조치를 함으로써 사적영역의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음
- 가해자가 단독소유자이거나 단독임대인 경우 재산권침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최장 6개월간 가해자 없이 집에 머물 수 있으며 피해자의 단독 소유이거나 단독

15) 2009년 영국의 클레어우드(Clarie Wood)라는 여성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의 폭력전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피해여성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연인 간 폭력전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법청구 운동으로 2014년에 도입됨(홍영오 외 p. 338)

16)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A. o. s.3f

임대일 경우 기간 제한 없이 혼자서 살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할 수 있음 (홍영호 외. 2015 : 370)

- 폭력보호법은 주로 배우자나 동거남 등 파트너의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신청권자가 누구나 가능하므로 결혼이나 동거가 아닌 연인 관계나 기타 모든 관계 내에서 폭력행위도 해당하므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역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집에 침입하거나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의 피해자도 함께 폭력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어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음

라) 소결 및 시사점

-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법과 제도상 결혼이전에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법 규정의 보완마련이 시급함
- 최근 몇 년간 데이트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왔고 문제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젠더폭력 방지기본법 제정 작업이 있었으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으로 이루어졌음
- 데이트 폭력 방지법 관련 법안 발의는 여러 차례 있어왔으나 최종적으로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에 관한 대응을 위해 영국 가정폭력방지법의 데이트 폭력 행위를 확대 적용하는 방법을 참조할만하고 특히 새로운 파트너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의 시행은 관련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을 고민한 필요가 있음
- 또한 약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독일의 폭력보호법의 기본정신을 참고로 피해자의 주거를 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제 3 장

젠더폭력 현황(디지털성폭력, 데이트 폭력)

1. 전국 젠더폭력 현황
2. 제주지역 젠더폭력 현황

1. 전국 젠더폭력 현황

가. 디지털성폭력 현황

- 검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전국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3만 건 이상을 차지함
-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디지털성폭력에 포함되는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2017년 이후 약 20%(2018년 20.2%, 2019년 19.0%) 정도를 차지하며 최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의 발생건수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표 3-1〉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2017-2019)

(단위 : 건, (%))

연도	강간	강제 추행	강간 등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도 강간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공중밀집장소 추행	계
2019	5,826 (18.1)	15,672 (48.8)	182 (0.6)	8 (0.0)	655 (2.0)	43 (0.1)	6,085 (19.0)	646 (2.0)	1,378 (4.3)	1,609 (5.0)	32,104 (100.0)
2018	5,555 (16.9)	15,981 (48.7)	144 (0.4)	7 (0.0)	716 (2.2)	34 (0.1)	6,615 (20.2)	422 (1.3)	1,265 (3.9)	2,085 (6.4)	32,824 (100.0)
2017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29,357 (100.0)

자료: 대검찰청 범죄통계, 2020.

-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디지털 범죄와 관련이 있는 사이버 괴롭힘은 전체 폭력 범죄 대비 2019년 기준 8.9%, 성추행 및 성폭행은 3.9%로 지난해 대비 감소하였음

〈표 3-2〉 전국 학교 폭력 피해 유형

(단위 : %)

구분(%)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신체 폭행	금품갈취	강제 심부름	성추행·성폭행
2019년 1차	35.6	23.2	8.9	8.7	8.6	6.3	4.9	3.9
2018년 1차	34.7	17.2	10.8	11.8	10.0	6.4	3.9	5.2
2017년 1차	34.1	16.6	9.8	12.3	11.7	6.4	4.0	5.1

자료: 교육부 2019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9.8.26.)

- 학교유형별 사이버 괴롭힘 비율은 2019년 기준 중학교(13.5%)와 고등학교 학생(13.4%)의 비율로 높게 나타나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3-3〉 전국 학교 폭력 피해 유형(초·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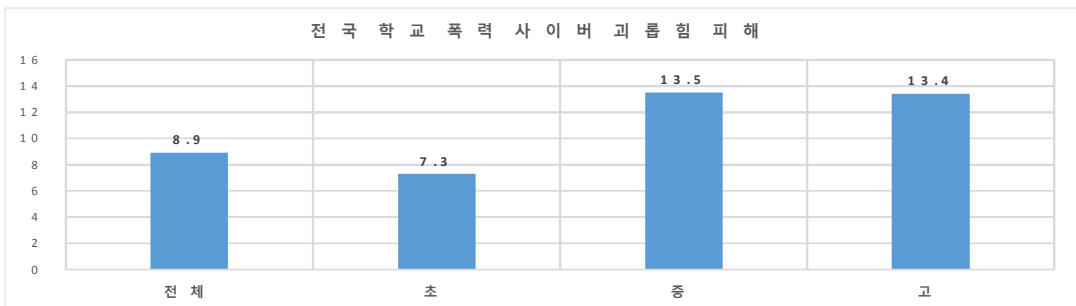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신체 폭행	금품 갈취	강제 심부름	성추행·성폭행
전체	35.6	23.2	8.9	8.7	8.6	6.3	4.9	3.9
초	35.1	23.8	7.3	8.8	9.2	6.5	5.3	3.9
중	35.8	21.9	13.5	8.9	6.7	5.6	4.0	3.6
고	39.4	20.6	13.4	7.4	6.3	5.0	3.9	4.0

자료: 교육부 2019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9.8.26.)

〈그림 3-1〉 전국 학교 폭력 사이버 괴롭힘 피해

(단위 : %)



나. 데이트 폭력 현황

- 전국 데이트 폭력 현황은 최근 3년간 약 14,000건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폭력범죄(66.0%)가 가장 많고 사기나 횡령 절도 등 지능범죄가 12.0%를 차지함
- 폭력범죄나 지능범죄를 기준으로 볼 때 최근 3년간 발생비율이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4〉 전국 데이트 폭력

(단위 : 인원(피의자원표), %)

구분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폭력범죄 (폭행, 상해, 손괴 등)	지능범죄 (사기, 횡령, 절도 등)	성폭속 범죄	기타	소계
2019	751 (5.4)	9,210 (66.0)	1,672 (12.0)	589 (4.2)	1,743 (12.5)	13,965 (100.0)
2018	753 (5.4)	9,372 (67.1)	1,744 (12.5)	502 (3.6)	1,594 (11.4)	13,965 (100.0)
2017	788 (5.3)	10,326 (69.3)	1,873 (12.6)	464 (3.1)	1,456 (9.8)	14,907 (100.0)

자료 : 경찰청 범죄통계 중 애인 대상 범죄를 연구자가 취합함

2. 제주지역 젠더폭력 현황

가. 제주지역 디지털성폭력 현황

- 제주지역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19년 505건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전체 인구 대비 10만 명당 발생비로 계산하면 약 78건으로 전국대비 높은 발생비¹⁷⁾(2018년 기준 전국 성폭력 발생비 61.9)를 나타내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디지털성폭력의 비율은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가 2019년 기준으로 (전국 19.0%, 제주 13.7%)로 전국에 비해 약간 낮고, 통신매체 음란 범죄는 (전국 4.3%, 제주 4.6%)로 전국수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발생비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3-5〉 제주지역 연도별 성범죄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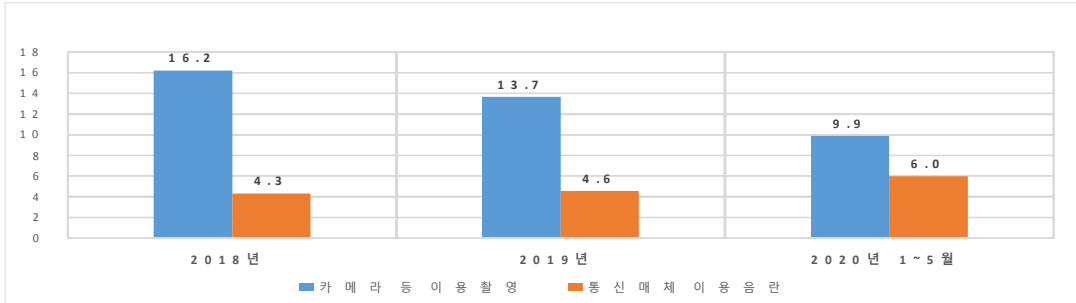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분 (건, %)	총 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목적다중 이용장소침입
2020년(1~5월)	182 (100.0)	151 (83.0)	18 (9.9)	11 (6.0)	2 (1.1)
2019년	505 (100.0)	404 (80.0)	69 (13.7)	23 (4.6)	9 (1.8)
2018년	489 (100.0)	382 (78.1)	79 (16.2)	21 (4.3)	7 (1.4)

자료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20.

17) 2018년 기준 전국 성폭력 발생비는 61.9로 나타남(경찰청 범죄통계
<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그림 3-2〉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폭력 현황



-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으나 (2019년 31.1%) 20세 이하도 2019년 기준 28.9%를 차지함, 특히 15세 이하도 10.1%로 나타나 미성년자의 피해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3-6〉 제주지역 성폭력 피해자 연령

(단위 : 명, %)

구 분	계	6세 이하	7-12세	13-15세	16-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불상
2020년 1~5월	182(건) (100.0)	3 (1.6)	5 (2.7)	8 (4.4)	27 (14.8)	70 (38.5)	24 (13.2)	14 (7.7)	21 (11.5)	4 (2.2)	6 (3.3)
'19년	505(건) (100.0)	4 (0.8)	20 (4.0)	27 (5.3)	95 (18.8)	157 (31.1)	61 (12.1)	50 (9.9)	44 (8.7)	17 (3.4)	30 (5.9)
'18년	489(건) (100.0)	5 (1.0)	28 (5.7)	27 (5.5)	75 (15.3)	143 (29.2)	73 (14.9)	44 (9.0)	35 (7.2)	12 (2.5)	47 (9.6)

자료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20.

- 제주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 괴롭힘은 2019년 기준 7.8%로 나타나 전국수치(2019년 8.9%, <표 3-2> 참조)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성추행 및 성폭행(2019년 전국 3.9%, 제주 4.0%)은 전국수치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임

〈표 3-7〉 제주도 학교 폭력 피해 유형

*중복 응답
(단위 : 명, (%))

구분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신체 폭행	금품 갈취	강제 심부름	성추행·성폭행	합계
2019년 1차	694 (35.9)	446 (23.1)	150 (7.8)	137 (7.1)	165 (8.5)	138 (7.1)	123 (6.4)	78 (4.0)	1,931 (100.0)
2018년 1차	688 (34.1)	335 (16.6)	200 (9.9)	230 (11.4)	230 (11.4)	133 (6.6)	93 (4.6)	106 (5.3)	2,015 (100)
2017년 1차	572 (33.8)	267 (15.8)	138 (8.1)	184 (10.9)	223 (13.2)	128 (7.6)	106 (6.3)	76 (4.5)	1,694 (1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온라인 조사)결과. (2019.8.28.)

- 제주지역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적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디지털성폭력 현황은 2018년 기준으로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관련 상담은 약간 증가(2017년 6.0%, 2018년 7.9%)한 반면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 상담은 대폭 증가(2017년 2.2%, 2018년 10.0%)한 것으로 나타남

〈표 3-8〉 제주지역 성폭력 현황(성폭력 상담소)

(단위 : 명, 건, %)

연도	소계	강간 및 유사강간	성추행	스토킹·성희롱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기타
2019	2,011 (100.0)	945 (47.0)	581 (28.9)	212 (10.5)	105 (5.2)	86 (4.3)	82 (4.1)
2018	280 (100.0)	87 (31.1)	76 (27.1)	18 (6.4)	22 (7.9)	28 (10.0)	49 (17.5)
2017	183 (100.0)	64 (35.0)	80 (43.7)	10 (5.5)	11 (6.0)	4 (2.2)	14 (7.7)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2020.

주 : 2017, 2018년 수치는 상담 인원수, 2019년 수치는 상담건수로 동일비교 불가

나. 제주지역 데이트 폭력 현황

- 제주지역 데이트 폭력은 경찰청 관련범죄 검거 건수로 볼 때 약 100건 내외로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범죄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해마다 약 60%선에 이르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경범죄 등 기타와 체포·감금·협박이 상당 비율로 집계되고 있음

〈표 3-9〉 제주지방경찰청 데이트 폭력 검거현황

구 분	합 계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살인	성폭력	경범죄 등 기타
2020. 6월	40 (100.0)	22 (55.0%)	10 (25.0%)	0 (0.0%)	0 (0.0%)	8 (20.0%)
2019년	98 (100.0)	60 (61.2%)	6 (6.1%)	0 (0.0%)	0 (0.0%)	32 (32.7%)
2018년	128 (100.0)	67 (52.3%)	24 (18.8%)	1(미수) (0.8%)	0 (0.0%)	36 (28.1%)
2017년	100 (100.0)	59 (59.0%)	22 (22.0%)	0 (0.0%)	0 (0.0%)	19 (19.0%)

자료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 ‘데이트 폭력’ 범죄 : ‘연인이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등’

※ 산출기준 : 각 경찰서 ‘데이트 폭력 근절 TF’ 처리현황을 수기 취합한 통계임

- 제주지역 상담소 통계 중 1366 제주센터에서 데이트 폭력을 따로 집계한 것은 2019년부터임
- 2019년 1366 제주센터의 데이트 폭력 상담건수는 모두 321건, 스토킹 상담건수는 21건으로 집계됨
- 가정폭력이 가장 많은 상담건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데이트 폭력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제주경찰청의 데이트 폭력 검거건수와 비교할 때 더 많은 상담건수를 기록하고 있어 실제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함

〈표 3-10〉 1366 제주센터 상담유형별 현황(2018-2020.05)

(단위 : 명)

구분	총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2020년 1~5월	3,780	3,435	171	69	7	68	30
2019	8,601	7,651	482	78	21	321	48
2018	8,012	7,430	420	165	397	-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2020

제 4 장

젠더폭력(디지털성폭력,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 결과

- 1. 조사개요
- 2. 조사결과
- 3. 소결

1. 조사개요

가. 조사 설계 및 방법

- 도내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50세 미만 남녀로 구성함
- 표본 수는 모두 530명으로 여성 317명, 남성 212명으로 여성이 약 60%를 차지함
-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대면 면접조사로 실시하였고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운 젠더폭력 조사내용의 특성상 조사원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직접 설문지에 표기하는 자기기입 방식으로 실시함
- 조사기간은 2020. 7월 22일~8월 20일 까지 진행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4.25\%$ 임
- 표본추출방법은 제주지역 전체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 비례 할당 표집 하여 전체 인구비례와 비슷하게 표집함
-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를 통하여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은 빈도 및 교차분석 등을 활용하였음

나. 조사 내용

- 본 연구를 위한 조사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 설문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여성폭력 일반	여성폭력 인식/경험/대응	• 여성폭력 인식 - 데이트 폭력, 디지털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 유형별 폭력 경험 • 폭력에 대한 대응
디지털성폭력	법/제도 인지	• 디지털성폭력 관련법 인지 • 유포/소비/제작(촬영) • 디지털성폭력 인식
	피해 경험	• 음란물 받은 경험 - 경험, 빈도, 행위자와의 관계, 피해 장소 • 불법촬영물 유포 - 경험, 행위자와의 관계, 피해 장소 • 불법촬영 피해 - 경험, 행위자와의 관계, 피해 장소 • 기타 피해 경험 • 피해 영향
	대응/필요한 도움/범죄 원인	• 피해 이후 대응 (전문기관 상담, 신고 등) • 행위자의 처벌 유무 및 원인 • 대응하지 않은 이유 • 필요한 도움 • 디지털성폭력 원인
	행위자 경험	• 행위자 (불법촬영, 유포, 소비 등) 경험 • 온라인 상 행위 장소, 감정 변화
데이트 폭력 (결혼포함)	데이트 폭력 인식	• 데이트 폭력 인식(행위통제, 언어 및 경제적 통제, 물리적 폭력, 성적 폭력) • 연인 관계에 대한 통념
	데이트 폭력 경험 및 대응	• 행위통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 등 • 폭력 경험 이후 느낌/반응/조치 • 폭력 이후 관계유지 원인 • 신고/상담 하지 않은 이유
정책 수요	공공 서비스 인지 및 정책 수요	• 공공 서비스 기관 인지 • 폭력의 원인 • 도정의 정책 인지 • 폭력방지 정책 수요

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다음과 같음
- 전체 응답자는 모두 530명으로 여성 59.8%, 남성 40.2%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10대에서 40대 까지 각각 비슷한 비율로 표집 되었음

- 본 조사가 신종 젠더폭력인 디지털성폭력과 데이트 폭력 중심의 조사인 점을 감안하여 10대와 여성을 약간 과표집 하였음

- 학력별로는 전문대/대졸(48.5%)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냄
- 지역별로도 전체 인구통계와 비례하여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가 유배우자 응답자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직업별로는 직장인(40.0%)과 학생(29.6%)이 가장 많았고 자영업/프리랜서(15.7%) 순으로 나타남

〈표 4-2〉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530(100.0)	317(59.8)	213(40.2)
연령	10대	117(22.1)	64(12.1)	53(10.0)
	20대	138(26.0)	85(16.0)	53(10.0)
	30대	135(25.5)	83(15.7)	52(9.8)
	40대 이상	140(26.4)	85(16.0)	55(10.4)
학력	중졸 이하	64(12.1)	41(7.7)	23(4.3)
	고졸	201(37.9)	116(21.9)	85(16.0)
	전문대/대졸	257(48.5)	154(29.1)	103(19.4)
	대학원수료이상	8(1.5)	6(1.1)	2(0.4)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202(38.1)	121(22.8)	81(15.3)
	제주시 읍면지역	122(23.0)	71(13.4)	51(9.6)
	서귀포시 동지역	100(18.9)	61(11.5)	39(7.4)
	서귀포시 읍면지역	106(20.0)	64(12.1)	42(7.9)
결혼유무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219(41.3)	146(27.5)	73(13.8)
	배우자 없음	311(58.7)	171(32.3)	140(26.4)
직업	학생	157(29.6)	91(17.2)	66(12.5)
	전업주부	41(7.7)	41(7.7)	0(0.0)
	직장인	212(40.0)	117(22.1)	95(17.9)
	자영업/프리랜서	83(15.7)	44(8.3)	39(7.4)
	무직	22(4.2)	16(3.0)	6(1.1)
	기타	15(2.8)	8(1.5)	7(1.3)

2. 조사결과

가. 젠더폭력 인식/경험/대응

1) 폭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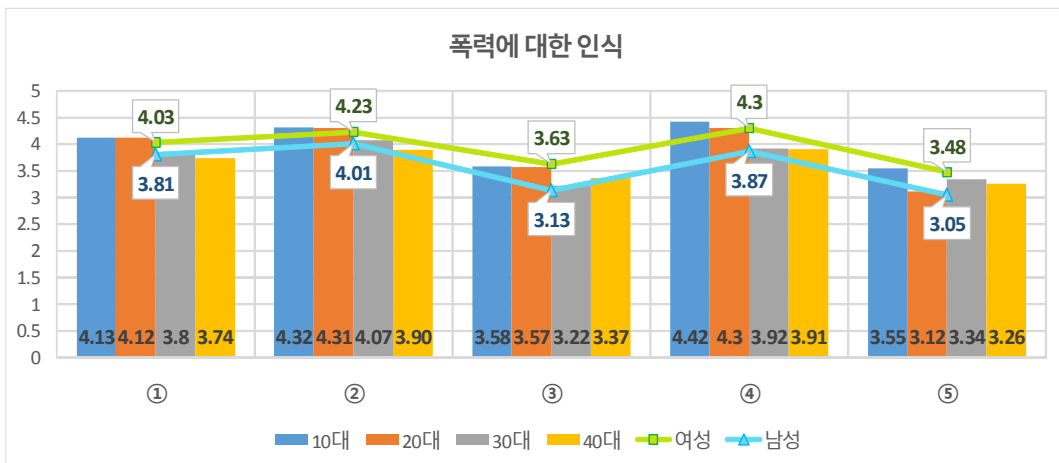
- 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데이트 폭력(연인관계, 디지털 폭력, 부부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항목을 선정하여 5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으로 인식)로 조사함
-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폭력 인식이 높은 항목은 디지털 폭력인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평균 4.14) 라는 항목이고 가장 인식이 낮은 항목은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평균 3.31) 이라는 항목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해와 폭력인식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인식을 나타냈고 여성과 남성간의 인식 차이가 커서 통계적으로 높은 의미가 있는 항목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이다’(여성 3.63, 남성 3.13) 와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여성 3.48, 남성 3.05), 그리고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여성 4.30, 남성 3.87) 항목에서 성별 간 인식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연령별 인식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10대와 20대가 30-40대보다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폭력 인식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10대 3.58, 30대 3.22)와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10대 4.42, 40대 3.91) 항목에서 가장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 인식은 10대(3.55)가 가장 높고 20대(3.12)가 가장 낮게 나타나 20대가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 가장 왜곡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3〉 폭력에 대한 인식

구 분	전체	성별			연령				
		여성	남성	t	10대	20대	30대	40대	t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 스킨십은 상대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3.94	4.03	3.81	4.70*	4.13	4.12	3.8	3.74	4.41*
불법촬영물 (몰래카메라)을 다운받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4.14	4.23	4.01	3.992*	4.32	4.31	4.07	3.90	3.560*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이다	3.43	3.63	3.13	22.550***	3.58	3.57	3.22	3.37	2.639*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4.13	4.30	3.87	19.541***	4.42	4.30	3.92	3.91	7.185***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3.31	3.48	3.05	16.039***	3.55	3.12	3.34	3.26	2.704*

※ *p<.05, **p<.01, ***p<.001

〈그림 4-1〉 폭력에 대한 인식(성별, 연령별)



①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 스킨십은 상대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②	불법촬영물 (몰래카메라)을 다운받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③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이다
④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⑤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2) 젠더 폭력 경험 유무 및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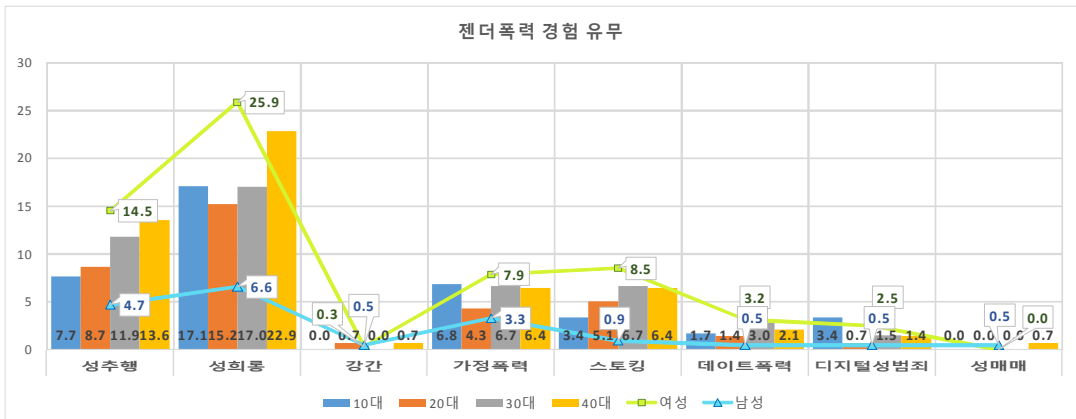
- 젠더폭력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폭력경험이 높은 비율로 조사된 유형은 성희롱(18.1%), 성추행(10.6%), 가정폭력(6.0%)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낸 유형은 성매매(0.2%)로 조사됨
- 성별 젠더폭력 경험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성추행(여성 14.5%, 남성 4.7%)과 성희롱(여성 25.9%, 남성 6.6%), 스토킹(여성 8.5%, 남성 0.9%)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 여성(25.9%)과 남성(6.6%) 모두 성희롱 경험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폭력유형과 연령별 분석에서는 모든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희롱에서는 40대(22.9%) 경험이 가장 높고 20대(15.2%)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고 디지털성폭력은 10대(3.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4-4〉 젠더폭력 경험 유무(성별, 연령별)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여성	남성	χ^2	10대	20대	30대	40대	χ^2
성추행	없음	89.4	85.5	95.3	14.527**	92.3	91.3	88.1	86.4	6.574
	있음	10.6	14.5	4.7		7.7	8.7	11.9	13.6	
성희롱	없음	81.9	74.1	93.4	33.033***	82.9	84.8	83.0	77.1	7.224
	있음	18.1	25.9	6.6		17.1	15.2	17.0	22.9	
강간	없음	99.6	99.7	99.5	0.080	100.0	99.3	100.0	99.3	1.820
	있음	0.4	0.3	0.5		0.0	0.7	0.0	0.7	
가정폭력	없음	94.0	92.1	96.7	5.882	93.2	95.7	93.3	93.6	5.804
	있음	6.0	7.9	3.3		6.8	4.3	6.7	6.4	
스토킹	없음	94.5	91.5	99.1	14.448**	96.6	94.9	93.3	93.6	12.908
	있음	5.5	8.5	0.9		3.4	5.1	6.7	6.4	
데이트 폭력	없음	97.9	96.8	99.5	4.603	98.3	98.6	97.0	97.9	9.478
	있음	2.1	3.2	0.5		1.7	1.4	3.0	2.1	
디지털성폭력	없음	98.3	97.5	99.5	3.278	96.6	99.3	98.5	98.6	6.812
	있음	1.7	2.5	0.5		3.4	0.7	1.5	1.4	
성매매	없음	99.8	100.0	99.5	1.491	100.0	100.0	100.0	99.3	2.791
	있음	0.2	0.0	0.5		0.0	0.0	0.0	0.7	

〈그림 4-2〉 젠더폭력 경험 유무



3) 젠더폭력 대응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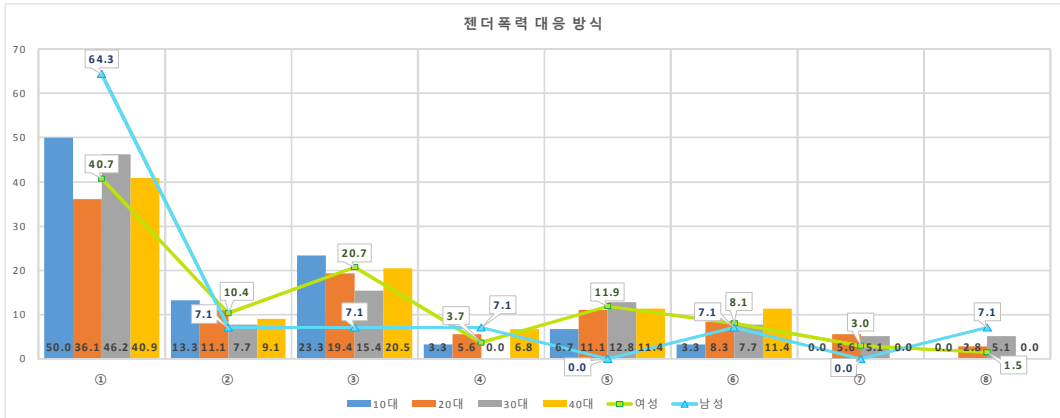
- 젠더폭력 대응방식은 전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음(43.0%)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친구에게 도움 요청(19.5%), 경찰에 신고(10.7%), 가족에게 도움 요청(10.1%)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4.0%로 비교적 적은 비율로 나타남
- 성별로는 대응하지 않음 항목에서는 여성(40.7%)보다 남성(64.3%)의 응답률이 높아 남성 응답자의 상당수가 대응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여성의 경우 대응하지 않음 다음으로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도움(20.7%)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11.9%)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비율과 비슷한 분포를 보임
- 연령별로는 대응하지 않음 항목에는 30대(46.2%),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도움 요청 항목은 10대(23.3%), 경찰에 신고 항목은 30대(12.8%)가 높은 응답률을 보여 전체 응답자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표 4-5〉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식

(단위 : 명, (%))

구 분		대응하지 않음	가족에게 도움 요청	친구 또는 동료에게 도움 요청	전문상담기 관에 도움 요청	경찰에 신고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알림	선생님, 직상상사에 도움 요청	기타
전체		64 (43.0)	15 (10.1)	29 (19.5)	6 (4.0)	16 (10.7)	12 (8.1)	4 (2.7)	3 (2.0)
성별	여성	55 (40.7)	14 (10.4)	28 (20.7)	5 (3.7)	16 (11.9)	11 (8.1)	4 (3.0)	2 (1.5)
	남성	9 (6.3)	1 (7.1)	1 (7.1)	1 (7.1)	0 (0.0)	1 (7.1)	0 (0.0)	1 (7.1)
연령	10대	15 (50.0)	4 (13.3)	7 (23.3)	1 (3.3)	2 (6.7)	1 (3.3)	0 (0.0)	0 (0.0)
	20대	13 (36.1)	4 (11.1)	7 (19.4)	2 (5.6)	4 (11.1)	3 (8.3)	2 (5.6)	1 (2.8)
	30대	18 (46.2)	3 (7.7)	6 (15.4)	0 (0.0)	5 (12.8)	3 (7.7)	2 (5.1)	2 (5.1)
	40대	18 (40.9)	4 (9.1)	9 (20.5)	3 (6.8)	5 (11.4)	5 (11.4)	0 (0.0)	0 (0.0)

〈그림 4-3〉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대응하지 않음	가족에게 도움 요청	친구 또는 동료에게 도움 요청	전문상담기관 에 도움 요청	경찰에 신고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알림	선생님, 직상상사에게 도움 요청	기타

나. 디지털성폭력

1)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 및 교육 경험

가) 컴퓨터 이용 시간

○ 평일 기준 컴퓨터 이용시간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는 평균 하루에 21시간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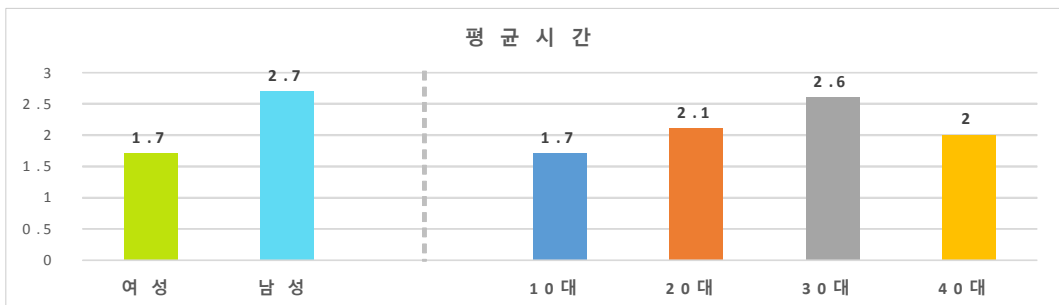
-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평균 2.7시간)이 여성(평균 1.7시간)보다 컴퓨터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30대(평균 2.6시간)가 가장 이용시간이 길었고 10대(평균 1.7시간)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표 4-6〉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

구분		평일평균(시간)	t/F	주말평균(시간)	t/F
전체		21		1.7	
성별	여성	1.7	17.995***	1.2	45.096***
	남성	2.7		2.5	
연령	10대	1.7	2.226	2.6	10.385***
	20대	2.1		2.0	
	30대	2.6		1.3	
	40대	2.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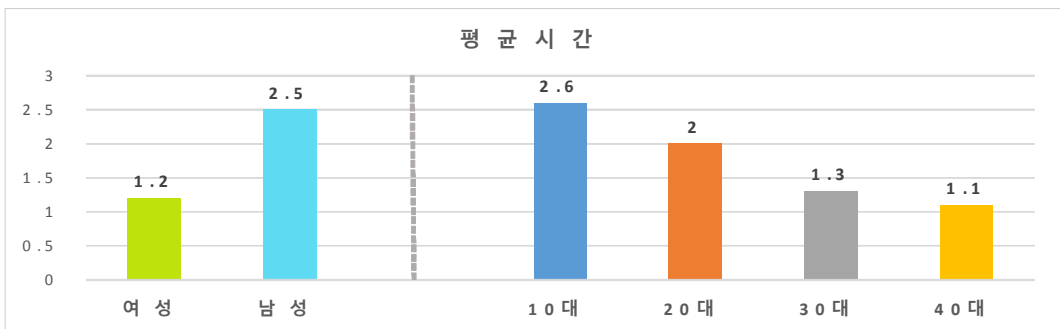
※ *p<.05, **p<.01, ***p<.001

〈그림 4-4〉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평일)



- 주말 기준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은 전체적으로 약 1.7시간으로 나타나 평일(2.1시간)보다 약간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녀 모두 평일보다 이용시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일과 마찬가지로 여성(평균 1.2시간)보다 남성(평균 2.5시간)이 이용시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조사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연령별 차이 또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평일 이용시간과 달리 10대(평균 2.6시간)가 가장 길었고 40대(평균 1.1시간)가 가장 이용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주말)



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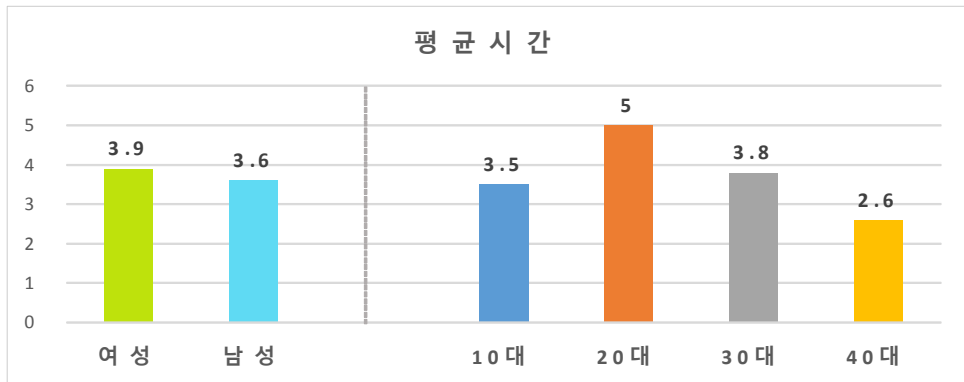
-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일 기준 응답자 전체 평균은 3.7시간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여성(3.9시간)이 남성(3.6시간)보다 사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사용시간은 20대가 하루 평균 5.0시간으로 가장 길고 40대가 2.6시간으로 가장 짧음

〈표 4-7〉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구분		평일평균(시간)	t/F	주말평균(시간)	t/F
전체		3.7		4.5	
성별	여성	3.9	1.338	4.4	0.143
	남성	3.6		4.5	
연령	10대	3.5	17.754***	4.5	12.704***
	20대	5.0		5.6	
	30대	3.8		4.6	
	40대	2.6		3.1	

※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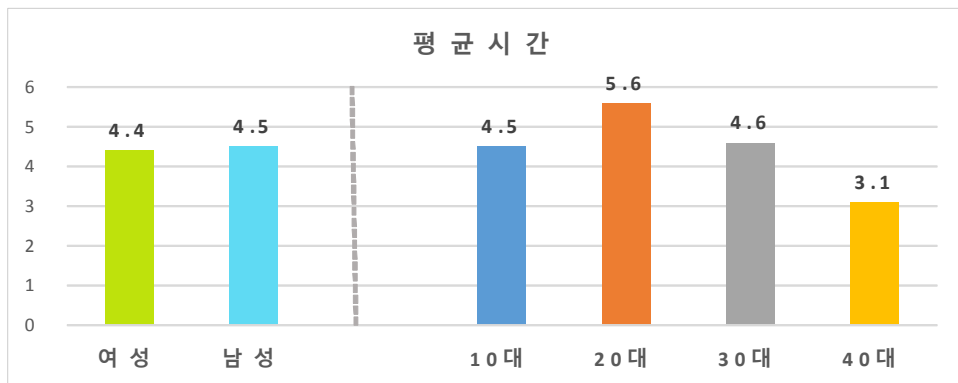
〈그림 4-6〉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평일)



○ 주말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전체적으로 4.5시간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여성(평균 4.4시간)과 남성(4.5시간)이 비슷한 사용시간을 나타냄
-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장 긴 연령대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20대(5.6시간)이고 가장 짧은 사용시간은 40대(3.1시간)로 나타남

〈그림 4-7〉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주말)



다) 정보통신 윤리교육 수강 경험

- 정보통신 윤리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절반(43.2%)정도가 교육수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응답자의 10.6%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함

-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경험(여성 42.9%, 남성 43.7%)에서는 비슷한 비율의 응답률을 보였으나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응답은 남성(6.6%)보다 여성(13.2%)이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연령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장 교육 경험이 높은 비율은 10대(59.0%), 가장 낮은 응답률은 40대(31.4%)로 연령이 높을수록 정보통신 윤리교육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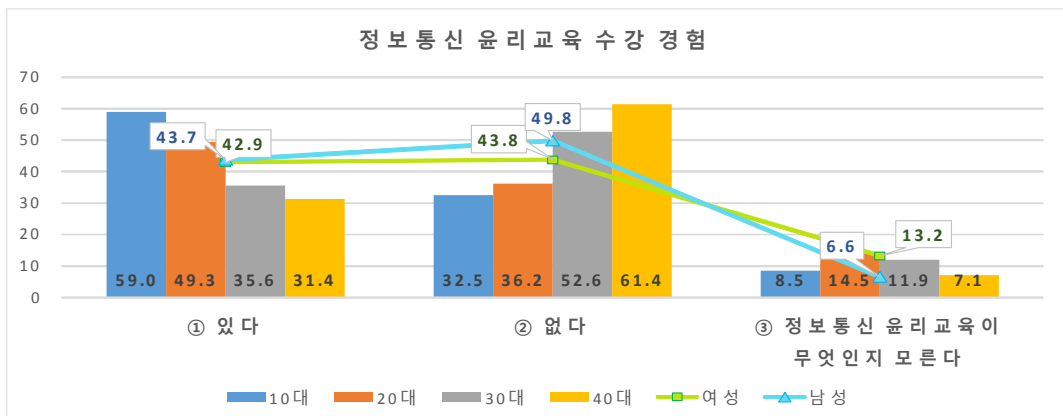
〈표 4-8〉 정보통신 윤리교육 경험

(단위 : 명, (%))

구 분		① 있다	② 없다	③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무엇인지 모른다	χ^2
전체		229(43.2)	245(46.2)	56(10.6)	
성별	여성	136(42.9)	139(43.8)	42(13.2)	6.356*
	남성	93(43.7)	106(49.8)	14(6.6)	
연령	10대	69(59.0)	38(32.5)	10(8.5)	34.410***
	20대	68(49.3)	50(36.2)	20(14.5)	
	30대	48(35.6)	71(52.6)	16(11.9)	
	40대	44(31.4)	86(61.4)	10(7.1)	

※ *p<.05, **p<.01, ***p<.001

〈그림 4-8〉 정보통신 윤리교육 경험



라) 폭력예방교육 또는 성평등 교육 수강 경험

- 폭력예방교육이나 성평등 교육 수강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수강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4.5%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조사됨
-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성(76.3%)이 남성(71.8%)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응답률을 나타냄
 -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 경험이 있다’에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률을 보인 연령은 10대(84.6%)이고 가장 낮은 응답률은 40대(60.7%)로 연령이 높을수록 폭력예방교육 경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됨

〈표 4-9〉 폭력예방교육 수강 경험

(단위 : 명, (%))

구 분		① 있다	② 없다	χ^2
전체		395 (74.5)	135 (25.5)	
성별	여성	242 (76.3)	75 (23.7)	1.365
	남성	153 (71.8)	60 (28.2)	
연령	10대	99 (84.6)	18 (15.4)	25.600***
	20대	114 (82.6)	24 (17.4)	
	30대	97 (71.9)	38 (28.1)	
	40대	85 (60.7)	55 (39.3)	

※ *p<.05, **p<.01, ***p<.001

2) 디지털성폭력 인식

가) 디지털성폭력 관련법 인지

-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약 14%,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 75.3%를 차지하여 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아주 미미한 차이지만 남성(13.6%)보다 여성(14.2%)이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10대(16.2%)이고 가장 낮은 연령은 40대(12.1%)로 조사됨

〈표 4-10〉 디지털성폭력 관련법 인식 정도

(단위 : 명, (%))

구 분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③ 내용을 잘 알고 있다	χ^2
전체		57 (10.8)	399 (75.3)	74 (14.0)	0.119
성별	여성	33 (10.4)	239 (75.4)	45 (14.2)	
	남성	24 (11.3)	160 (75.1)	29 (13.6)	
연령	10대	11 (9.4)	87 (74.4)	19 (16.2)	2.413
	20대	18 (13.0)	103 (74.6)	17 (12.3)	
	30대	14 (10.4)	100 (74.1)	21 (15.6)	
	40대	14 (10.0)	109 (77.9)	17 (12.1)	

나) 디지털성폭력 법과 제도별 인식

- 디지털성폭력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90% 이상 안다고 응답해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항목에서 79.2%가 안다고 응답해 가장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범죄이다’ (‘모른다’ 응답이 여성 3.2%, 남성 7.5%) 라는 항목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모른다’ 응답 여성 2.2%, 남성 7.5%)는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법과 제도에 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분석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낮게 조사된 항목인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에서 30대(‘안다’ 76.3%)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나타냄

〈표 4-11〉 디지털성폭력 관련법과 제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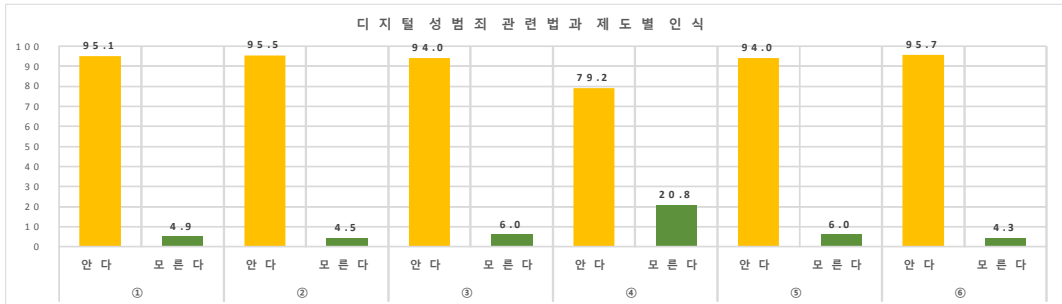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여성	남성	χ^2	10대	20대	30대	40대	χ^2
①	안다	95.1	96.8	92.5	5.185*	96.6	92.8	96.3	95.0	2.596
	모른다	4.9	3.2	7.5		3.4	7.2	3.7	5.0	
②	안다	95.5	96.2	94.4	1.007	94.9	92.8	96.3	97.9	4.511
	모른다	4.5	3.8	5.6		5.1	7.2	3.7	2.1	
③	안다	94.0	95.6	91.5	3.655	92.3	91.3	94.8	97.1	4.952
	모른다	6.0	4.4	8.5		7.7	8.7	5.2	2.9	
④	안다	79.2	80.1	77.9	0.372	80.3	80.4	76.3	80.0	0.967
	모른다	20.8	19.9	22.1		19.7	19.6	23.7	20.0	
⑤	안다	94.0	95.0	92.5	1.364	93.2	93.5	94.1	95.0	0.458
	모른다	6.0	5.0	7.5		6.8	6.5	5.9	5.0	
⑥	안다	95.7	97.8	92.5	8.632**	94.9	94.9	94.8	97.9	2.214
	모른다	4.3	2.2	7.5		5.1	5.1	5.2	2.1	

※ *p<.05, **p<.01, ***p<.001

①	통신매체(인터넷, 휴대폰 등)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범죄이다
②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였으나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했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받는다
③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의 복사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 된다
④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⑤	누군가의 얼굴사진에 신체가 노출된 타인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다
⑥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림 4-9〉 디지털성폭력 관련법과 제도 인식



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의식

- 디지털성폭력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어도 피해자 책임이다’(평균 3.39)에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 ‘가해자를 밝히는 것이 너무 어려우며 처벌도 매우 가볍다’(평균 3.12)는 항목에 가장 동의 정도가 낮게 조사됨
- 성별로는 세 가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인식을 나타냈음, 구체적으로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은 그 사진(영상)을 찍은 여성의 잘못이다’(여성 3.36, 남성 3.12),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어도 피해자 책임이다’(여성 3.51, 남성 3.23), ‘가해자를 밝히는 것이 너무 어려우며 처벌도 매우 가볍다’(여성 3.23, 남성 2.94) 항목에서 폭력에 대한 의식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어도 피해자 책임이다’ 항목에서 10대(평균 3.50)가 타 연령대에 비해 약간 높은 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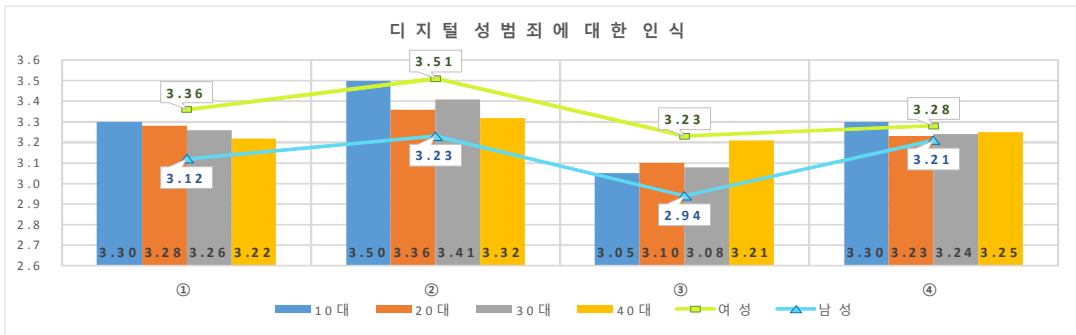
〈표 4-12〉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여성	남성	t	10대	20대	30대	40대	t
①	3.26	3.36	3.12	8.894**	3.30	3.28	3.26	3.22	0.173
②	3.39	3.51	3.23	13.754***	3.50	3.36	3.41	3.32	1.023
③	3.12	3.23	2.94	11.691**	3.05	3.10	3.08	3.21	0.701
④	3.25	3.28	3.21	0.9	3.30	3.23	3.24	3.25	0.142

※ *p<.05, **p<.01, ***p<.001

①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은 그 사진(영상)을 찍은 여성의 잘못이다
②	성관계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어도 피해자 책임이다
③	가해자를 밝히는 것이 너무 어려우며 처벌도 매우 가볍다
④	피해 사진이나 동영상 삭제 서비스는 완전하게 처리되기 어렵다

〈그림 4-10〉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인식



①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은 그 사진(영상)을 찍은 여성의 잘못이다
②	성관계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어도 피해자 책임이다
③	가해자를 밝히는 것이 너무 어려우며 처벌도 매우 가볍다
④	피해 사진이나 동영상 삭제 서비스는 완전하게 처리되기 어렵다

3) 디지털성폭력 피해 경험

가) 디지털 음란물 수신 경험

- 사이버 상에서 성적 메시지나 음란물을 받거나 성희롱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 받아본 적이 있다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12.6%를 차지함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여성(13.6%)이 남성(11.3%)보다 수신경험이 있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낸 연령은 40대(18.6%)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음란물 수신 경험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나타남

〈표 4-13〉 사이버 음란물·성희롱 수신 경험 유무

(단위 : 명, (%))

구 분		① 받아본 적 있다	② 받아본 적 없다	χ^2
전체		67 (12.6)	463 (87.4)	0.609
성별	여성	43 (13.6)	274 (86.4)	
	남성	24 (11.3)	189 (88.7)	
연령	10대	10 (8.5)	107 (91.5)	7.589
	20대	13 (9.4)	125 (90.6)	
	30대	18 (13.3)	117 (86.7)	
	40대	26 (18.6)	114 (81.4)	

□ 음란물 메시지 발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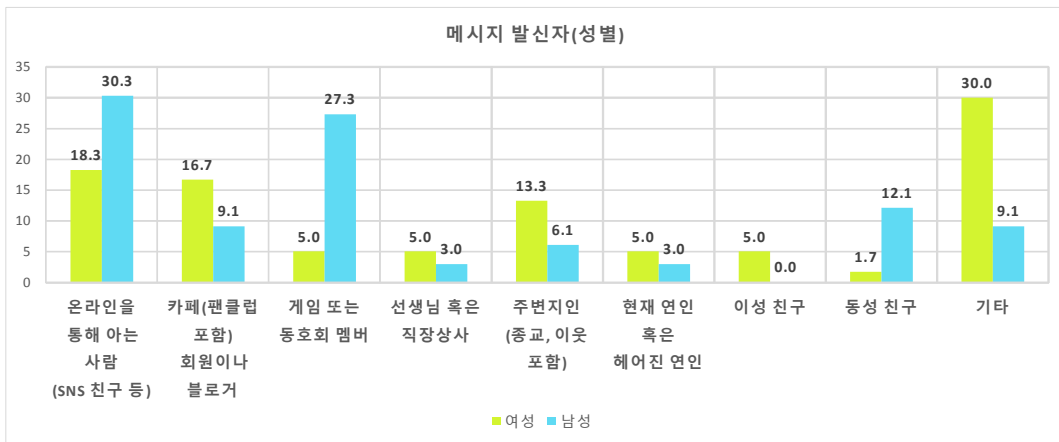
- 음란 메시지 발신자는 전체적으로 기타(알 수 없음)(22.6%)와 온라인을 통해 아는 사람(22.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카페 회원이나 블로거(14.0%), 게임 또는 동호회 멤버(12.9%), 주변지인(10.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모르는 사람인 기타(30.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온라인을 통해 아는 사람(18.3%), 카페 회원이나 블로거(16.7%)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은 온라인을 통해 아는 사람(30.3%)이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률을 보였고 게임 혹은 동호회 멤버(27.3%), 동성친구(12.1%)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여성과 남성의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영역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표 4-14〉 메시지 발신자(중복응답)

(단위 : 명, (%))

구 분		온라인을 통해 아는 사람(SNS 친구 등)	카페(팬클 럽 포함) 회원이나 블로거	게임 또는 동호회 멤버	선생님 혹은 직장상사	주변지인 (종교, 이웃 포함)	현재 연인 혹은 헤어진 연인	이성 친구	동성 친구	가족 및 친척	기타
전체		21 (22.6)	13 (14.0)	12 (12.9)	4 (4.3)	10 (10.8)	4 (4.3)	3 (3.2)	5 (5.4)	0 (0.0)	21 (22.6)
성별	여성	11 (18.3)	10 (16.7)	3 (5.0)	3 (5.0)	8 (13.3)	3 (5.0)	3 (5.0)	1 (1.7)	0 (0.0)	18 (30.0)
	남성	10 (30.3)	3 (9.1)	9 (27.3)	1 (3.0)	2 (6.1)	1 (3.0)	0 (0.0)	4 (12.1)	0 (0.0)	3 (9.1)

〈그림 4-11〉 메시지 발신자(중복응답)



□ 음란물, 메시지, 성희롱 메시지 발신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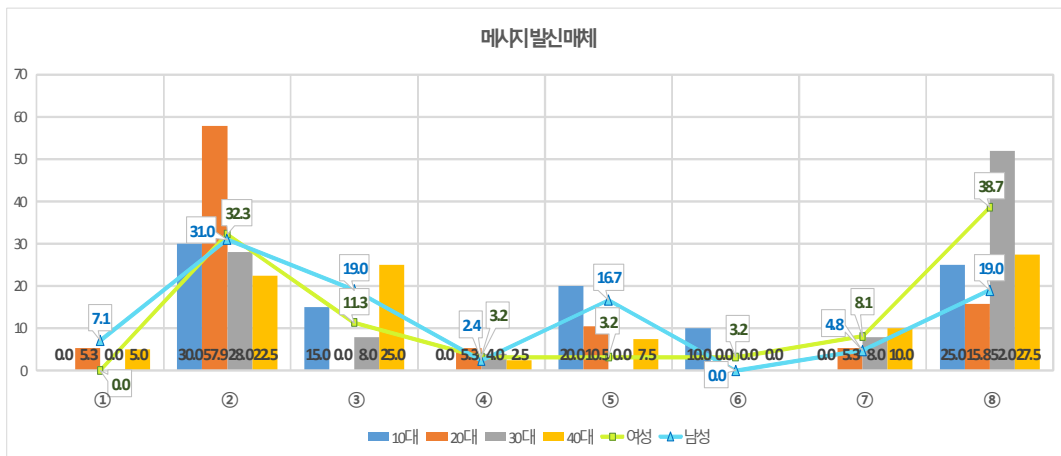
- 메시지 발신매체는 전체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31.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메일이나 문자·전화(30.8%),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메신저 등)(14.4%)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이메일이나 문자·전화(38.7%),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32.3%)가 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31.0%), 인스턴트 메신저(19.0%), 이메일이나 문자·전화(19.0%) 순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연령별로는 SNS 매체로 소통한 사례는 10대(30.0%)와 20대(57.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메일이나 문자·전화로 음란물을 받은 집단은 30대(52.0%)와 40대(27.5%)에서 높게 나타남

〈표 4-15〉 메시지 발신 매체

(단위 : 명, (%))

구 분		① 개인방송(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②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③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메신저 등)	④ 커뮤니티 게시판(게시글, 댓글 포함)	⑤ 게임채팅	⑥ 채팅어플	⑦ 블로그/카페 게시판	⑧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
전체		3 (2.9)	33 (31.7)	15 (14.4)	3 (2.9)	9 (8.7)	2 (1.9)	7 (6.7)	32 (30.8)
성별	여성	0 (0.0)	20 (32.3)	7 (11.3)	2 (3.2)	2 (3.2)	2 (3.2)	5 (8.1)	24 (38.7)
	남성	3 (7.1)	13 (31.0)	8 (19.0)	1 (2.4)	7 (16.7)	0 (0.0)	2 (4.8)	8 (19.0)
연령	10대	0 (0.0)	6 (30.0)	3 (15.0)	0 (0.0)	4 (20.0)	2 (10.0)	0 (0.0)	5 (25.0)
	20대	1 (5.3)	11 (57.9)	0 (0.0)	1 (5.3)	2 (10.5)	0 (0.0)	1 (5.3)	3 (15.8)
	30대	0 (0.0)	7 (28.0)	2 (8.0)	1 (4.0)	0 (0.0)	0 (0.0)	2 (8.0)	13 (52.0)
	40대	2 (5.0)	9 (22.5)	10 (25.0)	1 (2.5)	3 (7.5)	0 (0.0)	4 (10.0)	11 (27.5)

〈그림 4-12〉 메시지 발신 매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개인방송(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메신저 등)	커뮤니티 게시판(게시글, 댓글 포함)	게임채팅	채팅어플	블로그/카페 게시판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

나) 불법 촬영물 피해 경험

- 전체 응답자 중 불법촬영물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모두 5명으로 전체 0.9%로 조사됨, 성별로는 여성이 4명(1.3%) 남성 1명(0.5%)로 조사됨
- 불법촬영물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3명)이거나 가족 및 친척(2명)인 경우로 나타남
- 불법촬영 피해 장소는 집(2명), 주택가나 골목, 야외 유원지·공원·주차장, 대중교통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남

다) 디지털성폭력 우려로 인한 행위

-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행위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내 사진이 잘못 사용될까봐 SNS 계정의 공개설정 범위를 재설정했다’(29.4%), ‘온라인에서 누군가 나를 엿보거나 감시할까봐 내 일상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21.5%), ‘몰래카메라가 있을까봐 두려워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장소 이용을 하지 않은 적이 있다’(21.1%) 순으로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성이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여성이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불안이 많다고 볼 수 있음
- 구체적 성별 차이가 뚜렷한 항목은 ‘내 사진이 잘못 사용될까봐 SNS 계정의 공개설정 범위를 확인하고 재설정’(여성36.3%, 남성 19.2%), ‘온라인에서 누군가 나를 엿보거나 감시할까봐 내 일상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음’(여성 27.1%, 남성 13.1%), ‘몰래카메라가 있을까봐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장소 이용을 하지 않은 적이 있음’(여성 33.1%, 남성 3.3%)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두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내 사진이 잘못 사용될까봐 SNS 계정의 공개설정 범위를 확인하고 재설정’ 항목에서는 10대(32.5%)와 20대(36.2%)가 유경험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몰래카메라가 있을까봐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장소에서 이용을 하지 않은 적이 있음’ 항목에도 10대(29.1%)와 20대(25.4%)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표 4-16〉 디지털성폭력 우려로 인한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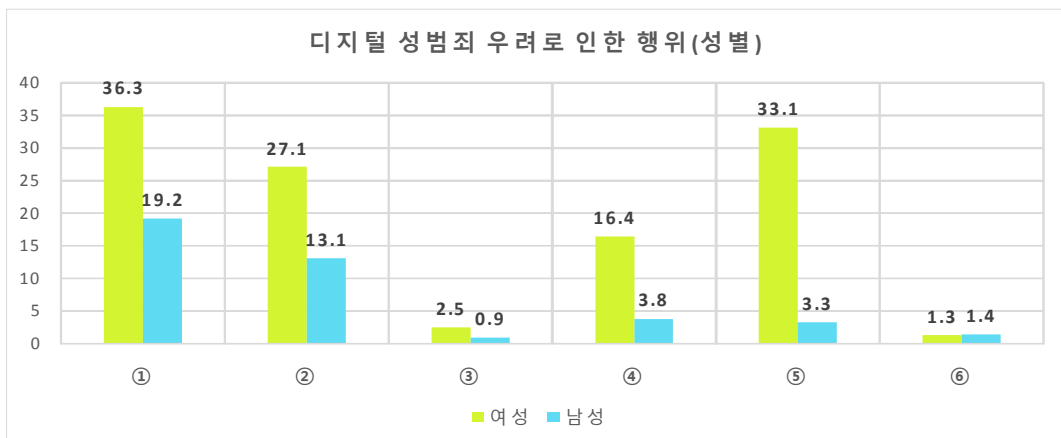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χ^2	연령				χ^2
		여성	남성		10대	20대	30대	40대	
①	있다	29.4	36.3	17.786***	32.5	36.2	28.1	21.4	8.020*
	없다	70.6	63.7		67.5	63.8	71.9	78.6	
②	있다	21.5	27.1	14.756***	24.8	19.6	17.8	24.3	2.806
	없다	78.5	72.9		75.2	80.4	82.2	75.7	
③	있다	1.9	2.5	1.728	4.3	1.4	0.7	1.4	4.86
	없다	98.1	97.5		95.7	98.6	99.3	98.6	
④	있다	11.3	16.4	20.300***	10.3	10.1	11.9	12.9	0.689
	없다	88.7	83.6		89.7	89.9	88.1	87.1	
⑤	있다	21.1	33.1	68.049***	29.1	25.4	17.8	13.6	11.607**
	없다	78.9	66.9		70.9	74.6	82.2	86.4	
⑥	있다	1.3	1.3	0.021	1.7	2.2	0.0	1.4	2.726
	없다	98.7	98.7		98.3	97.8	100.0	98.6	

※ *p<.05, **p<.01, ***p<.001

①	내 사진이 잘못 사용될까봐 SNS 계정의 공개설정 범위를 확인하고 재설정했다
②	온라인에서 누군가 나를 엿보거나 감시할까봐 내 일상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
③	온라인에 유포된 내 사진이나 영상을 본 사람이 있을까봐 외출을 자제했다
④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공격을 받을까봐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웠다
⑤	몰래카메라가 있을까봐 두려워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장소 이용을 하지 않은 적이 있다
⑥	나의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의 두려움으로 억지로 연인관계를 유지한 적이 있다

〈그림 4-13〉 디지털성폭력 우려로 인한 행위



4) 디지털성폭력 대응

가) 피해 경험 시 대응 방법

- 디지털성폭력 피해 시 대응방법으로는 전체적으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음(34.5%) 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경찰에 신고(11.9%), 해당 사이트 탈퇴(10.7%), 해당 사이트 아이디 새로 작성(9.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30.4%)과 남성(42.9%) 모두 대응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나 여성은 해당 사이트 완전 탈퇴(14.3%)와 아이디 새로 작성 재사용(12.5%) 순으로 높은 응답률은 나타낸 반면, 남성은 경찰에 신고(17.9%)와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 요청(14.3%) 순으로 높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음
 - 연령별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 항목에서는 10대(60.0%), 20대(35.7%), 40대(36.8%)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경찰에 신고’ 항목은 20대(17.9%)와 40대(15.8%)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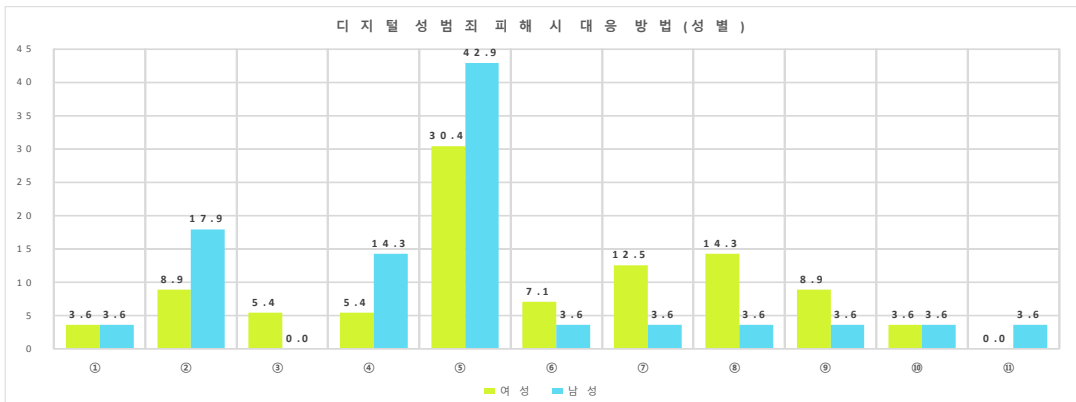
〈표 4-17〉 디지털성폭력 대응 방법(중복응답)

(단위 :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 체		3 (3.6)	10 (11.9)	3 (3.6)	7 (8.3)	29 (34.5)	5 (6.0)	8 (9.5)	9 (10.7)	6 (7.1)	3 (3.6)	1 (1.2)
성별	여성	2 (3.6)	5 (8.9)	3 (5.4)	3 (5.4)	17 (30.4)	4 (7.1)	7 (12.5)	8 (14.3)	5 (8.9)	2 (3.6)	0 (0.0)
	남성	1 (3.6)	5 (17.9)	0 (0.0)	4 (14.3)	12 (42.9)	1 (3.6)	1 (3.6)	1 (3.6)	1 (3.6)	1 (3.6)	1 (3.6)
연령	10대	0 (0.0)	0 (0.0)	0 (0.0)	0 (0.0)	9 (60.0)	0 (0.0)	2 (13.3)	1 (6.7)	3 (20.0)	0 (0.0)	0 (0.0)
	20대	2 (7.1)	5 (17.9)	2 (7.1)	3 (10.7)	10 (35.7)	1 (3.6)	2 (7.1)	2 (7.1)	0 (0.0)	1 (3.6)	0 (0.0)
	30대	1 (4.5)	2 (9.1)	1 (4.5)	0 (0.0)	3 (13.6)	3 (13.6)	3 (13.6)	5 (22.7)	2 (9.1)	1 (4.5)	1 (4.5)
	40대	0 (0.0)	3 (15.8)	0 (0.0)	4 (21.1)	7 (36.8)	1 (5.3)	1 (5.3)	1 (5.3)	1 (5.3)	1 (5.3)	0 (0.0)

①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접수했다
② 경찰(온라인 사이버 수사대 포함)에 신고했다
③ 해당 서비스(사이트, 어플)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④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⑥ 상대방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⑦ 해당 서비스(사이트, 어플)의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재사용했다
⑧ 해당 서비스(사이트, 어플)를 완전히 탈퇴했다
⑨ 친구나 주변지인과 의논했다
⑩ 가족과 의논했다
⑪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와 의논했다

〈그림 4-14〉 디지털성폭력 대응 방법(중복응답)



나) 대응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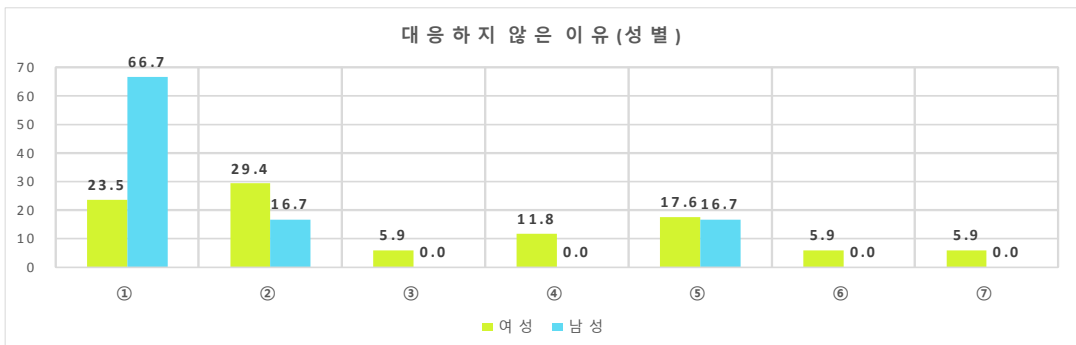
- 디지털성폭력 피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41.4%)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24.1%),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17.2%) 순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29.4%)은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남성(66.7%)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표 4-18〉 대응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 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신고를 해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기타	χ^2
전 체	29	12 (41.4)	7 (24.1)	1 (3.4)	2 (6.9)	5 (17.2)	1 (3.4)	1 (3.4)	
성 별	여성	4 (23.5)	5 (29.4)	1 (5.9)	2 (11.8)	3 (17.6)	1 (5.9)	1 (5.9)	7.170
	남성	8 (66.7)	2 (16.7)	0 (0.0)	0 (0.0)	2 (16.7)	0 (0.0)	0 (0.0)	

〈그림 4-15〉 대응하지 않은 이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신고를 해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기타

다) 경찰신고 이후 처벌 여부

-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처벌여부에 관한 조사결과 전체 15명 중 40%(6명)이 처벌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확인하지 않음(33.3%), 처벌을 받지 않음(20.0%)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는 처벌을 받음(55.6%)이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확인하지 않음(50.0%)이 높게 나타남

〈표 4-19〉 전문(상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

(단위 : 명, (%))

구 분		①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받지 않았다	② 처벌을 받았다(게시글 삭제, 서비스 이용 차단, 사이트 폐쇄 등)	③ 확인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	④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χ^2
전 체	15	3 (20.0)	6 (40.0)	5 (33.3)	1 (6.7)	3.750
성 별	여성	1 (11.1)	5 (55.6)	2 (22.2)	1 (11.1)	
	남성	2 (33.3)	1 (16.7)	3 (50.0)	0 (0.0)	

- 디지털성폭력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부족(2명)과 상대방의 신원파악 불가(1명) 순으로 나타남

5) 디지털성폭력 발생원인/필요한 지원

가) 디지털성폭력 발생원인

- 디지털성폭력 발생원인은 전체적으로 관련법의 처벌조항 미비함(32.6%),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21.9%), 성인권이나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16.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는데 관련법의 처벌조항 미비함(여성 36.6%, 남성 26.8%),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여성 24.0%, 남성 18.8%) 항목에서는 여성의 응답률이 높은 반면, 성인권이나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항목은 남성(17.4%)이 여성(15.1%)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연령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관련법의 처벌조항 미비함’ 항목에서는 10대(39.3%),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는 40대(25.7%), ‘성인권이나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은 30대(22.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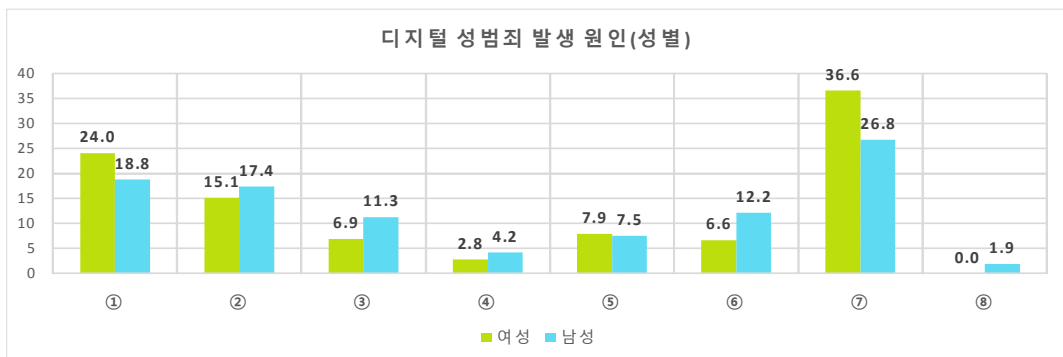
〈표 4-20〉 디지털성폭력 발생원인

(단위 : 명, (%))

구 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	성인권이 나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디지털 기기사용 에 대한 윤리의식 부족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심코 업로드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처 부족	온라인 성희롱 성 폭력 문제 에 대한 낮은 사회적 관심	관련법의 처벌조항 미비함	기타	χ^2
전 체		116 (21.9)	85 (16.0)	46 (8.7)	18 (3.4)	41 (7.7)	47 (8.9)	173 (32.6)	4 (0.8)	
성 별	여성	76 (24.0)	48 (15.1)	22 (6.9)	9 (2.8)	25 (7.9)	21 (6.6)	116 (36.6)	0 (0.0)	19.661**
	남성	40 (18.8)	37 (17.4)	24 (11.3)	9 (4.2)	16 (7.5)	26 (12.2)	57 (26.8)	4 (1.9)	
연 령	10대	24 (20.5)	13 (11.1)	5 (4.3)	2 (1.7)	13 (11.1)	13 (11.1)	46 (39.3)	1 (0.9)	28.972
	20대	27 (19.6)	16 (11.6)	12 (8.7)	5 (3.6)	12 (8.7)	13 (9.4)	51 (37.0)	2 (1.4)	
	30대	29 (21.5)	30 (22.2)	14 (10.4)	3 (2.2)	11 (8.1)	11 (8.1)	36 (26.7)	1 (0.7)	
	40대	36 (25.7)	26 (18.6)	15 (10.7)	8 (5.7)	5 (3.6)	10 (7.1)	40 (28.6)	0 (0.0)	

※ *p<.05, **p<.01, ***p<.001

〈그림 4-16〉 디지털성폭력 발생원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	성인권이나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디지털 기기사용에 대한 윤리의식 부족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심코 업로드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처 부족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대한 낮은 사회적 관심	관련법의 처벌조항 미비함	기타

나) 필요한 지원

- 디지털성폭력 피해 시 원하는 도움에 관한 응답 1순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법적 제재(34.9%), 피해자 보호 및 지원(23.2%),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17.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우선순위는 변화가 없지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적 제재(여성 40.4%, 남성 26.8%)와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여성 18.6%, 남성 15.0%)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남성(27.7%)이 여성(20.2%)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적 제재는 20대(39.9%),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항목은 40대(27.9%),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항목은 30대(2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21〉 디지털성폭력에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 명, (%))

구 분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위로, 지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피해자 지원 기관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개인 정보보호 와 2차 가해 방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학교 또는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적 제재	기타	χ^2
전 체		18 (3.4)	123 (23.2)	27 (5.1)	54 (10.2)	91 (17.2)	29 (5.5)	185 (34.9)	3 (0.6)	
성 별	여성	9 (2.8)	64 (20.2)	13 (4.1)	27 (8.5)	59 (18.6)	16 (5.0)	128 (40.4)	1 (0.3)	16.366*
	남성	9 (4.2)	59 (27.7)	14 (6.6)	27 (12.7)	32 (15.0)	13 (6.1)	57 (26.8)	2 (0.9)	
연 령	10대	8 (6.8)	26 (22.2)	5 (4.3)	10 (8.5)	23 (19.7)	11 (9.4)	34 (29.1)	0 (0.0)	31.834
	20대	4 (2.9)	29 (21.0)	5 (3.6)	21 (15.2)	16 (11.6)	6 (4.3)	55 (39.9)	2 (1.4)	
	30대	2 (1.5)	29 (21.5)	8 (5.9)	17 (12.6)	27 (20.0)	6 (4.4)	45 (33.3)	1 (0.7)	
	40대	4 (2.9)	39 (27.9)	9 (6.4)	6 (4.3)	25 (17.9)	6 (4.3)	51 (36.4)	0 (0.0)	

※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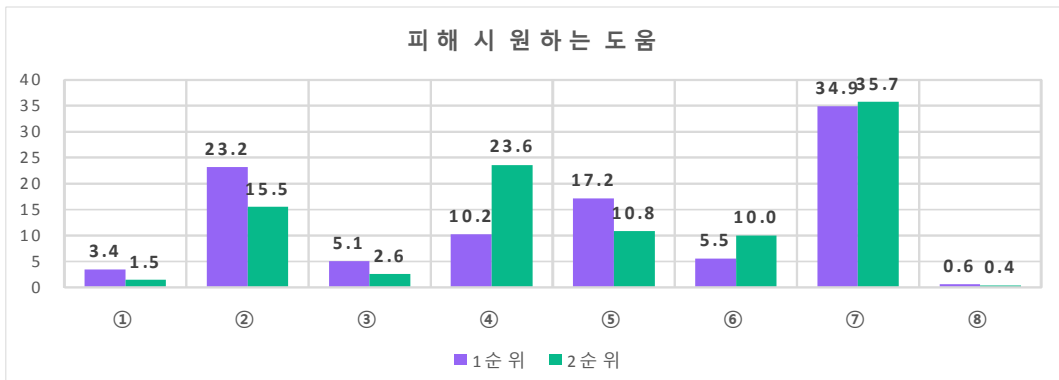
- 디지털성폭력 피해 시 원하는 도움으로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적 제재(35.3%), 피해자 보호 및 지원(19.3%), 개인 정보 보호와 2차 가해 방지(16.9%),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14.0%)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2〉 피해 시 원하는 도움(1순위+2순위)

(단위 : 명, (%))

구 분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위로, 지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피해자 지원 기관 및 대응에 대한 정보제공	개인 정보보호와 2차 가해 방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학교/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적 제재	기타
1순위	18 (3.4)	123 (23.2)	27 (5.1)	54 (10.2)	91 (17.2)	29 (5.5)	185 (34.9)	3 (0.6)
2순위	8 (1.5)	82 (15.5)	14 (2.6)	125 (23.6)	57 (10.8)	53 (10.0)	189 (35.7)	2 (0.4)
합	26 (2.5)	205 (19.3)	41 (3.9)	179 (16.9)	148 (14.0)	82 (7.7)	374 (35.3)	5 (0.5)

〈그림 4-17〉 피해 시 원하는 도움(1순위, 2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위로, 지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피해자 지원 기관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개인 정보보호와 2차 가해 방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학교/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적 제재	기타

6) 디지털성폭력 가해 행위

가) 디지털성폭력 가해 경험

○ 디지털성폭력 가해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 ‘야한농담’이나 ‘부모비하’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항목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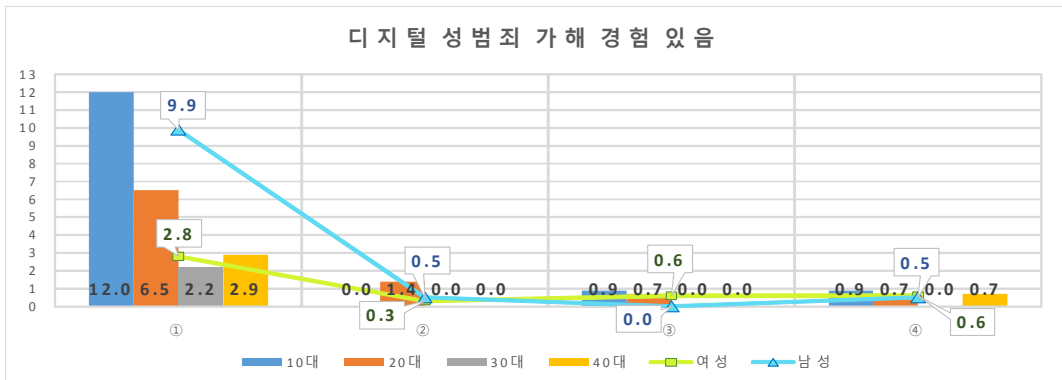
〈표 4-23〉 디지털성폭력 가해 경험

(단위 : 명, %)

구분		전체	성별		χ^2
			여성	남성	
온라인에서 섹드립(야한농담)이나 패드립(부모 비하)	있다	30(5.7)	9(2.8)	21(9.9)	11.757**
	없다	500(94.3)	308(97.2)	192(90.1)	
노출 사진이나 성관계영상에 지인 얼굴을 합성	있다	2(0.4)	1(0.3)	1(0.5)	0.080
	없다	528(99.6)	316(99.7)	212(99.5)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다리, 가슴 등) 혹은 성관계 동영상 촬영	있다	2(0.4)	2(0.6)	0(0.0)	1.349
	없다	528(99.6)	315(99.4)	213(100.0)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혹은 영상을 전송하거나 온라인 게시	있다	3(0.6)	2(0.6)	1(0.5)	0.059
	없다	527(99.4)	315(99.4)	212(99.5)	

※ *p<.05, **p<.01, ***p<.001

〈그림 4-18〉 디지털성폭력 가해 경험 있음



①	온라인에서 섹드립(야한농담)이나 패드립(부모 비하)
②	노출 사진이나 성관계영상에 지인 얼굴을 합성
③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다리, 가슴 등) 혹은 성관계 동영상 촬영
④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혹은 영상을 전송하거나 온라인 게시

- ‘야한농담’이나 ‘부모비하’ 경험의 경우는 성별, 연령별 분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남성(9.9%)이 여성(2.8%)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의 응답률을 기록함
- 연령별로는 10대(12.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20대(6.5%) 순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야한농담’이나 ‘부모비하’와 같은 행위를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남

〈표 4-24〉 온라인에서 섹드립(야한 농담)이나 패드립(부모 비하)

(단위 : 명, (%))

구 분		① 있다	② 없다	χ^2
전 체		30(5.7)	500(94.3)	
성별	여성	9(2.8)	308(97.2)	11.757**
	남성	21(9.9)	192(90.1)	
연령	10대	14(12.0)	103(88.0)	13.952**
	20대	9(6.5)	129(93.5)	
	30대	3(2.2)	132(97.8)	
	40대	4(2.9)	136(97.1)	

※ *p<.05, **p<.01, ***p<.001

나) 가해 행위 시 이용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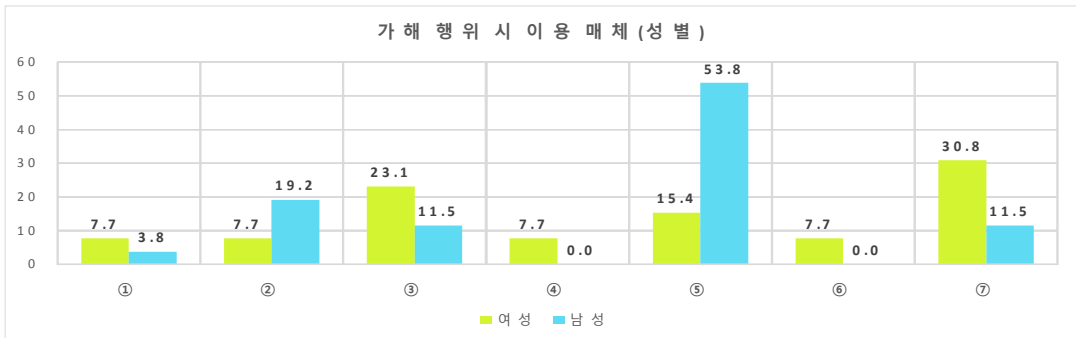
- 디지털성폭력 가해 행위 시 이용하는 매체는 전체적으로 게임채팅(41.0%)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메일이나 문자·전화(17.9%),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SNS(15.4%), 인스턴트(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다이렉트메시지 등) 메신저(15.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이메일이나 문자·전화(30.8%) 이용이 가장 많고 남성은 게임채팅(53.8%)을 통한 가해행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5〉 가해 행위 시 이용 매체

(단위 : 명, (%))

구 분	개인방송유 튜브, 아프리카 TV 등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 리 등)	인스턴트 메신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다이렉트 메시지 등)	커뮤니티 게시판게시 글, 댓글 포함	게임채팅	블로그/카페 게시판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
전 체	2 (5.1)	6 (15.4)	6 (15.4)	1 (2.6)	16 (41.0)	1 (2.6)	7 (17.9)
성별							
여성	1 (7.7)	1 (7.7)	3 (23.1)	1 (7.7)	2 (15.4)	1 (7.7)	4 (30.8)
남성	1 (3.8)	5 (19.2)	3 (11.5)	0 (0.0)	14 (53.8)	0 (0.0)	3 (11.5)

〈그림 4-19〉 가해 행위 시 이용 매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개인방송유 튜브, 아프리카 TV 등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인스턴트 메신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다이렉트 메시지 등)	커뮤니티 게시판게시 글, 댓글 포함	게임채팅	블로그/카페 게시판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

다) 가해 행위 후 심리적 반응

- 가해행위 후 심리적 반응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26.7%),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들었다’(20.0%),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16.7%), ‘별일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16.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여성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55.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38.1%),

‘별일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23.8%) 순으로 높게 나타나 디지털 상에서의 성적인
범죄경험에 감정적인 차이가 발견되었음

〈표 4-26〉 가해 행위 후 심리적 반응

(단위 : 명, (%))

구 분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들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	별일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미있고 신기했다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기타	χ^2
전 체	30 (100.0)	6 (20.0)	5 (16.7)	5 (16.7)	1 (3.3)	1 (3.3)	8 (26.7)	4 (13.3)	
성별	여성	9 (100.0)	2 (22.2)	5 (55.6)	0 (0.0)	0 (0.0)	0 (0.0)	2 (22.2)	18.889**
	남성	21 (100.0)	4 (19.0)	0 (0.0)	5 (23.8)	1 (4.8)	1 (4.8)	8 (38.1)	
연령	10대	14 (100.0)	3 (21.4)	3 (21.4)	2 (14.3)	0 (0.0)	0 (0.0)	4 (28.6)	13.402
	20대	9 (100.0)	0 (0.0)	1 (11.1)	1 (11.1)	1 (11.1)	3 (33.3)	2 (22.2)	
	30대	3 (100.0)	1 (33.3)	1 (33.3)	1 (33.3)	0 (0.0)	0 (0.0)	0 (0.0)	
	40대	4 (100.0)	2 (50.0)	0 (0.0)	1 (25.0)	0 (0.0)	0 (0.0)	1 (25.0)	

※ *p<.05, **p<.01, ***p<.001

〈그림 4-20〉 가해 행위 후 심리적 반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들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	별일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미있고 신기했다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기타

다. 데이트 폭력

1) 데이트 폭력 인식

가) 연인관계 통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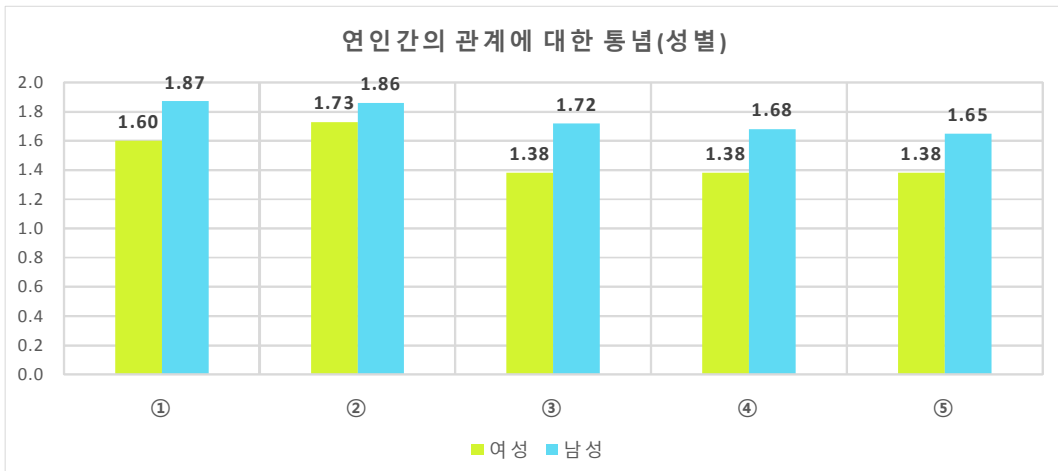
-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에 앞서 사적인 관계에서 폭력을 인식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각을 살펴보기 위하여 폭력적인 행위가 자칫 낭만적인 사랑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항목들을 선정하여 연인간의 통념에 대하여 5점 척도(점수가 낮을수록 항목에 부정적)로 조사함
- 전체적으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평균 1.78) 항목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가장 낮은 인식을 나타낸 항목은 ‘폭력적인 상대도 잘해주면 개선할 수 있다’(평균 1.49)로 나타나 지속적 관심은 허용되는 정도가 다소 높은 반면, 폭력적 상대의 개선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음
- 성별로는 네 항목 중 세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두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 연인간의 통념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음
-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인간의 사생활 체크는 열정적인 사랑’(여성 1.60, 남성 1.87), ‘성관계 거절은 사랑하지 않는 것’(여성 1.38, 남성 1.72), ‘연인간의 폭력 제3자 개입 불필요’(여성 1.38, 남성 1.68), ‘폭력적인 상대의 개선 가능성’(여성 1.38, 남성 1.65)로 여성이 해당항목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남

〈표 4-27〉 연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념

구분	전체	성별		
		여성	남성	t
연인 간에 사생활을 체크하는 것은 열정적인 사랑이다	1.71	1.60	1.87	17.109***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계속 관심을 보내면 연인이 될 수 있다	1.78	1.73	1.86	3.629
연인의 성관계를 거절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1.52	1.38	1.72	41.262***
연인간의 폭력은 사적인 것이므로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1.50	1.38	1.68	21.709***
폭력적인 상대도 잘해주면 개선할 수 있다	1.49	1.38	1.65	20.928***

※ *p<.05, **p<.01, ***p<.001

〈그림 4-21〉 연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념



①	연인 간에 사생활을 체크하는 것은 열정적인 사랑이다
②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계속 관심을 보내면 연인이 될 수 있다
③	연인의 성관계를 거절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④	연인간의 폭력은 사적인 것이므로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⑤	폭력적인 상대도 잘해주면 개선할 수 있다

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행위통제 2문항, 언어폭력과 경제적 폭력 각각 1문항, 신체적 폭력 2문항, 성적폭력 2문항을 선정하여 5점 척도로 폭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함
-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을 정도 라면 폭력이라 할 수 없다’(평균 3.65) 항목과 성적인 폭력에 해당하는 항목인 ‘원치 않는 섹스 동영상이나 나체사진 촬영’(평균 3.64)이 가장 높은 폭력 인식도를 나타냈고, 경제적 폭력인 ‘호의로 빌려준 돈이라도 갚지 않으면 경제적 폭력이다’(평균 2.96) 항목과 언어폭력인 ‘연인의 말에 위협과 모욕을 느낀다면 데이트 폭력이라 할 수 있다’(평균 3.07) 항목에 가장 낮은 인식정도를 나타냄
- 성별분석에서는 경제적 폭력과 성적 폭력(‘원하지 않는 섹스 동영상이나 나체사진 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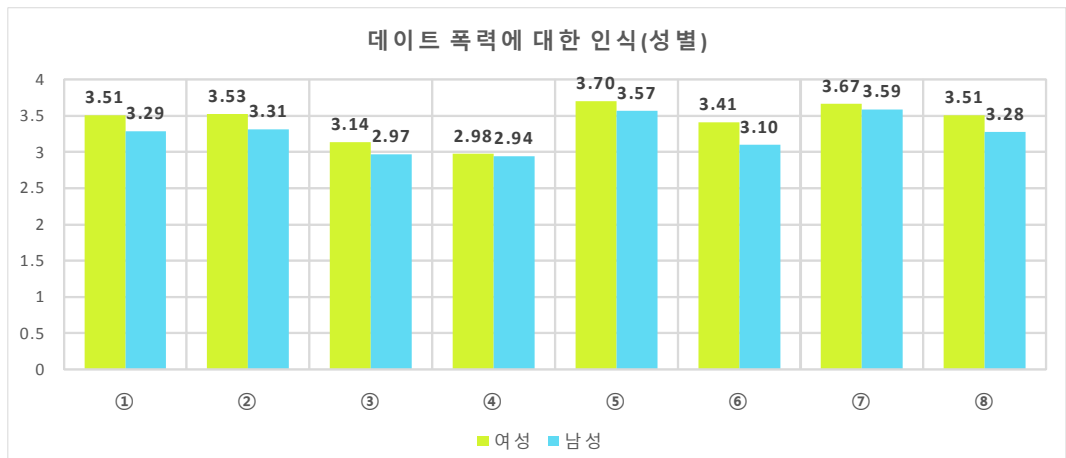
영) 문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폭력 인식정도를 보이고 있음

〈표 4-28〉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성별		t
		여성	남성	
연인의 일정을 통제하고 옷차림을 제한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3.42)	(3.51)	(3.29)	13.167**
연인과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3.44)	(3.53)	(3.31)	11.964**
연인의 말에 위협과 모욕을 느낀다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3.07)	(3.14)	(2.97)	4.248*
호의로 빌려준 돈이라도 갚지 않는다면 경제적 폭력이 될 수 있다	(2.96)	(2.98)	(2.94)	0.172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을 정도라면 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3.65)	(3.70)	(3.57)	4.959*
바람을 피우면 연인에게 맞을 수도 있다	(3.28)	(3.41)	(3.10)	14.218**
원하지 않는 섹스동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찍는 것도 폭력이다	(3.64)	(3.67)	(3.59)	1.258
나의 기분과 상관없는 성적 행위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3.42)	(3.51)	(3.28)	8.149**

※ *p<.05, **p<.01, ***p<.001

〈그림 4-22〉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①	연인의 일정을 통제하고 옷차림을 제한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②	연인과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③	연인의 말에 위협과 모욕을 느낀다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호의로 빌려준 돈이라도 갚지 않는다면 경제적 폭력이 될 수 있다
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을 정도라면 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⑥	바람을 피우면 연인에게 맞을 수도 있다
⑦	원하지 않는 섹스동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찍는 것도 폭력이다
⑧	나의 기분과 상관없는 성적 행위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데이트 폭력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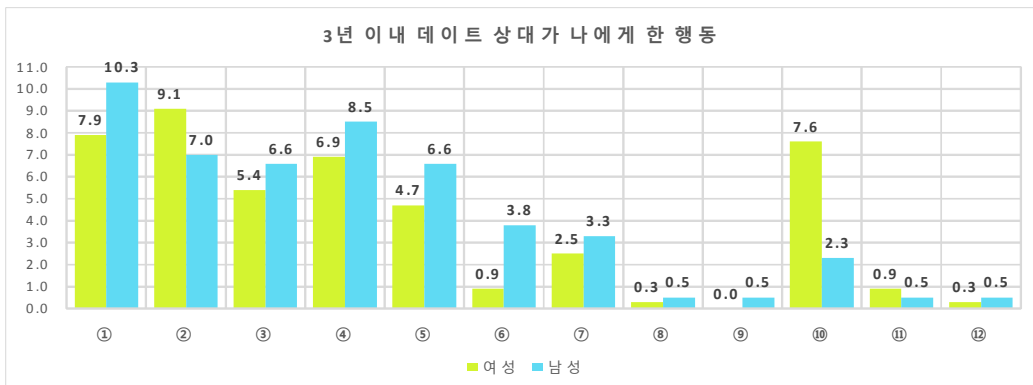
- 데이트 폭력 경험에 대한 조사는 총 12항목으로 행위통제 3문항, 언어폭력 2문항, 경제적 폭력 1문항, 신체적 폭력 3문항, 성적폭력 3문항으로 각각 구성함
-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행위통제 항목인 ‘휴대폰이나 이메일 점검’(8.9%), ‘옷차림 간섭이나 제한’(8.3%)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언어폭력인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사용’(7.5%),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고함’(5.5%), 그리고 성적 폭력으로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다리 등) 만지는 행위’(5.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분석은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은 ‘옷차림 간섭이나 제한’(9.1%), ‘휴대폰이나 이메일, SNS 점검’ (7.9%)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휴대폰이나 이메일, SNS 점검’(10.3%),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사용’(8.5%)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옷차림 간섭이나 제한’(여성 9.1%, 남성 7.0%), ‘허락 없이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다리 등) 만지는 행위’(여성 7.6%, 남성 2.3%), ‘섹스하기 위한 완력이나 흥기 사용’(여성 0.9%, 남성 0.5%) 항목이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음
 - 남성들이 ‘상대방으로부터 휴대폰이나 이메일 점검’(여성 7.9%, 남성 10.3%),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사용’(여성 6.9%, 남성 8.5%),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고함’(여성 4.7%, 남성 6.6%), ‘빌려간 돈 갚지 않음’(여성 0.9%, 남성 3.8%) 항목에서 여성보다 높은 비율의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29〉 최근 3년 이내 데이트 상대가 나에게 한 행동(중복응답)

(단위 :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상대방이 내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점검했다	91.1	8.9	92.1	7.9	89.7	10.3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했다	91.7	8.3	90.9	9.1	93.0	7.0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거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94.2	5.8	94.6	5.4	93.4	6.6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92.5	7.5	93.1	6.9	91.5	8.5
위험을 느낄 정도로 고향을 지른 적이 있다	94.5	5.5	95.3	4.7	93.4	6.6
상대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	97.9	2.1	99.1	0.9	96.2	3.8
팔목이나 몸을 힘껏 잡아당기거나 세게 밀친 적이 있다	97.2	2.8	97.5	2.5	96.7	3.3
폭행으로 정신을 잃거나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99.6	0.4	99.7	0.3	99.5	0.5
칼 가위 등 흉기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99.8	0.2	100.0	0.0	99.5	0.5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다리 등 신체부위를 만진 적이 있다	94.5	5.5	92.4	7.6	97.7	2.3
섹스를 하기 위해 완력이나 흥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99.2	0.8	99.1	0.9	99.5	0.5
원하지 않는 섹스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99.6	0.4	99.7	0.3	99.5	0.5

〈그림 4-23〉 최근 3년 이내 데이트 상대가 나에게 한 행동(중복응답)



①	상대방이 내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점검했다
②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했다
③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거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④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⑤	위험을 느낄 정도로 고향을 지른 적이 있다
⑥	상대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
⑦	팔목이나 몸을 힘껏 잡아당기거나 세게 밀친 적이 있다
⑧	폭행으로 정신을 잃거나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⑨	칼 가위 등 흉기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⑩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다리 등 신체부위를 만진 적이 있다
⑪	섹스를 하기 위해 완력이나 흥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⑫	원하지 않는 섹스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3) 데이트 폭력 피해 시 대응 방법

가) 관계에서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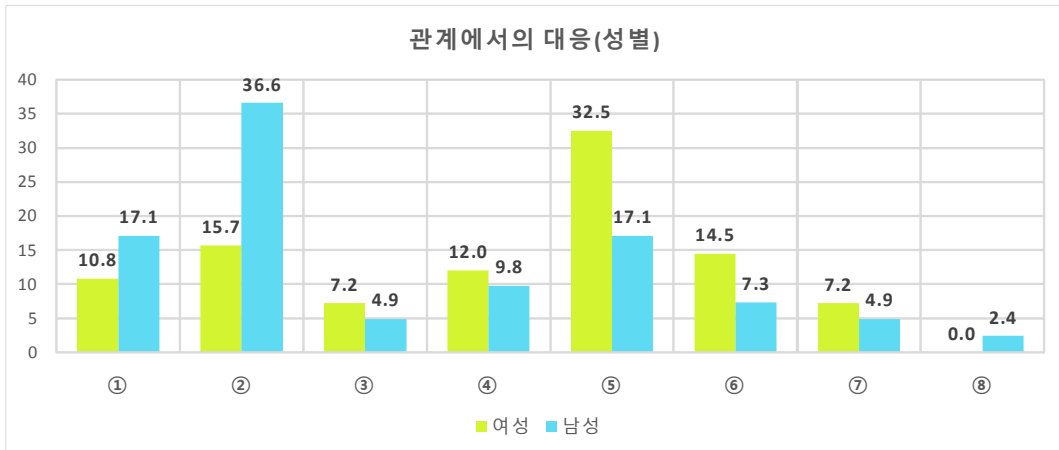
- 데이트 폭력 경험 시 대응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27.4%), 다음으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감'(22.6%), '가만히 있음'(12.9%) 순으로 나타나 주로 초기의 소극적 대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임
- 성별로는 여성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32.5%),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감'(15.7%)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감'(36.6%), '가만히 있음'(17.1%),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17.1%) 순으로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 행위에 대한 경고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남성은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30〉 관계에서의 대응

(단위 : 명, (%))

구 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다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의 기분을 맞추었다	상대방이 사과해서 용서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다	상대에게 맞서서 대항했다	헤어지자 고 했다	기타	
전 체	124	16 (12.9)	28 (22.6)	8 (6.5)	14 (11.3)	34 (27.4)	15 (12.1)	8 (6.5)	1 (0.8)	
성 별	여성	83	9 (10.8)	13 (15.7)	6 (7.2)	10 (12.0)	27 (32.5)	12 (14.5)	6 (7.2)	0 (0.0)
	남성	41	7 (17.1)	15 (36.6)	2 (4.9)	4 (9.8)	7 (17.1)	3 (7.3)	2 (4.9)	1 (2.4)
연 령	10대	21	3 (14.3)	4 (19.0)	2 (9.5)	5 (23.8)	5 (23.8)	1 (4.8)	1 (4.8)	0 (0.0)
	20대	32	5 (15.6)	10 (31.3)	1 (3.1)	1 (3.1)	7 (21.9)	6 (18.8)	1 (3.1)	1 (3.1)
	30대	41	4 (9.8)	9 (22.0)	2 (4.9)	3 (7.3)	15 (36.6)	4 (9.8)	4 (9.8)	0 (0.0)
	40대	30	4 (13.3)	5 (16.7)	3 (10.0)	5 (16.7)	7 (23.3)	4 (13.3)	2 (6.7)	0 (0.0)

〈그림 4-24〉 관계에서의 대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다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의 기분을 맞추었다	상대방이 사과해서 용서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다	상대에게 맞서서 대항했다	헤어지자고 했다	기타

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외부 조치

○ 데이트 폭력 경험 이후 외부적으로 취한 조치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전체적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51.9%)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헤어지겠다고 통보 후 연락 두절’(15.4%), ‘가족·친구에게 알리고 도움 청함’(14.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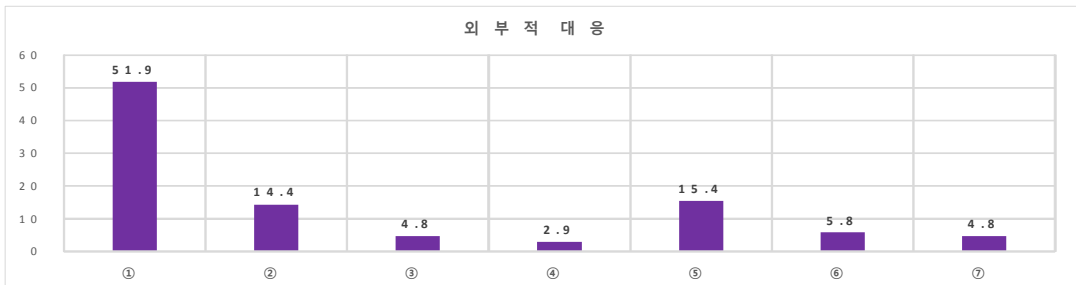
- 성별, 연령별 분석에서도 항목별 순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음

〈표 4-31〉 데이트 폭력 경험 후 외부 조치(중복응답)

(단위 : 명, (%))

구 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족, 친구 등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	병원에 감	헤어지겠다고 통보하고 연락을 끊음	경찰에 신고	기타
전 체	104 (100.0)	54 (51.9)	15 (14.4)	5 (4.8)	3 (2.9)	16 (15.4)	6 (5.8)	5 (4.8)
성 별	여성	67 (100.0)	35 (52.2)	10 (14.9)	3 (4.5)	2 (3.0)	11 (16.4)	3 (4.5)
	남성	37 (100.0)	19 (51.4)	5 (13.5)	2 (5.4)	1 (2.7)	5 (13.5)	2 (5.4)
연 령	10대	16 (100.0)	10 (62.5)	2 (12.5)	0 (0.0)	0 (0.0)	3 (18.8)	0 (0.0)
	20대	30 (100.0)	18 (60.0)	4 (13.3)	1 (3.3)	0 (0.0)	3 (10.0)	2 (6.7)
	30대	32 (100.0)	16 (50.0)	4 (12.5)	1 (3.1)	2 (6.3)	6 (18.8)	2 (6.3)
	40대	26 (100.0)	10 (38.5)	5 (19.2)	3 (11.5)	1 (3.8)	4 (15.4)	2 (7.7)

〈그림 4-25〉 데이트 폭력 경험 후 외부 조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족, 친구 등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병원에 갔다	헤어지겠다고 통보하고 연락을 끊었다	경찰에 신고했다	기타

다) 별다른 조치 없이 관계를 유지한 이유

- 데이트 폭력 경험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다고 생각’(43.9%)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상대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19.7%), ‘연인 간 자연스러운 행위로 생각’(15.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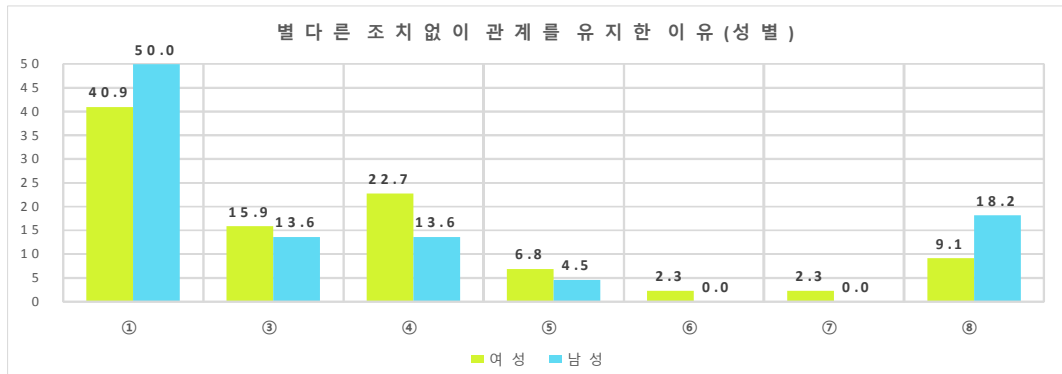
- 성별분석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다고 생각’ 항목에서 여성(40.9%)보다 남성(50.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남성들이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상대와 헤어진다는 생각은 약간 적게 한다고 볼 수 있음

〈표 4-32〉 데이트 폭력 경험 후 무 대응 이유

(단위 : 명, (%))

구 분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연인 간에 자연스럽게 있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상대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해서	참고 견디면 상대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해서	상대의 보복이 두려워서	상대를 설득해서 헤어지고 싶어서	기타
전 체	66 (100.0)	29 (43.9)	10 (15.2)	13 (19.7)	4 (6.1)	1 (1.5)	1 (1.5)	8 (12.1)
성 별	여성	44 (100.0)	18 (40.9)	7 (15.9)	10 (22.7)	3 (6.8)	1 (2.3)	4 (9.1)
	남성	22 (100.0)	11 (50.0)	3 (13.6)	3 (13.6)	1 (4.5)	0 (0.0)	4 (18.2)
연 령	10대	16 (100.0)	4 (25.0)	3 (18.8)	5 (31.3)	2 (12.5)	1 (6.3)	0 (0.0)
	20대	21 (100.0)	13 (61.9)	4 (19.0)	3 (14.3)	0 (0.0)	0 (0.0)	1 (4.8)
	30대	18 (100.0)	6 (33.3)	1 (5.6)	3 (16.7)	2 (11.1)	0 (0.0)	6 (33.3)
	40대	11 (100.0)	6 (54.5)	2 (18.2)	2 (18.2)	0 (0.0)	0 (0.0)	1 (9.1)

〈그림 4-26〉 데이트 폭력 경험 후 무 대응 이유



①	③	④	⑤	⑥	⑦	⑧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연인 간에 자연스럽게 있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상대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해서	참고 견디면 상대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해서	상대의 보복이 두려워서	상대를 설득해서 헤어지고 싶어서	기타

4) 정책 수요

가) 여성폭력 지원 기관에 대한 인지

○ 여성폭력 지원 기관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기관은 경찰서(38.2%)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22.2%), 성폭력 상담소(18.9%)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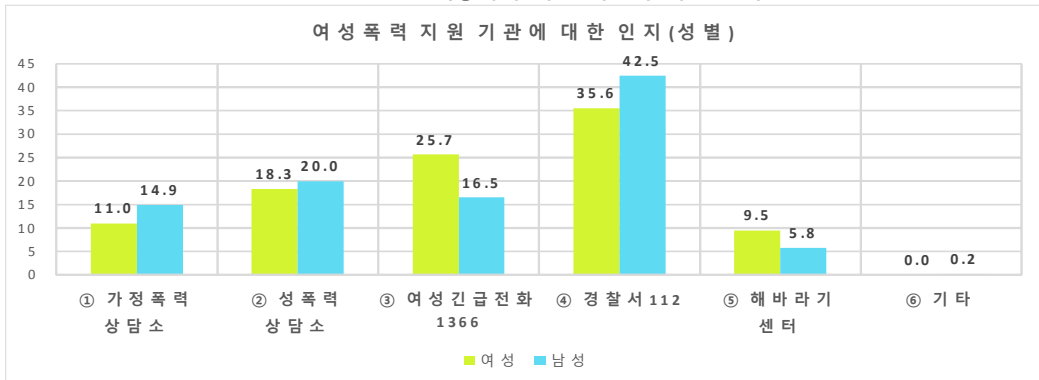
- 성별 기관 인지도는 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여성 25.7%, 남성 16.5%)과 해바라기 센터(여성 9.5%, 남성 5.8%)에서 남성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인 반면, 남성은 경찰서(여성 35.6%, 남성 42.5%), 성폭력 상담소(여성 18.3%, 남성 20.0%), 가정폭력 상담소(여성 11.0%, 남성 14.9%)에 대한 인지도가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33〉 여성폭력 지원 기관에 대한 인지

(단위 : 명, (%))

구 분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 화 1366	경찰서112	해바라기 센터	기타	
전 체		1,188	148 (12.5)	225 (18.9)	264 (22.2)	454 (38.2)	96 (8.1)	1 (0.1)
성 별	여성	739	81 (11.0)	135 (18.3)	190 (25.7)	263 (35.6)	70 (9.5)	0 (0.0)
	남성	449	67 (14.9)	90 (20.0)	74 (16.5)	191 (42.5)	26 (5.8)	1 (0.2)
연 령	10대	244	18 (7.4)	46 (18.9)	54 (22.1)	103 (42.2)	23 (9.4)	0 (0.0)
	20대	296	33 (11.1)	62 (20.9)	57 (19.3)	124 (41.9)	20 (6.8)	0 (0.0)
	30대	300	33 (11.0)	51 (17.0)	70 (23.3)	120 (40.0)	25 (8.3)	1 (0.3)
	40대	348	64 (18.4)	66 (19.0)	83 (23.9)	107 (30.7)	28 (8.0)	0 (0.0)

〈그림 4-27〉 여성폭력 지원 기관에 대한 인지



나) 여성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 여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약'이 절반 이상인 51.3%를 차지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범죄자에 대한 관리 소홀'(14.0%), '가부장적 사고와 문화'(13.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약'(여성 53.9%, 남성 47.4%) 항목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남성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 소홀'(여성 12.0%, 남성 16.9%)에 여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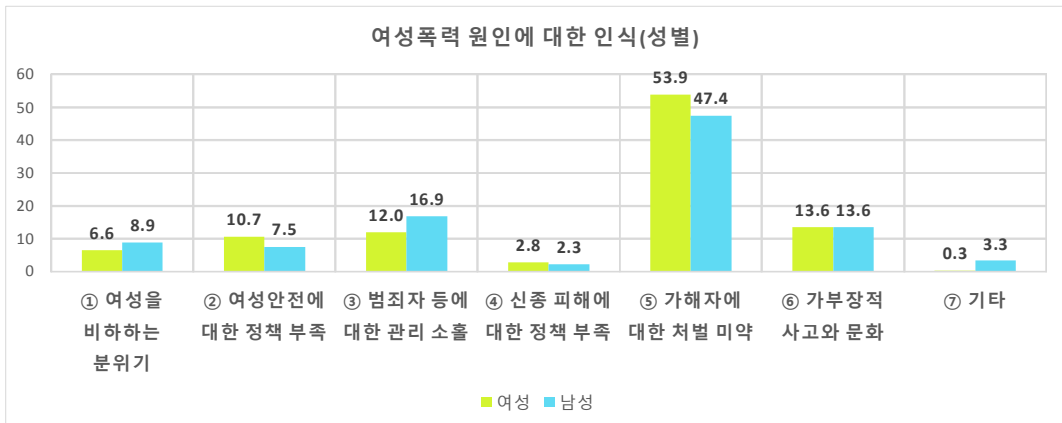
〈표 4-34〉 여성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여성을 비하하는 분위기	여성안전 에 대한 정책 부족	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 소홀	신종 피해에 대한 정책 부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약	가부장적 사고와 문화	기타	χ^2	
전 체	530	40 (7.5)	50 (9.4)	74 (14.0)	14 (2.6)	272 (51.3)	72 (13.6)	8 (1.5)		
성 별	여성	317	21 (6.6)	34 (10.7)	38 (12.0)	9 (2.8)	171 (53.9)	43 (13.6)	1 (0.3)	13.111 [*]
	남성	213	19 (8.9)	16 (7.5)	36 (16.9)	5 (2.3)	101 (47.4)	29 (13.6)	7 (3.3)	
연 령	10대	117	8 (6.8)	7 (6.0)	21 (17.9)	4 (3.4)	58 (49.6)	17 (14.5)	2 (1.7)	23.104
	20대	138	12 (8.7)	9 (6.5)	24 (17.4)	2 (1.4)	75 (54.3)	13 (9.4)	3 (2.2)	
	30대	135	12 (8.9)	16 (11.9)	13 (9.6)	2 (1.5)	75 (55.6)	15 (11.1)	2 (1.5)	
	40대	140	8 (5.7)	18 (12.9)	16 (11.4)	6 (4.3)	64 (45.7)	27 (19.3)	1 (0.7)	

※ *p<.05, **p<.01, ***p<.001

〈그림 4-28〉 여성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관련 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 정책 인지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책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방지 점검(62.4%)이고 다음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40.0%), 불법촬영물 삭제지원(39.8%), 여성폭력 핫라인대응시스템 구축·운영(39.7%) 순으로 조사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에 해당하는 폭력피해 자립정착금 지원(23.3%)과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24.1%) 항목은 비교적 인지도가 낮았음
- 성별로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여성 45.9%, 남성 31.3%),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 점검(여성 68.4%, 남성 53.6%),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여성 28.2%, 남성 18.0%) 항목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정책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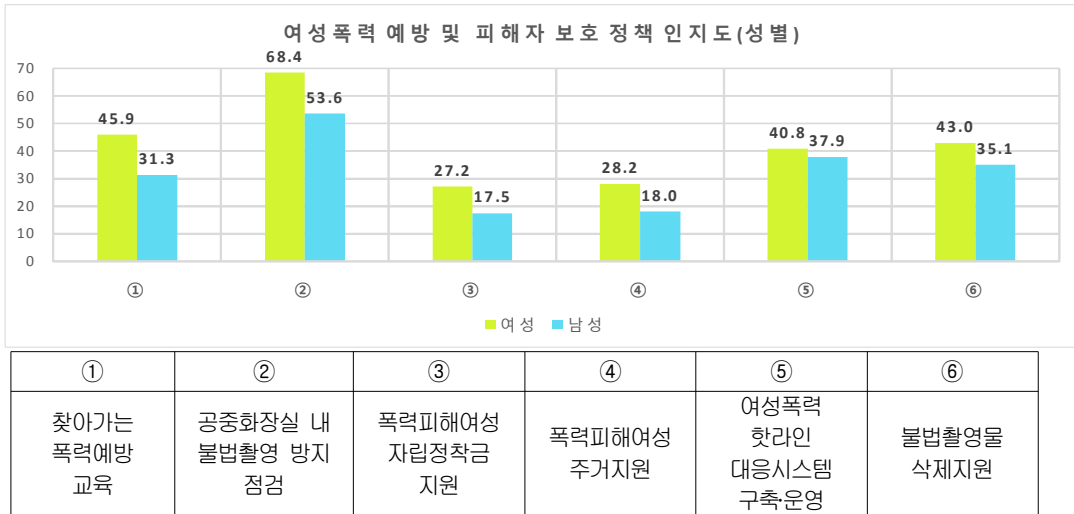
〈표 4-3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관련 정책 인지도

(단위 : %)

구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방지 점검		폭력피해 여성 자립정착금 지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안다	모른 다	안다	모른 다	안다	모른 다	안다	모른 다	안다	모른 다	안다	모른 다
전체		40.0	60.0	62.4	37.6	23.3	76.7	24.1	75.9	39.7	60.3	39.8	60.2
성 별	여성	45.9	54.1	68.4	31.6	27.2	72.8	28.2	71.8	40.8	59.2	43.0	57.0
	남성	31.3	68.7	53.6	46.4	17.5	82.5	18.0	82.0	37.9	62.1	35.1	64.9
	χ^2	11.243**		11.815**		6.625		7.133**		0.447		3.35	

※ *p<.05, **p<.01, ***p<.001

〈그림 4-29〉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관련 정책 인지도



□ 정책 만족도

- 여성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4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 높음)로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방지

점검으로 나타났고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구축·운영(평균 2.70),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평균 2.67)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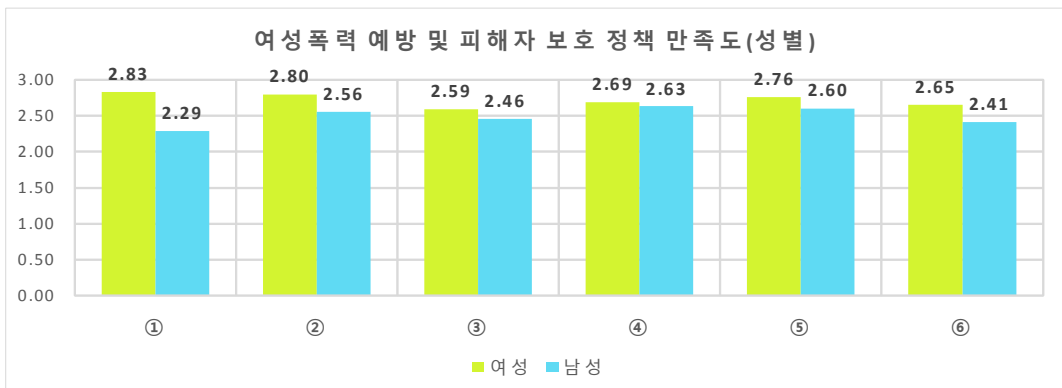
- 성별 차이는 두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여성 2.83, 남성 2.29)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방지 점검(여성 2.80, 남성 2.56)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표 4-36〉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 만족도

구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방지 점검	폭력피해 여성 자립정착금 지원	폭력피해여 성 주거지원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전체		2.66	2.72	2.55	2.67	2.70	2.57
성별	여성	2.83	2.80	2.59	2.69	2.76	2.65
	남성	2.29	2.56	2.46	2.63	2.60	2.41
	t	35.599***	8.642**	1.035	0.155	2.089	5.212

※ *p<.05, **p<.01, ***p<.001

〈그림 4-30〉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⑥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방지 점검	폭력피해여성 자립정착금 지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라)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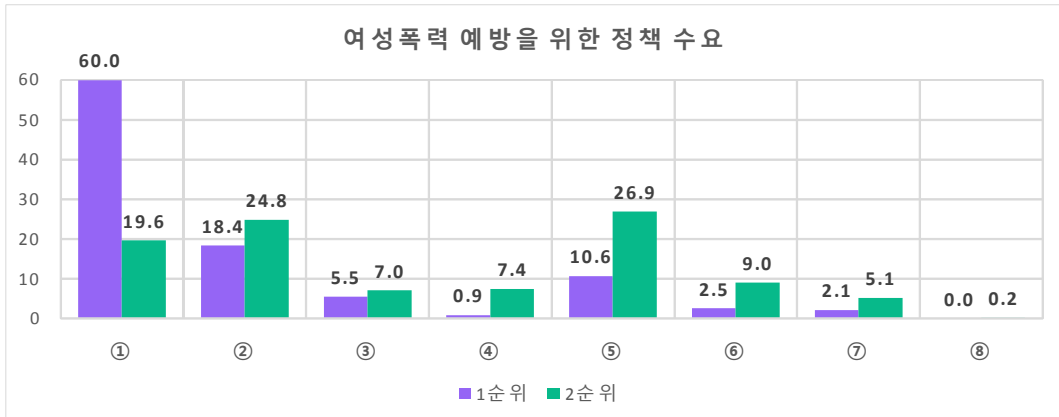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응답으로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해자의 처벌강화(39.8%)와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21.6%), 가해자 접근금지 및 신변 보호 강화(18.7%)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37〉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

(단위 : 명, (%))

구 분		가해자의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확대	관련정책의 홍보 강화	가해자 접근금지 및 신변보호 강화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확대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기타
전체 (1순위+2순위)	1,052	419 (39.8)	227 (21.6)	66 (6.3)	44 (4.2)	197 (18.7)	60 (5.7)	38 (3.6)	1 (0.1)
1순위	527	316 (60.0)	97 (18.4)	29 (5.5)	5 (0.9)	56 (10.6)	13 (2.5)	11 (2.1)	0 (0.0)
2순위	525	103 (19.6)	130 (24.8)	37 (7.0)	39 (7.4)	141 (26.9)	47 (9.0)	27 (5.1)	1 (0.2)

〈그림 4-31〉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가해자의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확대	관련정책의 홍보 강화	가해자 접근금지 및 신변보호 강화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확대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기타

마) 디지털성폭력 예방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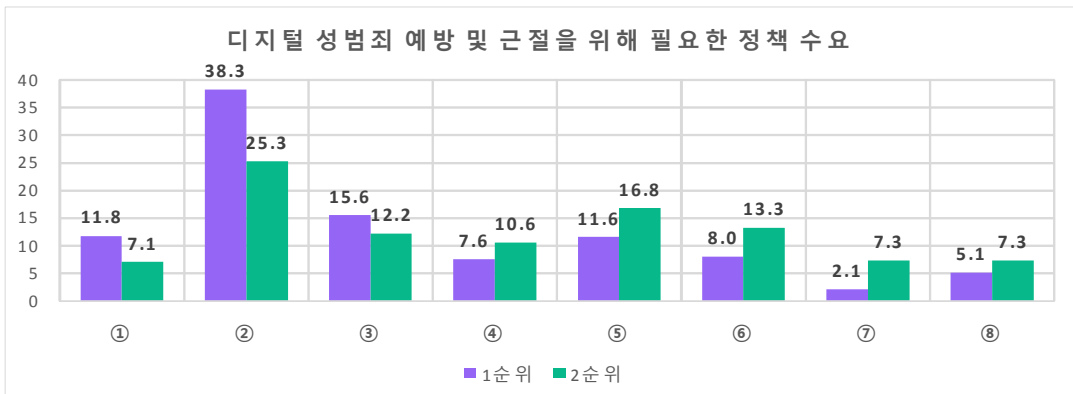
-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 전체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영상물 삭제지원 확대(31.9%), 디지털성폭력 신고 포상제 실시(14.2%),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13.9%)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38〉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

(단위 : 명, (%))

구 분		유관기관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강화	피해자를 위한 영상물 삭제지원 확대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별 성평등 교육 추진체계 강화	디지털성폭력 신고 포상제 실시	디지털성폭력 관련정책 홍보강화	성착취물 구매자 대상 교육 강화	디지털성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전체 (1순위+2순위)	1,045	99 (9.5)	333 (31.9)	145 (13.9)	95 (9.1)	148 (14.2)	111 (10.6)	49 (4.7)	65 (6.2)
1순위	527	62 (11.8)	202 (38.3)	82 (15.6)	40 (7.6)	61 (11.6)	42 (8.0)	11 (2.1)	27 (5.1)
2순위	518	37 (7.1)	131 (25.3)	63 (12.2)	55 (10.6)	87 (16.8)	69 (13.3)	38 (7.3)	38 (7.3)

〈그림 4-32〉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유관기관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강화	피해자를 위한 영상물 삭제지원 확대	디지털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 : 정보통신 윤리교육 등	대상별 성평등 교육 추진체계 강화	디지털성폭력 신고 포상제 실시	디지털성폭력 관련정책 홍보강화	성착취물 구매자 대상 교육 강화	디지털성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

3. 소결

가.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경험/대응

- 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폭력 인식이 높은 항목은 디지털 폭력인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님'(평균 4.14) 항목이고 가장 인식이 낮은 항목은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평균 3.31)이라는 항목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젠더폭력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폭력 경험이 높은 비율로 조사된 유형은 성희롱(18.1%), 성추행(10.6%), 가정폭력(6.0%)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낸 유형은 성매매(0.2%)로 조사되었고, 거의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유형별로는 성희롱에서는 40대(22.9%) 경험이 가장 높고 디지털성폭력은 10대(3.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젠더폭력 대응방식은 전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음(43.0%)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친구에게 도움 요청(19.5%), 경찰에 신고(10.7%), 가족에게 도움 요청(10.1%)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4.0%로 비교적 적은 비율로 나타남
 - 성별로는 대응하지 않음 항목에서는 여성(40.7%)보다 남성(64.3%)의 응답률이 높았음

나. 디지털성폭력

1) 컴퓨터 및 스마트폰 이용 시간/교육 경험

- 컴퓨터 이용시간은 평일(남성 2.7시간, 여성 1.7시간)과 주말 (남성 2.5시간, 여성 1.2시간)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길게 조사되었고 연령별로는 평일엔 30대(2.6시간), 주말엔 10대(2.6시간)의 이용시간이 길게 조사됨

-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평일엔 여성(3.9시간)이 남성(3.6시간)보다 사용시간이 약간 길었고 연령별로는 20대가 하루 평균 5.0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정보통신 윤리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절반(43.2%)정도가 수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응답자의 10.6%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남성(6.6%)보다 여성(13.2%)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경험이 있는 경우 연령별로는 10대(59.0%)가 가장 높고 40대(31.4%)가 가장 수강경험이 낮아 연령이 높을수록 정보통신 윤리교육 경험이 적음
- 폭력예방교육이나 성평등 교육 수강 유경험 비율은 74.5%로 비교적 높았고, 여성(76.3%)이 남성(71.8%)보다 약간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84.6%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폭력예방교육 경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됨

2)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률/제도/범죄 인식

-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약 14%,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 75.3%를 차지하여 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성별 연령별 차이는 적게 나타남
- 디지털성폭력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90%이상 안다고 응답해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음란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 항목에서 79.2%가 안다고 응답해 가장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 영상 전달은 범죄’(‘모른다’ 여성 3.2%, 남성 7.5%) 항목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 촬영 행위 처벌’(‘모른다’ 여성 2.2%, 남성 7.5%)는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법과 제도에 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성폭력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어도 피해자 책임’(평균 3.39)에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 ‘가해자를 밝히는 것이 너무 어려우며 처벌도 매우 가볍다’(평균 3.12)는 항목에 동의 정도가 가장 낮게 조사됨
 - 성별로는 다수의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인식도를 보임

3) 디지털성폭력 피해 경험/대응

☐ 음란물, 메시지, 성희롱 경험

- 사이버 상에서 성적 메시지나 음란물을 받거나 성희롱 경험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 받아본 적이 있다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12.6%, 성별로는 여성(13.6%)이 남성(11.3%)보다 수신경험이 있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음란물 수신 경험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나타남
- 음란 메시지 발신자는 전체적으로 기타(알 수 없음)(22.6%)와 온라인을 통해 아는 사람(22.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카페 회원이나 블로거(14.0%), 게임 또는 동호회 멤버(12.9%), 주변지인(10.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모르는 사람인 기타(30.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남성은 온라인을 통해 아는 사람(30.3%), 게임 혹은 동호회 멤버(27.3%), 동성친구(12.1%)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의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영역의 차이가 발견됨
- 메시지 발신매체는 전체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31.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메일이나 문자·전화(30.8%),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메신저 등)(14.4%) 순으로 나타남

☐ 디지털성폭력 불안으로 인한 행위

-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불안으로 'SNS 계정의 공개설정 범위재설정'(29.4%), '온라인에서 내 일상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음'(21.5%), '몰래카메라가 있을까 봐 두려워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장소 이용 주저함'(21.1%)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들이 훨씬 높게 나타남

☐ 피해 경험 시 대응

- 디지털성폭력 피해 시 대응 방법으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음(34.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경찰에 신고(11.9%), 해당 사이트 탈퇴(10.7%), 해당 사이트 아이디 새로 작성(9.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은 해당 사이트 완전 탈퇴(14.3%)와 아이디 새로 작성 재사용(12.5%) 순으로 응답한 반면, 남성은 경찰에 신고(17.9%)와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 요청(14.3%) 순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음

-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41.4%)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24.1%),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17.2%) 순으로 조사되었고, 성별로는 여성(29.4%)은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남성(66.7%)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4) 디지털성폭력 발생원인 및 필요한 지원

- 디지털성폭력 발생원인은 관련법의 처벌조항 미비(32.6%),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21.9%), 성인권이나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16.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관련법의 처벌조항 미비함(여성 36.6%, 남성 26.8%),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여성 24.0%, 남성 18.8%) 항목에서는 여성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디지털성폭력 피해 시 원하는 도움에 관한 응답 1순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법적 제재(34.9%), 피해자 보호 및 지원(23.2%),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17.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적 제재(여성 40.4%, 남성 26.8%)와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여성 18.6%, 남성 15.0%)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남성(27.7%)이 여성(20.2%)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5) 디지털성폭력 가해 행위

- 디지털성폭력 가해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 '야한농담'이나 '부모비하'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항목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임
- 남성(9.9%)이 여성(2.8%)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의 응답률을 기록함
- 연령별로는 10대(12.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20대(6.5%) 순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야한농담’이나 ‘부모비하’와 같은 행위를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남

- 이용 매체는 전체적으로 게임채팅(41.0%)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메일이나 문자·전화(17.9%),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SNS(15.4%), 인스턴트(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다이렉트메시지 등) 메신저(15.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이메일이나 문자·전화(30.8%) 이용이 가장 많고 남성은 게임채팅(53.8%)을 통한 가해행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해행위 후 심리적 반응으로는 ‘아무생각도 들지 않았다’(26.7%),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들었다’(20.0%),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16.7%), ‘별일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16.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55.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38.1%), ‘별일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23.8%)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다. 데이트 폭력

1) 연인관계 통념에 대한 인식

- 연인간의 통념에 대한 조사결과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모두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 연인간의 통념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음
-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을 정도라면 폭력 아님’(평균 3.65) 항목과 성적인 폭력인 ‘원치 않는 섹스 동영상이나 나체사진 촬영’(평균 3.64)가 가장 높은 폭력 인식도를 나타냈고, 경제적 폭력인 ‘호의로 빌려준 돈이라도 갚지 않으면 경제적 폭력’(평균 2.96) 항목과 언어폭력인 ‘연인의 말에 위협과 모욕을 느낀다면 데이트 폭력’(평균 3.07) 항목에 가장 낮은 인식을 나타냄

○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폭력인식이 높게 나타남

2) 데이트 폭력 경험

- 데이트 폭력 경험 조사 결과 행위통제 항목인 ‘휴대폰이나 이메일 점검’(8.9%), ‘옷차림 간섭이나 제한’(8.3%)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언어폭력인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사용’(7.5%),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고함’(5.5%), 그리고 성적 폭력으로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다리 등) 만지는 행위’(5.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은 ‘옷차림 간섭이나 제한’(9.1%), ‘휴대폰이나 이메일 · SNS 점검’(7.9%)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휴대폰이나 이메일 · SNS 점검’(10.3%),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사용’(8.5%)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옷차림 간섭이나 제한’(여성 9.1%, 남성 7.0%), ‘허락 없이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다리 등) 만지는 행위’(여성 7.6%, 남성 2.3%), ‘섹스하기 위한 완력이나 흥기 사용’(여성 0.9%, 남성 0.5%) 항목이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음
 - 남성들이 ‘상대방으로부터 휴대폰이나 이메일 점검’(여성 7.9%, 남성 10.3%),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사용’(여성 6.9%, 남성 8.5%),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고함’(여성 4.7%, 남성 6.6%), ‘빌려간 돈 갚지 않음’(여성 0.9%, 남성 3.8%) 항목에서 여성보다 높은 비율의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데이트 폭력 피해 시 대응 방법

- 데이트 폭력 경험 시 상대와의 관계 대응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27.4%), 다음으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감’(22.6%), ‘가만히 있음’(12.9%) 순으로 나타나 주로 소극적 대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임
- 성별로는 여성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32.5%),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감’(15.7%)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감’(36.6%), ‘가만히 있음’(17.1%),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17.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데이트 폭력 경험 이후 외부적 조치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51.9%)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헤어지겠다고 통보 후 연락 두절’(15.4%), ‘가족·친구에게 알리고 도움 청함’(14.4%) 순으로 나타남
- 데이트 폭력 경험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다고 생각’(43.9%)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상대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19.7%), ‘연인 간 자연스러운 행위로 생각’(15.2%)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 차이는 미미함

라. 젠더폭력 정책 수요

1) 기관 인지도/여성폭력의 원인

- 여성폭력 지원 기관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경찰서(38.2%), 여성긴급전화 1366(22.2%), 성폭력 상담소(18.9%) 순으로 조사됨
 - 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여성 25.7%, 남성 16.5%)과 해바라기 센터(여성 9.5%, 남성 5.8%), 남성은 경찰서(여성 35.6%, 남성 42.5%), 성폭력 상담소(여성 18.3%, 남성 20.0%), 가정폭력 상담소(여성 11.0%, 남성 14.9%)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 여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약’이 51.3%로 가장 높았고, ‘범죄자에 대한 관리 소홀’(14.0%), ‘가부장적 사고와 문화’(13.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약’(여성 53.9%, 남성 47.4%) 항목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남성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 소홀’(여성 12.0%, 남성 16.9%)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2) 정책 인지도/만족도/정책수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방지 점검(62.4%),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40.0%), 불법촬영물 삭제지원(39.8%), 여성폭력 핫라인대응시스템 구축·운영(39.7%) 순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여성 45.9%, 남성 31.3%),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

지 점검(여성 68.4%, 남성 53.6%),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여성 28.2%, 남성 18.0%)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정책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나타냄

- 여성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방지 점검(평균 2.72),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구축·운영(평균 2.70),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평균 2.6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여성 2.83, 남성 2.29)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방지 점검(여성 2.80, 남성 2.56)에서 남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응답으로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 가해자의 처벌강화(39.8%)와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21.6%), 가해자 접근금지 및 신변보호 강화(18.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 피해자를 위한 영상물 삭제지원 확대(31.9%), 디지털성폭력 신고 포상제 실시(14.2%),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13.9%)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제 5 장

제주지역 젠더폭력 피해자 및 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1. 조사개요
2. 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3. 피해자 심층면접 결과
4. 관련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5. 소결

1. 조사개요

- 면접(interview) 연구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며, 면접은 인간 행동의 맥락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줌
- 대화가 인간과 사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 해석을 획득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인간 상호작용 방식이라는 점을 인정할 때 대화가 전제되는 면담은 참여자들의 관점과 생활세계, 의식, 주관성,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목적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은 사회현상 및 인간의 행위를 총체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삶과 경험,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효과적인 자료 수집 방법임¹⁸⁾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폭력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간접적 피해 경험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질문을 사용하는 반구조화 면접방식(semi-structured interview)과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함
- 본 연구의 심층면접 참여자는 연구 내용에 관심을 보이는 일반인, 청소년 관련 기관 이용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폭력피해 지원 상담소 종사자, 교육 관련 종사자 등임
- 특히,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에서 청소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에 디지털성폭력이 청소년 문화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을 심층면접 대상으로 포함함
 - 면접 참여자는 청소년 관련 기관, 상담소 이용 경험자 등을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방식으로 선정하였고 주로 10대와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조사함
-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은 젠더폭력에 포함되며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폭력과 데이트 폭력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면접 내용은 대상별로 내용을 달리함

18)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제3판”, 아카데미프레스, 2016, 292~294쪽.

- 면접 참여자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2020년 6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됨
- 심층면접은 참여자 1명당 약 1시간 30분 ~ 2시간에 걸쳐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비밀 보장이 된다는 설명을 하였고, 분석을 위해 참여자 동의 후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음

2. 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 본 연구의 심층면접 참여자는 연구 내용에 관심을 보이는 일반인, 청소년 관련 기관 이용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폭력피해 지원 상담소 종사자, 교육 관련 종사자 등임
- 면접 참여자 중 폭력 피해 경험자는 9명, 종사자는 6명으로 구성됨
- 피해 경험 심층면접은 디지털성폭력과 데이트 폭력에서 높은 피해율을 보이는 10대와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는데, 10대 참여자는 5명이고 20대 참여자는 4명임
 - 10대 참여자는 제주시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명과 학업 중단 중인 10대 1명이며, 청소년 관련 기관 이용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포함되어 있음
 - 20대 참여자는 제주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명과 일반인 여성 2명으로 구성했는데, '피해'와 '폭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면접자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
- 관련 기관 종사자는 주로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원이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함
 -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이외에 성평등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 사이버 범죄 관련 부서 경찰, 여성폭력 무료법률 지원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했음
- 면접시간은 약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모두 참여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짐
-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과 문자 또는 통화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자료 사용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면접 진행시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면접 내용을 녹취함

〈표 5-1〉 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구분	연령	피해 유형	직업
사례1	20대	데이트 폭력, 디지털성폭력	대학생
사례2	50대		교사
사례3	20대	데이트 폭력	대학생
사례4	50대		지원 기관 상담원
사례5	50대		지원 기관 상담원
사례6	10대	디지털성폭력	고등학생
사례7	10대	디지털성폭력	고등학생
사례8	10대	디지털성폭력	고등학생
사례9	20대	데이트 폭력, 디지털성폭력	직장인
사례10	10대	디지털성폭력	고등학생
사례11	20대	데이트 폭력, 디지털성폭력	무직
사례12	10대	디지털성폭력	무직
사례13	40대		법률전문가
사례14	40대		경찰
사례15	50대		상담원

3. 피해자 심층면접 결과

가. 심층면접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젠더폭력 중 디지털성폭력, 데이트 폭력을 중심으로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피해 경험자, 일반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함
- 개별 심층면접 내용은 <표 5-2>와 같음
- 직·간접적 피해 경험자에게는 일상적 폭력 피해 경험, 디지털 환경에서 경험하는 문화, 디지털성폭력 피해 경험, 피해 경험 시 대응,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 데이트 폭력 경험 시 반응, 피해자가 원하는 보호 및 지원 등으로 내용을 구성함

〈표 5-2〉 심층면접 내용

구분	세부내용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 · 일상적 폭력 피해에 대한 경험
디지털성폭력 피해	· 디지털 환경에서 경험하는 문화 ·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인식 · 디지털성폭력 피해 경험(온라인 성적 괴롭힘, 불법촬영 등) ·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대응 ·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데이트 폭력 피해	·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 · 피해 경험 시 대응과 조치 ·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와 후유증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안	· 대응이 어려운 이유 ·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지역사회 특성 ·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안사항

나. 면접조사 결과

1)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안 피해

가) 일상적인 불안 피해 : 거주 공간, 공공 영역 등

- 참여자들은 대부분 막연한 일상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주거 공간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일상생활 전반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줌
- 주변에서 1인 가구 여성의 피해 사례를 듣고 있으며, 여성만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남자 신발을 이용하거나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의 행동 제약이나 생활 규제가 나타남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신발 현관 그쪽에 남자 신발 갖다 놓으라고 이런 것도 되게 많고, 택배 부를 때 이름을 여자 이름으로 하지 말고 좀 남성적인 이름? 좀 힘이 세 보이는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 주거공간에서 막연한 불안감은 항상 있죠. (사례 3)

집 들어갈 때도 무섭고 화장실 갈 때도 무섭고. 창문 열고 옷 못 갈아입겠고, 집에서도. (...) 집

들어갈 때 발소리가 들려요, 딱 봤을 때 실루엣이 남자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섭고, 술 취한 아저씨가 서 있어도 무섭고, 구멍 이런 거 보면 무서워요. (사례 8)

집에 있을 때도 불안하죠. 젊은 여자 둘이 사는 집이니까 뭔가 이게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불안함은 그냥 일상적으로 항상 있는 거 같아요. 집에서 빨래를 하면은 빨래를 널 때 최대한 뭔가 성별이 특정되지 않는 옷을 바깥쪽에 널고, 속옷이나 여성의 옷이라고 보이는 거는 이제 안쪽에 숨겨서 낸다거나 집에 있을 때 창문을 웬만하면 닫고 지낸다거나. (...) 문단속을 몇 번씩이나 확인을 하고, 잠을 자는데도 방에서 자다가 밖에서 뭔가 쿵 소리가 나면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혹시 누가 들어온 거 아닌가? (...) 진짜 되게 공포스럽구나. 이것을 되게 많이 느낀 거 같아요. (사례 9)

○ 참여자들은 학교·학원·길거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 특히 화장실 공간에서의 두려움을 크게 호소하고 있고,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화장실 이용 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사용상 제약을 받고 있음

학교 화장실에 있을 때도 무섭고. 그냥 무섭죠. 저희 고1 때 한창 불법 촬영 문제가 있었을 때 애들이 무섭다고 했었어요. 없다는 걸 알지만 그냥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학교 화장실에 구멍 있는 거 좀 거슬리지 않아? 하면 무섭다고, 학교에서까지 내가 왜 이래야 되지? 하면서 울먹거리는 애들도 있었고. 영화관이나 그런 데에서 공중화장실을 안 가고 싶다고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사례 8)

공중 화장실 밖에서 화장실 갈 때는 항상 불안한 거 같고요. 그래서 한 때 진짜 심할 때에는 밖에서 화장실을 못 갔어요. (...) 이제 번기도 한번 열어보고, 구멍들 다 확인해 보고. (...) 제가 몇 년 전에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학원에 있는 화장실이 진짜 심각했어요.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공중화장실을 가도 여성 화장실에는 구멍이 다 있었지만 (...) 화장실에는 최소 20개가 있는 거 같아요. 진짜 구멍이 없는 벽을 찾기가 어려웠고 정말 많았어요. (사례 9)

- 범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늘 다니던 길도 밤에는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함. 자신이 언제든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함

일단 다들 그렇듯이 저녁에 혼자 걸을 때 그럴 때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뒤에 아무나 걷는 소리 들리면 불안해서 제가 일부러 폰을 꼭 잡거든요. 혹시나 뭐하면 그걸로 좀 치면 거기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불안해서 (...) 평소에 그런 상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 되게 뜬금없는데 ‘누가 와서 칼로 찌르지는 않을까?’ 이 생각도 하고...아무 이유 없이 막 때리거나

기분이 안 좋아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거 계속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례 10)

○ 언론 보도 등을 통한 사건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불안을 경험

젊은 여성이 타겟이 되는 범죄를 너무 많이 보고 그게 그럴 경우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도 되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례 9)

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피해 사례

○ 참여자들은 학교 등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적 굴욕감·성적 불쾌감을 경험

- 학교 행사 등에서 원하지 않는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성적 굴욕감을 경험하였으며, 촬영물이 인터넷에 게시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있음

학과가 처음으로 학기를 시작할 때 1학년 1학기를 시작하는 신입생들한테 장기자랑을 시켜요. 발대식에서. 거기에서 여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굉장히 성적인 색시한 옷을 입고 춤을춰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 발대식을 하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관 앞에서 그 학과의 모든 학생들이 앞에 있는데 그런 춤을 추고 싶지 않아도춰야 하는 거예요. (...) 꼭 누군가가 촬영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게시가 되더라고요. (...) 하고 싶지 않다고. 가서 춤을 추기도 싫고, 다 이런 옷을 입으라는 것도 싫다. 라고들 하는데 (사례 1)

-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음을 언급함

10대 때는 성희롱을 학교 내에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 선생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학생에게 “다리를 그렇게 내놓고 다니냐” 이런 식의 말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사례 1)

(학교에서의 경험)어떤 쌤이 애기 낳는 것에 관해서 얘기했던 것도 있고, 〇〇 시간에 칠판에 이렇게 나이를 20대, 30대 적으면서 얼마 얼마 얼마 적으면서...가격을 매긴 거죠. 어릴수록 비싸다. 늙을수록 싸진다는 거죠. 너네 빨리 가라 (...) 여자들은 다 명품백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는 쌤도 있고, 기본 몸무게는 50kg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쌤도 있고... (사례 8)

○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진 사건보다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 발생했거나 지인이 연관된

성폭력 사건을 먼저 떠올리고 언급했으며, 실제로 자신의 주변 지인들이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경험을 적지 않게 함

남성 선배가 여자 후배를 성추행한다던가 혹은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교수가 제자를 성폭력, 성폭행한다던가 그런 식의 것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 1)

○ 일터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도 나이가 어린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객이나 학생에게 성희롱 피해를 직접 경험함

- 일하는 공간에서도 ‘업무’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표현되는 경험을 통해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느꼈으며, 성인 여성이지만 학생들로부터도 성희롱성 발언을 경험함

편의점에서는 아무래도 혼자 일을 하니까 밤에 좀 술 취한 아저씨들이 왔을 때 저한테 해코지를 한 것은 아닌데 좀 뭔가... (···) 진짜 불쾌하기는 한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차피 그분들은 생각이 안 바뀔 거라는 것을 아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그랬어요. (사례 3)

제가 학원 일도 많이 했었는데 학원에서는 중학생 남자아이들이 약간 희롱을 하는 말을 했었어요. (···) 저한테 “선생님은 남자친구 없어요? 선생님은 동거 안 하세요?” 물어보는데 그 질문에 의도가 너무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사례 9)

○ 일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간 안에서도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 경험이 나타남

- 일반 대중들이 함께 있는 길거리에서도 성적 비하 발언을 경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피해 사례를 목격하기도 함

예전에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막 붙는 티를 입었는데 전 남친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전 남친 친구들이 막 손짓(여성의 몸의 형태 같은 것 그리면서) 같은 거 하면서 “미드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나가고. 그래 놓고 아니라고 발뺌했는데 나중에 친구들도 인정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사과하고 끝내고. (···) 남자들이 살이나 몸 가지고 뭐라 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좀 그럴죠. (사례 7)

대중교통에서 제 친구가 목격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10대 학생이었는데 옆에 남성이 앉았고, 성추행을 했나 봐요. 어떤 한 여성분께서 엄청 화를 내면서 “뭐 하는 거냐, 너!”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시니까 그 남자 가해자가 당황을 해서 막 도망을 간 거 같아요. 근데 그 학생이 고개도 못 들고 계속 울고 있었다고 해요. (사례 9)

다) 피해 경험 시 대응

○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을 기피함

- 대응했을 때 자신이 경험하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을 포기함
- 사례 8은 학교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 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문제제기 하거나 드러내지 못하는 문화가 있음을 드러냄.

우리 학과에서 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찌겠냐. 신입생이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굉장한 패널티가 올 것 같고, (...) 그래도 어차피 한 걸 어찌겠냐. 그렇게 된 거지. (사례 1)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듯이 그렇게 넘겼어요. (...) 해도 제 기분만 더 나빠질 것 같고, 그냥 잊어버리자 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사례 3)

너무 용기 없는 행동 아니냐 좋지 않아도 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용기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진전이 없는데 굳이 왜... (...) 생기부를 나쁘게 쓴다거나 수행평가를 더 나쁘게 본다거나. (...) 그래서 학교에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사례 8)

신고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데 그 학생은 신고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고 싶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9)

- 대응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자책하거나 힘들어함

대중교통에서 겪는 것은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랬고 대응을 하지 못하고, (...) 그냥 대응을 하지 못한 나를 자책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버스에서 누가 내 엉덩이를 만지더라. 그런데 내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면 옆에서 또 “나도 대중교통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하는데 대응을 한 경우는 저도 없었고 친구들도 대응을 한 경우는 못 봤어요. (사례 1)

중학교 때 어떤 친구가 학교에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니까 어떤 아저씨가 엉덩이를 만졌대요. 그런데 그 순간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겠고, 대응도 못 하겠다고 내렸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사례 8)

라) 일상 불안 피해를 느끼는 성별 경험 차이

○ 일상 불안 피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남

- 여성들은 일상적 경험에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드러냈고, 대부분의 여성은 불안에 공감을 함

여성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은 진짜 백이면 백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대중교통 안에서의 성추행이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겪었던 성적 불쾌감의 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외의 차별의 순간들을 다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남성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 “진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라고 하면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사례 1)

“네가 어두운 밤에 집에 갈 때 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속상해하고,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는 추울까 봐 걱정만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거 보고 친구랑 저랑 엄청 울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 애들은 이 말에 공감을 못 할 거 아니예요. (사례 8)

2) 디지털성폭력 피해

가)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혐오 현상, 성적 대상화

○ 디지털 공간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 특히 커뮤니티 내에서 나타나는 혐오 현상이 심각함

- 대학생 전용 웹 사이트이며 어플리케이션인 에브리타임 등에서 여성 혐오 댓글이 만연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혐오 콘텐츠가 상당히 많음

에브리타임이 대학 메일로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안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는데 (….) 전부 익명이 다 보장돼요. (….) 진짜로 온갖 혐오표현들이 다 있어요. (….) 제가 목격했던 글은 〇〇대에서 일베를 하는 학생들의 단톡방을 만들고 싶다. (….) 극우 단톡방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 무슨 폐미 어쩌고 하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요. (….) 에브리타임이 정말 정말 심해요. (….) 어느 학과의 누구누구 예쁘다고 전해주세요. 이런 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 지목된 사람은 그 페이스북에 태그가 돼서 거기에 댓글이 달려 가지고 (….)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자체가 이미 그런 걸로 도배가 되어 있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페미니비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대자보를 붙였었는데 그게 세 번에 걸쳐서 찢긴 거예요. (….)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에브리타임에 올라오더라고요.

(…) 혐오적인 댓글이. (…)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댓글이 올라온 거예요. (사례 1)

혐오적인 콘텐츠들이 인터넷에서는 진짜 많아요. (사례 3)

- 디지털 공간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난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게시글 등에서 성적 대상화를 통한 모욕과 비하 댓글이 나타나고 있음

남자친구들은 (야한 동영상을 보고) 막 하고 싶다? 이런 말들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 어떤 남자애가 연애 얘기하다가 (성관계)하게 된 거 그런 거 다 얘기해주는 거예요. (…) 애들이랑 몇 명 이야기하다가 개랑은 그렇게 해서 (성관계)했다. 어떤 애는 이 아이가 더 낫다. 이런 얘기도 하고... 몇 번 하니까 애는 갔다. (사례 6)

페이스북, SNS에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올리잖아요. (…) ‘남자에 미친 애.’ 이런 식으로. 그런 말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 가슴이 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니고. ‘재랑 하면은 어떤 기분일까?’ 이런 거 올리고. (사례 7)

여자라면은 그냥 걸레? 하던 안 하던 걸레 이런 소리 좀 듣는 거 같아요. 그냥 남자들이 게임 하면서도 여자라고 하면 그런 말도 나오고, (…) 남자들은 그런 소리를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여자들만 이렇게 해서 욕먹고, 그런 편이지 남자들은 그런 말을 못 본 것 같아요. (사례 7)

“어떤 여자애 엄마까지 따 먹어버린다.” 이런 것들, 부모님한테까지 패드립하고 그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사례 12)

- 디지털 환경에서 무분별한 성적 광고를 접하거나 일방적으로 음란물에 노출되었을 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음

대사도 나오고, 여자 위주로 나온 거잖아요. (…) 장르 같은 거 있잖아요? 특이하게 엄마와 아들 그런 거나 딸과 아빠? 그런 거...근친 막 그러잖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 요즘에는 웹툰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 야웹툰 진짜 많아요. (…) 남녀끼리 하는 것도 있고. 실제 동영상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런 것을 더 많이 봐요. (사례 6)

이상한 광고. (…) 뭐 섹파 어쩌고저쩌고. 조건만남. 파트너. X가 완전 작잖아요. 거기 막 조건만남, 와이프 지켜우면 다른 여자 하라. (…) 이해가 안 돼요. (사례 6)

알몸 사진 같은 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영상들 이렇게 보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페이스북 게시

물에 공개적으로 올라온다던데? 약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 7)

(스마트폰 성적 메시지)섹스파트너구한다. 이런 계정있잖아요. 그런 걸로 팔로우 요청 오거나 DM 오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이 훨씬 많죠. 매일 2~3개씩 오는데? 친구들한테도 매일 오고, 만남주선 이러면서 프로필 주소 달고 얼마 보장 이런 게 엄청 많이 오거든요. 인스타 프로필이 있으면 여기에 만남 주선, 300만원 100% 보장. 이렇게 되어 있고, 신던 스타킹을 팔라고 연락이 올 때도 있고, 자기 성기 사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해요. 아니면 섹파 구한 다는 것도 있고, 외국 사람들이 다 모집해서 그룹 단톡을 만들어서 사진 뿌리는 경우도 있고. (사례 8)

- 성적 광고 접속으로 인한 해킹 피해도 발생함

페이스북에 보면 알선 만남하시는 여자분들이 친추가 와가지고 이런 게 날라 오죠. 카톡 아이디가 무엇이고 그러면서 얼마에, 몇 시간에, 막 이렇게 한다 이런 문자가 날라 오는데 (...)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애들은 그거 눌렀다가 해킹 당해가지고, (...) 핸드폰에 있는 갤러리 사진들이 다 보내진단단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례 7)

-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이트나 커뮤니티가 존재함

(야동사이트) 트위터에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고딩 따먹기. 선생보다 좋은 고3. 동영상 제목이. 그리고 장르라 나눠져 있어요. 고딩이 따로. 중딩 이렇게. 요즘은... 야동 사이트 공유한다고 해서 완전 길게 해서 복사 붙이기하고 그런 건 많이 봤지만. (...) 남자애들도 “야, 있냐?” 라고 하면 댓글로 달아주고. (사례 8)

-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경로가 많아졌고, 공유를 요구하는 행위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제지하지 않음

매체가 많아져서 뭐 그런 촬영물을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창구가 더 늘어나고 더 많아진 거 같다고 느껴져요. 저는. 커뮤니티에는 이를테면 내가 어떤 동영상을 갖고 있어. 이런 글이 있으면 그 밑에 댓글로 이메일을 쪽쪽쪽 쓰는 사람들이 있다던지 “나도 줘.” 근데 “이메일을 적지 마.” 그걸 제지하는 사람은 못 봤고요. (사례 9)

○ 페미니즘을 표현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 만연

만약에 페미니즘 주장하는 여자 연예인들 그런 인스타 댓글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 꼰페미이다. 애네 진짜 메갈새끼들이다. 그냥 돈 많은 여자 영상에도 된장녀다. (사례 8)

저는 SNS에 이제 페미니즘 글을 되게 많이 올려요. (...) 남성들이 제 SNS에 갑자기 와서 화를 내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 제가 제 사진을 셀카를 찍어서 올렸고 (...) 어떤 분께서 댓글에 “페미니즘 대장 남셨네. 현피 뜨자.” 이러는 거예요. (...) 페미녀이라든지, 정신병자라든지 뭐 얼굴을, 맞고를 보아하니 딱 그거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든지 약간 뭐... 그 중에는 막 왜 욕을 하면서 '갈보녀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 일베 커뮤니티에서 나는 페미니스트다. 라고 말한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서 (...) 진짜 그 사람들의 사진들을 막 엄청 많이 모아 놓은 거예요. 한 게시물 당 10~20장 되는 거 같고 게시되는 것이 되게 많아서. (...) 여성들의 사진을 모아서 거기다 올려놓고 뭐 어떤 꼴페미모음. 해가지고 올렸고, (...) 그중에는 제가 팔로우하는 SNS 계정 어떤 분이 계셔서 깜짝 놀라서 그분한테 전달했던 경험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가서 물론 그런 게시물만 있는 게 아니고 댓글에 온갖 욕이 막 가득하죠. (사례 9)

나)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불안

○ 디지털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활동에서 제약과 위축을 경험함

- 불법 촬영이 염려되어 주변을 살펴보거나, 거주 공간이나 일상 공간에서도 걱정이 됨

화장실에 가보면 나사 구멍이 되게 많이 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휴지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몰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막아 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또 이번에 집을 새로 구하는데 (...) 뭔가 불법촬영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 거 같아요. (...) 어디를 가면은 몰카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휴지로 막혀 있는 그런 구멍들을 볼 때마다 모두가 그런 불안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례 1)

화장실도 그렇고 옷가게 탈의실? 탈의실 천장이 뚫려 있으면 조금 불안하기는 했어요. (...) 저는 지금 기숙사 살고 있어서 완전 여학생들만 있는 곳이긴 한데 (...) 빈 공간에 남자 분들이 와서 사용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끔? 조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잠깐 한 적 있어요. (사례 3)

공중화장실 (...) 요즘은 저 어떤데 가니까 다 막아져 있더라고요. (...) 여기서 혹시 찍었었나? (사례 6)

요즘 화장실에서 막 불법 촬영했던 것도 막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옛날에는 여기 에다가(스마트폰) 불법 촬영 확인할 수 있는 거 막 붙여 놔 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 공중화장실이나 밀폐된 공간, 알바 갔을 때 창고 같은데. 불법 촬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탈의실. 운동하는데도 함부로 못 가겠어요. (...) 불안한 경험은 갈 때마다 맨날. 불법 촬영하

지 못하게 막아 놓는 거 확인하고 안심하면... 막 벽돌 같은데 구멍 뚫려 있으면 거의 다 의심이 되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을 때, 안심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례 11)

-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신이 생기기도 함

(인터넷 하면서) 불법 촬영물이 뜨더라고요. (...) 정말 너무 많아요. (...) 길거리, 대중교통 주 제별로 있을 정도로 너무 방대 하더라고요. 너무 방대해서 이거를 정말 내가 일상에서 안 겪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았어요. (...) 그런 촬영물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찍고 있는 사람이 있다. (사례 1)

(디지털성폭력)이게 되게 이용자도 많고 그런데... 진짜 주변에... 주변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에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모르지만 주변 사람이 그 중 일부일 수도 있겠구나. (사례 3)

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

○ 디지털성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

-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일종의 놀이처럼 인식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몸을 보여주고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음

성관계 영상을 찍는 거 친구들한테 허락 없이, 동의 없이 이렇게 보여 주는 거나. 만약에 여자 친구랑 남자 친구랑 막 옷 벗고 찍고 허락 없이 보여 주는 것. 그런 거나 유포 그런 거. 남의 동의 없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보여 주는 거. (...) 그런 건 잘못됐다. 생각했는데 범죄까지는 몰랐어요. 저는. (사례 6)

장난 식으로 남친이 제 엉덩이를 만지는 그런 사진을 찍었던 적도 있는데. 장난처럼 (...) (사례 10)

- 불법 촬영물을 보는 행위를 불법 행위로 인지하지 못함

남자애들은 아직도 불법 촬영물을 야동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나쁘다라는 것은 인식을 해도 이러면 안 되는 것은 인식을 못 하는 거 같아요. 이게 나쁘겠지? 해도 이게 범죄다. 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사례 8)

○ 단톡방 등 단체 공간에서도 촬영물을 올리거나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 등을 '장난'으

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존재함

- 대부분 '장난'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깬다고 생각해서 불쾌함을 드러내기가 힘들

저희 단톡방에서 조금 다 장난으로 다 그렇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서로 서로 다 찍어서 올리고 그런... (···) 겉으로는 다 장난으로 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다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예쁜 모습이 찍히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례 3)

주변에서 여자애들이 끼리 (···) 찿고 나오면 알몸 사진 찍어 가지고 그것을 페이스북 게시물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있었고. (···) 장난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장난 일지라도 자기 자신은 기분 나쁜... (사례 7)

- 가해자와 계속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친밀한 관계인 경우에는, 사건으로 처리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간단하게 사과만 받고 끝내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도 함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단톡방에서 남자분이 그 친구한테 여잔데 속옷 모델 사진을 보내면서 이거 너 닮았다고 그래서 친구가 기분 나쁜 티를 냈는데 계속 사진 더 보내면서 (···) 그래 가지고 그 부모님이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친구가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사과만 받고 끝냈어요. (···) 올렸던 사람도 자기는 장난이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 법으로 고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복잡해지고 하니까 자기는 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사례 3)

제 남자친구가 단톡방에서 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 남성들끼리 있는 한 네다섯 명 정도 있는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있는 단톡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사귀기 직전쯤에 “아~애랑 사귄다? 다른 누구랑 사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봤고 그 외에도 한번 저랑 관계를 가지려고 했을 때였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랬더니 막 그 단톡에 그 얘기를 공유를 한 거예요. “아, 나 오늘부터 금팔한다.” 이러면서 그리고 저랑 관계를 맺을 거라는 걸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거 보고 되게 놀랐었던 경험이 있어요. (사례 9)

-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는 남성이라도 남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감하는 발언을 하기가 어려움

남자 친구들의 경우에는 피해자 공감을 해도 제 생각에는 티를 못 내요. 그 무리에 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친한 친구가 찍었다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좀 아니지 않아?” 라고 말을 했다가는 “애 뭐야? 완전 진지충이야?” 라면서 “그게 어때서?” 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례 8)

라) 디지털성폭력 피해 경험

○ 불법 촬영

- 사례 8, 사례 10은 모두 직접적으로 불법 촬영 피해를 경험했으며, 장소는 모두 화장실이었음, 사례 10은 지난해에 피해를 경험했으며 아직 피해 당시의 감정을 재경험하는 상태였음

저 중 2때 인가? 불법 촬영 그런 거 몰랐을 때, ㅇㅇ마트 화장실인데 안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그 카메라 비디오 소리가 땡 나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 가지고 울면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사례 8)

화장실 세 번째 칸이 왼쪽이 유리벽이고, 오른쪽이 칸막이였던 말이에요. 뭔가 유리벽에서 움직이는 게 보여 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유리벽에 비친 걸로 오른쪽 뒤쪽 위에 사람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 저게 뭐지?’ 하고 있는 와중에 머리 같은 거 내려가면서 이제 폰 같은 게 올라와서 ‘아, 이거 몰카 같은 건가?’ (사례 10)

- 라이브 방송으로 강제적인 장면들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그것을 목격한 사례가 있음

라이브 방송 거의 천 몇 명 이런 식으로 보고. (...) 몇 시에 뭐 누구 이런 거 찍을 거다.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어야.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무대포로 찍어서 올리는 애들도 있고. (...) 여자아이 보고 하라고 하면 여자아이는 울고 있고, 남자아이들은 안 하면 때린다거나 그러다가 안 하면 담배빵 같은 거 맞고 있고. (사례 7)

○ 몸캠 피해

- 성적인 사진을 전송하라고 강요하면서 이별 통보나 협박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사례가 있음

남자가 여자 친구한테 “성관계 영상 찍어도 되냐?”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너 가슴 사진 보여 주

면 안 되냐?” 아니면 “밑에 사진 좀 보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애들도 있고. (….) 사귀지 좀 되었고, 어차피 볼 것 다 봤는데 자기만 가지고 있겠다. 이러니까 여자는 싫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헤어지고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 결국에는 헤어지자고 하면은 알겠다고 보내 준다고. 그런데 약간 퍼진 애들도 있는데 안 퍼지는 애들도 있고... (사례 7)

○ 유포, 재유포

- 불법 촬영물 유포를 목격하는 사례가 있고, 주로 단톡방이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당한 사람이 여자인데 그 사람 핸드폰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그걸로 그 사람 SNS 올리고, 그러면 찍은 사람은 그 사람 게시물에 공유해 가지고, 또 공유하고, 공유하고가 반복되면서 다 퍼지는 거예요. (….) 그 게시물을 삭제해도 이제 삭제는 되어도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상태여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례 7)

저는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하는 거를 봤어요. 동호회 같은 단톡방에서 서로 친분이 있고, 서로 친목을 다지려고 모이는데 그 알게 된 길지 않은 단톡이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거기에 동영상을 올리시는 거예요. (….) 동영상이라 뭐 어떤 관계도 사진이라 엄청 긴 장문의 글을 같이 올렸어요. (….) 내용과 함께 성관계 영상을 올린 거예요. (사례 9)

ㅇㅇㅇ이라는 사람이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야동을 유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단톡방에 저도 있었고, 위에 올려 보니까 진짜 야동 있었던 거예요. (….) 진짜 폐메로 많이 봐요. (사례 11)

- 데이트 관계에서 촬영을 하고, 촬영물이 유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대부분 남자가 찍자고 하면 (….) 일단 안 된다고 몇 번은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계속 조르면. (….) 찍는 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 남자애들끼리는 친구한테 먼저 일단 보여 줄 것 같아요. “나 애랑 했는데 한번 볼래?”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소문이 퍼지고 (….) 남자 입장에서 보면 지가 보여 주고 싶은 건데 여자 입장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보여 준거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고, 수치스럽잖아요. (사례 6)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한테 그런 사진(자위 사진) 보내 달라고 하고 “영상 찍어서 보내 봐.” 이런 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것을 퍼와서 자기가 보고 막 공유하고, 점점 퍼지고. (….) 거의 남자 친구들이 강압적으로 여자 친구를 시켜서 영상을 찍는데 그걸 공유해서 다 보여주는 거죠. (….) 게시물에 올리면은 거의 다 저장도 되고. (사례 7)

- 헤어진 후 실제 유포를 하고, 피해자의 정보를 노출시키기고 주변 지인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피해자가 힘들어 하는 상황이 생김

(퍼지는 경우는) 그냥 헤어지니까 그것을 올리는 거죠. 자기랑 관련 없다고 생각해서.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한테 그렇게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해서 안주면 헤어질 거다. 이러면 사진을 보내줘요.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헤어지게 되면은 그 사진을 올려요. (...) 협박은 안하고 그냥 올려요. 그냥 올려서 이제 “이거 누구일 것 같냐?” 애들이 “누군데? 누군데?” 이러면 개인적으로 연락하라고. 누군지 말해 준다고. (...) 피해자는 엄청 힘들어 하는 거죠. (사례 7)

여자애들은 남자친구가 있으면 사진 찍어 보내잖아요. 그런데 헤어지면 그 남자친구들이 사진을 돌린단 말이예요. (...) 남자친구가 “가슴 찍어서 보여줘.” 하면은... 그러면 속옷만 입고... 안 좋게 헤어지면 (...) 그 남자친구의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너 남자친구가 네 알몸사진 다 보내고 있다, 놀리고 있다. 말해줘서 여자친구가 엄청 울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면 더 할까 봐. (사례 12)

○ 유포 불안

- 어떤 촬영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할 불안감이 매우 크지만,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촬영물을 요구하지는 못함

중학교 때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어떤 한 남자아이가 사진을 찍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제 사진도 있다고 들었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학원에서 딱히 뭘 한 건 없었고요. 그냥 그렇게 넘겼던 것 같아요. (...) 기분이 나빴죠. 사진을 왜 찍고 다니지? (...) 그때는 어려서 그냥 넘겼는데 지금이라면 그 얘길 들었으면 가서 따질 것 같아요. 사진 왜 찍냐고. (사례 3)

- 성적 촬영물의 경우 타인에게 전송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고, 촬영한 기기가 아닌 다른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것을 알았을 때 유포에 대한 불안이 더욱 높아짐

그때 제가 머리 감고, 위에 긴 거 입고, 밑에는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거울 보면서 화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찍으려고 해가지고 제가 얼굴 가렸던 사진이었거든요. “찍어도 되냐?” 그 말은 없었지만 일단 찍은 건 알고 있어가지고... (사례 10)

남자친구 관련되어서도 막 사귄 때는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둘만 좀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깨

지고 난 뒤에 다 삭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불안하죠. (...) 오래 사귀었다가 이제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작년 10월달 쯤 헤어졌다가 요번에 다시 친해졌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사람 핸드폰이 아니라 탭을 한번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사진이 남아 있어가지고. (...) 그냥 거울 비추는 거 통해서 제가 거울을 보고 있었을 때인데 뒤에서 비추게? 그렇게 자기도 비치면서 저도 비치게 찍은 사진이 있었던 거 같고... 좀 많았는데 기억이 제대로 안 나요. (...) 삭제는 했지만 탭에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이제 또 다른데 남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좀 있죠. (사례 10)

○ 사이버 공간 성적 괴롭힘

-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와 익명 플랫폼인 ask.fm(ASKfm)임

페이스북 들어가면 주소창 들어가면 이상한 것이 막 맨날 떠요. (사례 6)

익명으로 해서 질문 같은 거 하는 그런 앱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글을 달아요. “너 그 남자한테 뭐 해줬다며?” 이런 식으로. “너 뭐하며? 뭐 하다며?” 이려고, “너는 가슴이 크다며? 뭐 하다며?” 이런 식으로 “그런 남자랑 할 때는 기분이 어땠어?”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 그거를 페이스북, SNS에 링크를 따서 올리면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글을 남기는 거예요. 올린 사람은 누군지 아는데 글을 남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사례 7)

SNS에 연락을 할 때 진짜 근데 너무 심한 수준도 너무 많고, 진짜 노골적으로 성희롱 하면서 너의 어디를 훑아보고 싶다. 라던가. (...) 너의 뭐 보지를 훑고 싶다. 너한테 박아 주면 니가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그런 멘션을 보내는 한국 남성들도 많이 있었고, 외국인 중에 자기 성기 사진을 보내는 외국인도 있었고. (사례 9)

오늘도 페메로 연락을 받았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몸매가 참 좋으시네요.” 하는 거예요. (...) 그냥 칭찬 한 거래요. (...) 솔직히 이거 들으면 저도 기분 나쁘니까 (...) 어떤 사람들은 페메로 “성관계 맺고 싶다.” 이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 (사례 11)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모르는 사람이 조건만남 할 생각 있냐고 해서 싫다고 하니까 차단한 적도 있고, 자기 자위 영상 보여 달라고 한 적도 있고, 영상통화 할 테니까 보여달라고... 봐 달라고...전처럼 몸매 좋다. 이런 식으로 연락 온 적도 있어요. (...) “나 완전 외로워서 미치겠어. 하고 싶어서 혼자 술 먹었.”, 이런 식으로도 왔었고, “도저히 마음을 못 잡겠네요.” “나 솔직히 다리 얇은 사람 참 좋더라. 화장하는 사람하고.” (...) 모르는 사람한테. (사례 11)

- 단톡방 등에서 외모에 대한 언급과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실제 비난이나 조롱 피해로 이어지기도 함

단톡방이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나 누구랑 했다.” 라고 “저 여자 몸은 어떡대. 저 아이는 뭐가 어떡네, 저렇네.” 이러면서 “가슴은 작더라.” 이러면서 다 이야기 하는데 (...) 이름을 말하죠. 전 여친 누구다. 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랑 했으면은 “누구랑 했어.” 이려고...아니면 “그 시청에 어떤 아이 있잖아? 그 아이랑 했어.” 라고 하면서 다 이야기하죠. (...) 자기 여자 친구인데 “애랑 해보니까 별로야.” 그러면 이제 남자애들이 지나가면서 막 웃고 가요. (사례 7)

- 게임을 하는 여성 유저도 성희롱의 대상이 되고, 성희롱 경험으로 위축됨을 경험함

제가 한 때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 여자 게임 유저가 있으면 뭐 희롱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들을 들으니깐 저도 거기서 대화를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 제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낮은 목소리를 내면서 남자인 척 하면서 하고, 그러다가 너무 급해서 “아, 뒤에 뭐 있어.” 했는데 상대방이 “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여자있어? 누구 여자 아니야?”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 제 성별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게임을 하면서... 뭔가 더더욱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했던 것 같아요. (사례 9)

○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서 성적 이미지로 전시

- 익명성을 기반으로 사진 도용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타인의 계정 프로필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가는 경우도 나타남

약간 어떤 여자가 자기 몸 보라고 영상을 찍으면 그거를 이제 SNS에서 공유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사람 이름으로 올린 건데 그 사람이 직접 올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올린 거예요. 계속. (사례 7)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런 적도 있대요. 얼굴을 도용당했는데 성적인 것으로 완전 뭐. 얼굴은 자기 얼굴인데 몸은 자기 얼굴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아이 몸이라고,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얼굴 합성을 엄청 많이 해요. 일반 여자애들 합성을 엄청 많이 해서 이거 자기 아니라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 아니니까 믿지 말라고. (...) 그런데 속상한 점은 남자애들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사례 8)

그 친구가 자기 몸 사진을 달라붙는 옷 입고 찍어서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 올렸어요. 계정을 하나 파서 그 친구 사진을 저장한 다음 그 친구인 척 하면서 오빠들 일로 와요. 이러면서. 그 친구인 것처럼 오빠들 막 이려고.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엄청 화났어요. 근데 못 잡았다고 했어

요. (사례 12)

○ 온라인 그루밍

- 온라인 그루밍으로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음

조건만남 멘트가.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으세요?” 성접대하는 건데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자기도, 주변 다른 사람들도 그걸로 돈 많이 벌었다고 그렇게 왔어요. 12만원에 자기 만남 할 수 있다고. 꽤 많이 받았어요. 한 달에 네다섯 번일 때도 있고, (사례 11)

(여자 청소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건) 성매매, 조건만남이요. (어떤 경로) 어플이요. 핸드폰 어플이나 랜덤 채팅? 많아요. 앱들이.. 그 앱을 깔아서 들어가면 남자분들이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가와요. 그럼 만나러 가겠죠. 그다음엔 뭐, 친구가 안 좋은 일 당한 적이 있는데 맞기도 했었고. (...) 잘 몰라요. 어른들은. (사례 12)

○ 채팅 어플리케이션 피해

- 조건만남에 노출되는 시기는 주로 중학교 3학년이 많다고 함
- 사례 12는 아직도 피해 경험을 떠올리면서 당시에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아직도 너무 무섭다고 함. 당시 신고는 하지 않고 엄마에게만 이야기함

옛날에 조건만남 한 번 했을 때 그 남자. 그때 엄청 무서웠어요. 그 사람 차에 탄 순간부터 엄청 무서웠어요. 다특이요. 그냥 안녕하다가 나이도 물어보고 키도 물어보고 몸무게도 물어보고 가슴 사이즈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 앱을 애들이 제일 많이 써요. 그 앱부터 없애야 해요. 어디 앞에서 몇 시까지 보자 이런 다음에 거기 서 있으면 태우러 와요. 그다음 애월 쪽 무인텔에 가서 돈 받고, 관계하고. 그때 아 진짜. 그 사람이 여기 손 묶어가지고, 그다음에. 하는데 갑자기 손발 묶어가지고 이런 거 해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목 조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목이 진짜 아팠단 말이에요. (사례 12)

마)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및 대응

○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하거나 자신의 탓이라고 여김

- 유포 피해자이지만 자기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하며 자책하고, 자신의 몸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었음

- 사례 12는 랜덤채팅 피해자이고, 후회가 크고 아직도 힘들어 함

사진 유포 당한 친구가 자기 몸이 더럽대요. 자기가 제일, 자기 몸이 더럽대요. 완전 힘들어 보였어요. 왜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런 걸 찍어서 보냈는지, 왜 남자친구랑 그렇게 했는지. (사례 12)

(불법 촬영 피해자) 일단은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어 할 거라서 처음에는 상담으로. 많이 심하다면 그거는 자살 쪽으로 갈 수도 있어서... 자해나... (사례 10)

숨 막히고. 그냥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소리를 쳐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 엄마가 엄청 울었어요. 저도 완전 울었어요. 그때 이후로 엄청 후회하고 (사례 12)

-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보고 심리적·정서적·신체적으로 두려운 반응을 경험함
-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에도 두려움이 나타나고 신체화 반응으로 이어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잖아요? 접근하기 너무 쉬운 거 같고. 그리고 이게 영상은 한 번 찍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누군가의 컴퓨터에 있어서 그게 계속 계속 유포 되는 거라서. 저는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쌓여 가는 거 같아요. (사례 1)

그런 거 당했던 사람들 협박받으면 우울증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아요? (...) 사람을 쉽게 못 믿고... (...) 그러면 나중에 사회생활 못 할 것 같아요. (사례 6)

무섭기도 하죠. 일단 처음에 보면 너무 놀라고, 이게 왜 화가 나고, 어떤 게 두렵고, 이게 구체적으로 생각이 되기 전에 일단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 같아요. 손이 떨리기도 하고. (...) 다른 친구의 프로필을 캡처해서 자기 계정에 올리면서 “아, 뭐 어떤 저편 여자다.” 그러면서 글을 쓰더라고요. (사례 9)

- 대인관계 불신을 경험함

- 특히 신뢰하던 관계에서 불법 촬영이나 유포의 피해를 경험했을 때에는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함

(친밀한 관계에서 피해)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 다 의심하게 되겠죠. 누

구를 만나든, ‘애도 그럴 건가?’ (사례 6)

○ 드러내기가 어려움

- 누구에게도 드러내기 힘들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고, 친한 친구에게만 어려움을 이야기 함

저는 그냥 사진 찍힌 그거에 불과한데 다른 더 큰 피해를 봤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 말하기 힘들죠. 아무래도. (사례 3)

부모님한테... 솔직히 청소년 애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못 하죠. 일단 친구들한테. 고민을 털어 놓죠. 요즘 이런데 너무 힘들다. (사례 6)

지적 장애인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남자친구랑 놀러 갔는데 그쪽에 삼촌분이 있었나 봐요? 삼촌분이 술을 먹고 나서 여자 친구를 차로 데리고 간 다음에 관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블랙박스에 찍혔고, 신고를 했죠. (...) 유출은 안 되었는데 자기가 술을 먹고 당한 것을 아니까 자기가 신고를 못 하겠다고...이거 못 하겠다고...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 (사례 7)

순간 되게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 이런 거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보내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러면서 저는 영상 보내 주신 거 삭제할게요. 이렇게 썼어요. (사례 9)

○ 피해 이후 두려움이 지속되고 피해를 재경험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일상에 영향을 줌

- 불법 촬영 피해 경험 후에는 대처하지 못하고 불안이 지속됨

지하철 같은 데서 누가 찍는 거 같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사례 1)

불안했던 같아요. 어떡하지, 내가 고개를 들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까지 벗었지? 이런 생각하고. 그 일이 신고해야 할 일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 사람 왜 이래?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까지만 했던 거죠. ‘헐 뭐야, 무서워 이렇게.’ (사례 8)

화장실 갔을 때 좀 두렵긴 하죠. 카메라 있나? 그런 것 때문에. 작년 초반에 한번 몰카 찍힐 뻔했던 거 그거 이후로 조금 화장실 가면 그 구멍 같은데 휴지 끼워져 있거나 하면 좀 불안해서 위아래 다 쳐다보고 좀 그런 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그때 한번 당할 뻔하기는 했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 신경 쓰여서... (...) 지금도 많이 살펴보기는 하는데 그때 이후로

몇 달간은 화장실 들어가면 위, 아래, 양쪽 다 보고 (사례 10)

- 계속해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고, 피해가 두려워 SNS 등을 차단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등 온라인 활동에 제약이 생김.

사진이 sns에서 공개될까 봐 비공개로 해 놓은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전 남친이 갑자기 욕설 올리고, 막 못생겼네. 어쩌네. 죽어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공개로 해 놓고 차단 걸었어요. 올렸던 것까지 다 지우고 그 계정을 삭제해버렸어요. (사례 11)

n번방 시위할 때 있잖아요. 저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는 것이 있는데 (...) 지인을 태그해서 릴레이로 시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이거 당장 내려라. 이거 n번방 관련된 나쁜 애들이 너네 계정 들어가서 다 합성하고 있다. 그래서 애들이 다 내렸어요. 사진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다 지웠어요. 시위하는 스토리를 다 지웠어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 얼굴을 합성할거다. 그래서 다 지웠어요. (사례 8)

걱정 되었어요. 두려웠죠. (...) 그 일베 사이트에는 모자이크 없이 진짜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요즘에는 SNS에 자기 사진을 올리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례 9)

- 제주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피해가 지속되고 피해자가 더 힘들어지기도 함
- 지역 네트워크에 성적 소문이 퍼지고 피해 사례가 공유되면서 개인 정보가 드러나거나 피해자가 특정되기도 함,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음

학생 때 남자들은 여자랑 했다. 관계를 했다.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다 말하고 다니는. (...) 그게 소문으로 도니까. 제주도는 좁으니까 (...) 소문이 빨리 도는. 모르는 아이더라도 이름 들으면 “개? 그런 애잖아”. 육지는 다른 지역이라도 옮기면 SNS로 올라가기는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피해를 안 보는데 제주도는 거의 다 아는 사람이니까 학생들도, 그렇다 보니까 그게 빨리 돌죠. (...) 어떤 애들은 그것 때문에 자해하고 그렇게 지내는 애들도 있어요. (사례 7)

관계를 그냥 혹은 마음에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남자가 이 남자, 저 남자, 여자애들한테도 다 말하고, (...) 소문이 다 돌아가지고 엄청 후회하고, 힘들어 하죠. (...) 그것 때문에 자해하는 것이 제일 큰 것 같고. (...) 인터넷으로 그 아이의 특성적인 특징 같은 것을 다 적어 놓고...키 몇에다가 몸무게 몇이고,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몇 번인 누구잖아? (...) 그러면 다 누구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항상 머리 단발에다 시청에서 막 머리 묶고 다니고 그런 애들 있잖아? 이런

게 얘기해 주면 애들은 다 아는 거죠. (...) 개는 혼자 힘들어 하고 자해를 하는데 그냥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어 놓으니까 되게 심해요. 제주도가 솔직히 좁잖아요. (사례 7)

3) 데이트 폭력

가)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

○ 이별 통보했을 때 폭력을 경험

- 이별 통보 후 사과를 하고 울고 무릎을 꿇는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지속하기도 함

연애를 하는 모습들이 ‘이 정도면 데이트 폭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도한 모습들을 좀 많이 봐요. 진짜로 매일매일 고박고박 연락을 밤에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거에 못 견뎌서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 집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읍소를 하고 (...) 나아진다고 스스로 세뇌하면서 계속 만나게 되고 (...) 헤어지자고 하면은 또 읍소를 하고 (사례 1)

제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한참 뒤에 연락이 와서 또 계속 한 번만 밥 먹어 달라고, 한 번만 만나 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싫다고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계속... (사례 3)

데이트하는 과정에서도 어깨 밀치면서 “니 같은 새끼 만나는 것보다 그냥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낫다.” 면서 하다가 그러면 나랑 헤어지자고 했어요. (...) 헤어졌다가 울면서 하니까... 눈물에 약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받아주고, 받아주고, 받아주다가 결국에는 헤어졌어요. (...) 헤어지자고 하면 붙잡고 헤어지자고 하면 계속 붙잡고 그게 한 8번은 된 거 같아요. (사례 11)

○ 스토킹 피해

- 1인 여성 가구의 경우는 거주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공간을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피해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음

막 만나 달라 하니까 여자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 자꾸 쫓아오고, 스토킹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서 좋게 한 번 더 헤어져야지. 하고 만났고 그러고 다시 헤어졌는데 더 심각하게 스토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 한 번은 집에 갔는데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취방 안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 남자가. (...) 카드 키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훔쳐 간 거 같다. (...) “워 너 자는 것만 보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 억지로 막 이렇게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억지로 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많이 시달려서 자살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약을 엄청 많이 먹어서 응급실에 실려 가서 (...) (사례 9)

○ 통제 폭력 경험

-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시키고 자신만을 만나라고 한다든지, 동아리 활동 등을 못 하게 하고 외출을 못 하게 하는 등의 통제가 나타남, 옷차림을 단속하거나 핸드폰을 검사하는 등의 행위도 나타남

학교 생활하다 보면 친구들이 학생회 활동을 한다던가 (...) 이런 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꼭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본 거예요. “왜 안 해야 되냐?” 하면은 “그런 거 하면은 밤늦게까지 술도 많이 먹어야 되고, 남자들이랑도 많이 어울려야 되고, 그래서 안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사례 1)

자기가 배가 드러나는 옷을 입었는데 (...) “꼴 보기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 계속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미안하다.”라고 하고. (...) (사례 1)

근데 대학교 입학 전부터 사귀던 남자 친구가 좀 심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짧은 치마 이런 것들도 못 입게 하고, 남자들이랑 말도 잘 못 섞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행사에도 잘 참여하지 못하고.. (...) 저는 대학교를 다니는데 남자 친구는 대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남자인 친구들, 선배들도 보고 하니까... 저도 1학년 때는 과 행사도 많이 못 갔었고, 좀 그런 면이 있었죠. (...) 처음에는 그냥 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왜 가야 되냐고? 왜 대학교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하냐고? 이렇게까지 이야기 했었어요. (사례 3)

남자 친구가 밖에 나가지 말라고, 거기만 있으라고 하고... 여자는 답답하니까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싸웠어요.. (...) 그냥 막 “나 갈래.” 하니까 그냥 있으라고... 그게 통제 아니에요? (사례 6)

자기만 만나야 한다. 그런 거. (...) 친구 만날 시간이면 나를 만나라. (...) 그런데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끝났어요. (사례 6)

제가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한 적 있어요. “다른 여자 만나지마.” 이렇게. 핸드폰을 수시로 들여다보거나. 제가 집착을 많이 했어요. 좋아하니까. (사례 12)

○ 성적 폭력

- 성적인 행위에서 주로 남성이 일방적으로 강요적인 요구를 하거나 길거리에서 강제 추행이 발생하기도 함, 화를 낼까 봐 거절하지 못하고 손을 치우는 방법이나 돌려 말하는 등의 소극적 행동으로 표현했다고 함

성관계를 하다가 남자가 “안에 해도 되냐?” 많이 들어요. 해도 되냐고 해서 처음에는 “안된다.” 했는데 그냥 싸 버렸어요. (...) 임신돼서 후회하고...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먼저 남자가 안에 싸는 경우도 있고. (...) 약 먹고, 그런 애들도 있었고... (사례 6)

성관계가 두려웠어요. (...) “못 하겠어.” 이렇게 했더니 짜증을 내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 이렇게 하니깐 그때 제가 얼어붙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기서 더 거부하면 이 관계가 깨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거절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 뭔가 되게 강요받는 경험이라고 느껴졌어요. 약간 함부로 몸을 만 지려고 하는 경험들이 되게 많았고, (...) 몸을 만져서 그냥 이렇게 막 화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손만 이렇게 치우고. (사례 9)

전 남친이 대놓고 길가에서 가슴 만지면서 돼지라고 짜증낸 적 있어요. 당황스럽기는 했어요. 제가 거절을 잘못하고, 돌려서 말하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저한테 욕할까 봐. (사례 11)

콘돔을 꺼야 하잖아요. 피임을 잘해야 하잖아요. 근데 한 번 안 끼고 하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싸운 적 있었어요. (...) 기분 나빴어요, 진짜. 그때 약간 정 털렸어요. (...) 피임을 잘 안 해요, 애들은. (사례 12)

○ 경제적 폭력

- 데이트 상대에게 계속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 등의 폭력을 경험함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애는 뭐 때문에 나랑 사귀었지? 돈 보고 사귀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돈을 빌려가면서 빌리고, 빌리고, 빌리다가 170만원을 빌렸는데 그때부터 잠수를 탄 거예요. 또. (사례 11)

○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던 관계에서도 폭력을 목격함

- 겉으로 좋아 보였던 관계에서도 매우 심각한 신체적 폭력이 발생함을 보고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함

고등학생 때인가? 아는 학교 선배 언니가 남자친구랑 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 그 언니가 남자 친구한테 맞았다고 올린 거예요. 주변 친구들도 되게 사이 좋아 보이고 했는데 어떻게 이랬지? 그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 자주 맞았던 것 같아요. 명도 들고. (사례 3)

욕설부터 해서 둘이 말싸움 번지다가 폭력으로 가는 것 같아요. (...) 보통 남자가 맞는 것보다

여자가 맞는 게 많겠죠. (...) 그냥 완전 사소한 건데 둘이 그냥 싸우다가 남자애가 (...) 뺨을 이렇게 해서 여자가 기절한 적이 있어요. (사례 6)

○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에서는 여성의 피해 경험이 많음

- 데이트 폭력에서 여성이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방어능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며, 성적 소문으로 인해 남성보다 피해를 더 크게 경험함

남성이 그런 폭력을 겪는 경우는 사실 많이 못 봤고, 보통 여성들이 그렇게 겪는데. (사례 1)

여자만 되게 안 좋게 소문나고. 남자들 사이에서는 남자들끼리 “와, 너 멋있다.” 이러고, 성관계가 자랑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여자들은 걸레 소리 듣고 다니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누구누구 몸매 좋다, 가슴이 컸다 그러는데 (사례 12)

나) 피해 경험 시 대응과 피해자의 심리

○ 개인적으로 해결하거나, 친구들에게 경험을 나누고 있음

- 사적인 문제로 보고 당사자 간 해결을 하려고 하며, 피해 지원이나 상담기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함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다면)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개인의 돌만의 문제니까 그렇게 넘길 것 같아요. (...)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혹시 어딘지 몰라요. (...)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해 본 적도 없고, 찾아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사례 3)

해결? 그냥 당사자끼리 한 거 같아요. 둘이 사소한 문제로 그러다가 갑자기 하니까 주변 애들이 놀라잖아요? 그래서 “괜찮니?” 하다가 둘이 또 “미안하다.”부터 시작해서... (사례 6)

- 주로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고 있음. 피해 지원이나 상담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주위에서 이상한 시선으로 볼까봐 방문이 꺼려지고, 상담·치료받는 것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표현함

친밀한 관계에서 그런 폭력적인 경험을 했을 때 (...) 보통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중학교 친구들 모여 있는 카톡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뭔가 어디에 지원을 받거나, 상담센터에 가보거나 이런 거는 잘 본적이 없네요. 내가 겪는 것을 폭력으로 인

지하더라도 어떤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될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 사실 정신과에 가거나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이상하게 많이들 보기 때문에 (사례 1)

○ 대응하지 않으며 참고 지냄

- 가해자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평판이 좋은 경우에는 드러내기가 어렵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과 안에서도 같은 CC였는데 과 안에서 남자가 평판이 좋았고, (···) 과에서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또 그 남자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만나면서 폭력적인 성향도 보고 했으니까 이거 신고했다가 빨간 줄이 그어지면 나한테 보복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신고하지 못하고,. (사례 9)

-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비하와 자책이 커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가지고 이런 사람은 선택한 건가?’, ‘이렇게 별로인 사람과 만나는 나도 별로인 것은 아닌가?’ (사례 1)

그때는 그냥 술에 의존하고 살았어요. 요즘도 술에 의존하면서 약 먹고... (사례 11)

- 피해자를 비난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리게 되고, 가해자가 신고했는지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더욱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함

피해자를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니까 신고도 못 하겠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가지고. 쉬운 여자. 따 먹기 쉬운 여자. 직접적으로 강간당한 사람들은 걸레년 취급을 당하는 것도 많았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하고 잘 말을 안 했던 게 그런 취급을 많이 받았었으니까 함부로 신고를 못 하겠더라고요. (···) 저를 이상하게 볼까 봐 (사례 11)

(신고를 하면서 걱정이 되는 건) 보복이에요. (···) “너 신고 한 거 너 맞냐고.” (···)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사례 11)

○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드러내지 못함

- 피해자 지원 기관에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상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함

(학교 내 상담기관) 한편으로는 아니 학생들이 여기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담? 친구들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상담을 받고 싶어 할까? (사례 1)

심리적인 치료? 이런 게.. (….) 근데 일단 피해자가 그곳을 찾아가는 거 자체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 정보도 잘 모르고 있긴 한데 근데 선뜻 가서 내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 제주도가 아무래도 좀 건너 건너 다 아는 사이고 이런 게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례 3)

○ 적극적 대처를 통해 문제 해결했던 간접 경험

- 사례 1의 지인 경험이며, 피해자와 참여자에게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경우임

결국에 사귀던 친구 부모님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집에까지 찾아오는데 안 그러게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그 부모님 “아, 그러냐?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라고 하셨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사례 1)

다) 데이트 폭력을 인식하는 과정

○ 헤어지고 난 후에 데이트 폭력임을 인식하게 됨

- 데이트 관계에서 일상을 공유하고 상대의 사적인 영역에 무례하게 끼어들었던 행위들이 데이트 폭력임을 인식하고 자기 반성적 성찰과 혼란을 경험함

전 제가 했던 것이 폭력이 아닌가?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폭력이 심하다, 안심하다가 없겠지만 뭔가 이 친구의 일상을 침범하면서 지속해야 하는 일상을 침범하면서 계속 그 안에 끼어들려고 하는 (….) 일상을 같이 공유해야 되고, 무례함을 용인하는 관계가 연애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더 이상 저한테 용인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계속 침범하고 했던 게 아닌가? (사례 1)

헤어지고 나서 그때 그게 데이트 폭력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 뭔가 ‘어, 이거 이상한데’ 느껴도 되게 혼란스러워 하는 거 같아요. (사례 9)

- 데이트 폭력 관련 팜플렛을 보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 데이트 폭력을 인식하게 되었고, 순간 놀라고 당혹스러움 느낌이 듦

데이트 폭력?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 데이트 폭력 관련된 팜플렛이 있던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런 옷 입지 마라.” 이런 것도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래서 그때 나중에 가서는 조금 풀리긴 했는데 초반에 치마 못 입었었고. (...) 나중에는 ‘왜 내가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지?’ 생각도 들면서, 나중에는 조금 억압하는 듯이 느껴지고. (...) 남자애들을 전혀 못 만났어요. 데이트하는 사귀는 동안 이성과 연락 안 되고, 만나는 거 안 되고 이제 뭘 일이 생겨서 허락 받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사례 10)

4) 정책욕구

가) 인식 개선이 필요

○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함

제가 그냥 경험한 건데 교수님께서 (...) “어느 나라에 수업 시간에 누가 어떤 남학생이 음란물을 전송을 했다고 한다. 근데 그게 학교 아이피였다. 그래서 그 음란물을 받은 여학생이 고발을 하고 이런 단계에 있다. 그래서 핸드폰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시는데 약간 그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핸드폰을 그 시간에 안 쓴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이해도도 많이 떨어지지 않나? (사례 1)

○ 인식 개선을 통해 2차 피해 예방이 필요

-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 피해자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고, 피해 사건을 가십거리로 만드는 2차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음

교수가 학생을 강간해 가지고 그 교수가 학기 중에 갑자기 언젠가부터 수업을 안 나온 거예요. (...) 주변이니깐 알 수도 있지 않을까? “누구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사례 3)

(피해자가) 자기가 드러내지 못 하는 게 자기가 그렇게 소문이 났어도 드러내면 반대로 욕먹을 것이라는 생각에 못해요. (...) 원인 제공한 거다. (사례 7)

피해자가 이야기를 못 하는 이유가 소문 거리로 전락하니까. 사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대.” 라고 이야기 거리(가십거리)가 되어버리니까. (사례 8)

나) 예방 교육이 필요

○ 피해 직면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움

- 피해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자기방어훈련 등이 필요함

누가 이렇게 몰래 찍은 거 같으면 그 사람한테 다 가서 “뭐 찍는 거예요? 핸드폰 좀 집어넣어 주세요.”라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했는데 또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 매뉴얼 교육들이 좀 있으면은 (...) 대처하기 좀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사례 1)

교육을 할 때 실제로 자기방어훈련을 할 수 있도록 좀 트레이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제로 내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례 1)

○ 폭력 행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이 필요함

-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성폭력이 어떤 것인지 일반인들의 이해가 높지 않아서, 데이트 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나 디지털성폭력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이 필요

일단 주변에서도 저도 그렇고... 이게 데이트 폭력이다? 기준이 애매하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뭔지...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데이트 폭력이 맞는지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례 3)

-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폭력 피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교육

교육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 사실 영상이 찍혀서 돌아다녀도 찍힌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 그게 유독 여성한테만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사례 9)

-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교육, 대중교통 등 홍보를 통한 교육도 필요함

제주에도 이제 (대중교통 이용 시)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 앞에 공지 한다던가 그렇게 하면은 (...) 좀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례 1)

저도 (...) 경찰서 아저씨한테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무서운 것을 많이 알았어요. 이런 게 다 범죄였구나. (...)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진짜. 내가 생각이 없었다. (...) 도움이 진짜 될 것 같아요. (사례 6)

다) 청소년 피해자 상담·지원 시스템 필요

○ 보호자 동의 절차 없이 지원, 청소년 피해자의 익명 상담 요구

- 피해 청소년들은 상담이나 신고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드러낼 수 없었다고 함, 보호자 동의 절차 없이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하기를 원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함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동영상 촬영하고, 협박하고 그런 거 사이버 쪽에서 더 지원 많이 해주고... 익명으로 일단 막 올리라고 하고, 익명으로 도와 달라고 그것을 조사해서 조용히 익명으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 우울증도 걸리고 하니까 그런 것 치료나 그냥 아무한테도 쉽게 못 얘기하니까 익명으로 제보 받고 그런 것으로 도와주면 뭔가 나아질 것 같아서요. (...) 그런 애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럴 때 익명 같은 걸로 그냥 얘기해서 상담이라도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 거 같다고 그런 걸 듣고. (사례 6)

어른들한테는 절대 말 안하죠. 부모님한테는 혼날 것은 뻔하고, (...) 선생님들한테 말하면 부모님들이 다 알게 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 말 안 하고 혼자 힘들어 하는 거죠. 신고를 하려고 해도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라지면 자기도 자신을 지키겠다고 신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신고를 못하고 혼자 힘들어하니까. (...) 부모님 동의 필요 없이 그냥 청소년도 혼자 신고를 해서 그런 일도 처리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례 7)

(피해 경험은) 친구한테 얘기할 거 같아요. 그 지원 같은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게 심리적 상담이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동의 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나왔어요. 상담할 때 무조건 동의 받던 데?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 가족이니까.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잘못된 거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례 8)

-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자해나 자살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익명이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면 못 찾는 거죠. 근데 개네들은 부모님한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서에 신고하려면 보호자랑 같이 가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신고를 못 하고, 이제 혼자 힘들어하면서 자해를 하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 (사례 7)

라) 피해자 지원

○ 트라우마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함

- 폭력 피해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PTSD) 등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의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음, 피해 회복을 위해서 트라우마 치료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함

피해자 보호가 제일 우선인 거 같고요. 심리적으로 좀 트라우마가 심할 것 같아요. 지금 대학생인데 (...)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나중에 결혼할 때 걱정을 할 것 같아요. (...)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예 결혼도 못하고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사례 3)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일도 함부로 못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일해서 돈 모아서 병원비로 내는 것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사례 11)

○ 신속한 분리 조치가 필요

- 스토킹을 경험할 때에는 가해자를 접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 조치가 필요함

데이트 폭력 안에 스토킹을 경험하는 경우 그 가해자랑 단절되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례 3)

○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에게 생계비 지원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보완되어야 함

일을 하기 힘들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 지원이 같이 꼭 들어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례 1)

마) 처벌 강화

○ 처벌 강화 필요

- 인터넷 사용에서 모든 개인의 표현을 모두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고 혐오 현상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인터넷에서는 굳이 실명을 안 밝혀도 익명으로 그런 걸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올리는 행위까지는 뭔가 막을 방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처벌을 강화하면 좀 이런 일이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례 3)

○ 청소년 또래 문화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

- 청소년 또래 문화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학교 폭력으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함

학생이 청소년이 그런 짓 하면 솔직히 처벌을 좀 강하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 처음부터 강하게 하고, 소년원 같은 데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반성 하는 거 같아도 상대방을 힘들게 했으니까. 그런데 보내거나 또 학교에서도 징계 같은 거나 처분을 완전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이 학생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 생활기록부에 남게. (사례 6)

○ 디지털성폭력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진짜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게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었고. (사례 1)

처벌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 촬영자뿐만 아니라 그거를 제가 본 것처럼 나르는 사람, 혹은 보는 사람 이 사람들도 다 처벌을 받아야 이게 만약에 내가 촬영이 되어서 인터넷에 퍼지더라도 뭔가 처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은 최초유포자 아니면 신고가 안 되니까 되게 다들 그 영상을 지우려고 노력하는데 온라인 공간에 이미 퍼지면 최초유포자를 찾을 수가 없고, 계속 더 불어나잖아요. (사례 9)

4. 관련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가. 심층면접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젠더폭력 중 디지털성폭력, 데이트 폭력을 중심으로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종사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함

- 개별 심층면접 내용은 <표 5-3>과 같음
- 관련 종사자에게는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성폭력 피해 발생 양상,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및 피해의 영향, 대응이 어려운 이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항 등으로 내용을 구성함

〈표 5-3〉 심층면접 내용

구분	세부내용
피해 양상 및 실태	· 디지털성폭력 피해 유형 ·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 ·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및 피해의 영향	·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 피해의 영향
대응이 어려운 이유	· 지역적 특수성과의 관련 여부 ·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
정책욕구	·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기관 차원에서 노력할 점 · 지원 체계 내에서 보완할 점 · 기타

나. 면접조사 결과

1) 피해 발생 양상

가) 디지털성폭력

- 유포 피해로 다른 심각한 문제가 파생됨
 - 유포 피해의 경우는 본인이 아니라 주변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더 큰 불안이 야기되고 대인관계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대학생이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사진을 찍은 줄을 몰라서 자기가 몰랐는데 전화 온 사람의 친구가 ‘그 선배가 너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 라는 걸 자기 본인은 모르는데 주변은 다 알고 있는 상태. (사례 5)

○ 유포 불안 피해가 증가

- 실제 영상물의 존재 여부를 떠나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고, 유포 불안으로 인해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피해를 지속시키는 경향이 있음

온라인 채팅을 했는데 (...) 그루밍 식으로 처음에 이제 사진, 일상적인 사진에서 나중에는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사진을 찍었고, (...) 이게 유포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고, (...) 혹시 유포가 되면 만약에 그럴 경우에 처벌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 유포 불안이 꽤 많이 있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알까 봐, 내 친구들이 모든 얘기를 다 아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같아요. 특히 또 이제 이미 유포됐다면 내 친구들이 볼까 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 같아요.(사례 5)

영상물... 뭐 성관계도 있고.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찍혔는지, 어떤 게 찍혔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유포한다고 하니까 그냥 무서워하는 그런 거, 확인하지는 못하고. 유포불안 피해가 있는 피해자들의 특징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좀 불안한 거 같아요. (...) 한 사람은 선배가 어디를 가더라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고 그리고 언제 찍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영상물을 갖고 협박을 했어요. (...) 이게 정확하게 어떤 영상물인지도 모르는데 그 영상물로 이제 유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귀자고 얘기를 하고. (...) 원지는 모르는 그런 촬영물이 유포가 될 경우에 자기에게 오는 피해가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가해자가 혹시 또 다른 영상물을 유포 할까봐 가해자의 요구를 또 들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5)

○ 그루밍 피해

- 저연령 피해자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그루밍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한 그루밍 범죄에 대한 대한 학교와 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대응이 필요함

엄마들이 전화 오고 아빠들이 전화 오는 게 있는데 (...) 채팅으로 사진도 보내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여자라고 하고 사진을 처음에 이제 일상, 손 사진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내라고 한 건데, 나중에는 성기 사진까지 보낸 거예요. (사례 5)

수법이, 그루밍 수법이 좀 제가 걱정이 되는데. 물론 수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연구 논문도 있고 그런데 과연 청소년들이나 학교에서 이걸 잘 알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이건 굉장히 심리적인 방법이거든요. 청소년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뭐 알아야 대응하죠. 알고는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사례 14)

내가 외로운 거예요, 이 오프라인에선 내가 친구가 없어. 놀 사람도 없어. 그건 장애인도 같은 거예요. 없는데 어떤 그 채팅앱이라던가 어떤 사이트에 가면 내가 여자라는 것 하나로. 그러면 몇 살이냐, 얼굴이 예쁘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다음에 그쪽에서 막 칭찬을 해줘요. 계속.(...) 관심을 받고 사랑 받는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존재감을 느낀다, 라는 거 자체 때문에 그 채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례 15)

○ 20대는 데이트 관계나 선후배 관계에서 디지털성폭력이 다수 발생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귀는 사이에서 많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그 대학 선후배 관계도 꽤 많더라고요. (사례 5)

○ SNS를 통한 사진 전송이나 채팅 어플리케이션 피해가 있고 아이들의 경우 죄가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초등학생은 틱톡이었어요. 틱톡으로 해서 그 사진을 보내고 동영상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 성인들 같으면 채팅, 온라인 채팅하는 것 같고. (사례 5)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자기가 찍어서 사람들이 얼굴은 안 나오고 위에 머리만 나왔어요.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자랑한 거예요. 나 그 여자아이랑 했다. 아이들이 “거짓말 하지마” 그런 거예요. “볼래?” 하면서 그 친구가 단톡방에 올린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 전부 걸려가지고 성폭력 범죄로 했는데 (...) 애는 퍼트릴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한테 보낸 것 자체가 뭐 퍼트린 거죠. 아이들이 전혀 이게 죄가 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례 13)

나) 데이트 폭력

○ 통제 폭력과 신체 폭력, 협박까지 동반되어 나타남

- 피해자가 관계를 단절하기가 어렵고 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함

정서적으로 완전히 통제 되고요. 하라면 해라. 이거예요.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런 식의 그 통제. 그 다음에 그냥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참 무자비하게 때리죠. 그 다음에 그 식구들에게 알리겠다. 라는 것들 그리고 식구들까지 괴롭히겠다. (사례 4)

- 피해자가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반복된 폭력으로 무감각해짐.

신체적인 거 하고 정서적인 거 꽤 많아요. (...) 몸으로 내동댕이친다든지 (...)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안 다쳤는데요. 하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자기는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감에 너무 힘들니까 그런 신체적인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 병원에 입원 해야 될 정도이면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동댕이치고 이 정도는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사례 5)

○ 경제적 폭력 경험

- 피해자가 일을 하면서 빚을 갚거나, 갚아야 한다는 협박을 경험하기도 함

처음에 데이트 상대가 선물을 하고 (...) 그런데 결국 카드빚을 내가 갚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트 비용. 월 먹고, 뭐 영화를 보고, 어디 호텔가고, 이런 비용들이 점점 나한테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켜 달라. 급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돈을 주게 되면 나한테 자꾸 빚이 늘어나고. (...) “뭐 좀 한번 해 보게 500만원만 달라.” 시작이 그런 거예요. “500만원만 달라. 같이 투자하면 같이 나눠서 같이 잘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자들에게 그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져오게 하죠. (사례 4)

여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벌어서 그 데이트 상대 또는 남편에게 재공을 한다고 해도 그건 정말 부수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남자 쪽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 할 때 여자 쪽에서 그거를 서포트 하지 못한다. 그것도 못 하냐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사례 4)

○ 데이트 관계 안에서 디지털성폭력 피해 경험

- 데이트 관계에서 강제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동의 촬영물을 유포 협박의 도구로 사용함

데이트 폭력일 경우에, 관계를 끊고 싶어 하는 경우에 그만 만나자고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상대 가해자 측에서는 이걸 유포한다고 얘기 하는 경우도 꽤 있고, 또 부모님 집에 찾아 간다고 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사례 5)

- 비동의 촬영물 등이 저장된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는 매우 당혹감이 들고 상대방에게 불신을 느끼지만, 삭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사귀는 남자친구 집에 가서 컴퓨터에서 폴더를 발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귀는 선배 집에 갔는데, (...) 폴더를 열어 봤는데 자신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런 사진을 보관을 안 한다고 했는데 보관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라 가지고 (...) 상대방에 대

한 불신도 꽤 많은 거죠. 안 찍는다고 한 거라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것들이 많으니까.
(사례 5)

2) 피해자 심리적 상태 및 피해의 영향

○ 당혹감, 대인관계 불신, 자신을 원망함

- 촬영물 유포 및 협박에 대하여 피해자는 스스로 자책하고 자신을 원망함

그거를 처음엔 왜 찍었는지 모르겠다. 동의했을 때도 분명히 이걸 보관하지 않고 재미로 찍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격이 굉장히 컸고 (사례 5)

- 데이트 관계에서도 반복된 용서하기를 통해 악순환이 지속됨,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고 있어도,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피해를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음

그래서 내가 이거 부당하다. 이거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해자에게 직접 하지 못해요. 그리고 당하죠. 많이 당하고, 그다음에 용서하고, 반복인 거 같아요. (사례 4)

데이트 폭력 자체가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건 훨씬 더 많아요. 스토킹하고 집착하는 거, 통제하는 게 그게 지금까지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받아들이는 피해자도 저를 좋아해서 그래요, 평소 때는 괜찮아요, 좋아요, 화났을 때 그러는 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술을 마셔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경우 꽤 많아요. 화났을 때 그래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사례 5)

○ 가정폭력과 연결되는 가능성

- 데이트 폭력 피해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벗어나기 힘든 구조 때문에 결혼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

이분들이 느끼는 공포는 회사도 못 가고요. 이사도 못가고요. 이사를 가면 어떻게든 알아내더라고요. (...)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 (...) 벗어나기 어려워져서 이게 결국은 동거, 결혼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가정폭력으로 그냥 직행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 같아요. (사례 4)

○ 행동의 제약이나 거주지 제약을 받음

-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계속 쫓겨 다니는 상황으로 인해 거주 공간에 대한 불안감이 많고 이동이 잦음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오히려 그렇게까지 주장을 잘 못 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헤어지게 해 달라. 내가 이사를 가면 이사 간 곳을 비밀로 해 달라. 계속 피해자들만 점점 쫓겨 다니는 거죠. (사례 4)

- 촬영물 유포 협박을 경험하는 피해자는 실제 스토킹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불안해하며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음

이제 밖에 나가는 것조차 불안해하고. 그리고 혼자 나가는 적이 거의 없어요. 혼자 나가게 되면 혹시 이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거 같고 또 그 사람이 스토킹하는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거 같아요. (사례 5)

3) 대응이 어려운 이유

가) 지역적 특수성 : 공식 절차에 따라 대응하기 어려움

○ 피해자는 지역 사회에 알려질까 두려워서 상담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불안해 함

가까운 귀당. 아직도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아요. 누구네 집 몇째 딸, 누구네 집 몇째 며느리 소문 그것을 많이 신경 쓰는 거 같아요. (...) 비밀로 하는 것 맞냐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 정말 소문나면 안 된다고. (...) 되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제주도를 떠나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불안해하시고. (사례 4)

○ 데이트 폭력에서도 주변인의 경우 지역 사회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있어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함

데이트에서도 보면 누구네 오빠 등 건너 건너 어떻게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힘든 점, 나쁜 점들을 알고 있어도 해소가 어렵거나 (...) 알기 때문에 이렇게 쏙 빠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례 4)

- 지역사회 공동체의 특성 상 피해자를 도왔을 때 오히려 자신이 힘들어질까 봐 외면하기도 함

나 좀 숨겨달라고. 안 된다고... (···)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기에 숨겨 주면 내가 보호해 주면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돈 만원을 주면서 다른데 가라고. 택시 타고 가라고. (사례 4)

나) 유포 불안으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 촬영물의 유포 협박이나 유포 불안으로 인해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

동의를 하고 찍는 경우도 있는데 동의 없이 찍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찍은 것을 헤어질 때 항상 협박용으로 쓰죠. “뿌리겠다.” 그런 상담도 가끔 있어요. (···)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영상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사례 4)

그런 관계들을 촬영한다는 거 자체가 정말 둘이 동의해서 둘이 찍었다. 라고 하면 둘이 삭제도 가능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나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런 말로 협박하고 “보내겠다. 집에 보내겠다. 학교에 올리겠다.” 이런 것들. (사례 4)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의 불안은 더 높은 거 같아요. 있다고 하는데 나는 본 적이 없거든요. (···) 유포될 거라는 그 불안 때문에 끌려 다니게 되는 거죠. 조종당하듯이 사는 거 같아요. (사례 4)

- 주변 사람이나 가족이 알게 되었을 때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음

보통은 그 연인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일 때 그때를 제일 힘들어 하는 거 같긴 해요. (···) 디지털 기기 자체를 혹시 키면 자기와 연관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문제는 그 지인이 알까봐 하는 그 불안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 주변에 알린다, 학교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직장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연인 관계도 아닌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꽤 많고. (···) 집에 알린다고 하면 부모님이 그런 걸 알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하는 것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도 꽤 많아요. (사례 4)

다) 심리적·정서적 고립 상황에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함

- 심리적·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황으로 가해자와 주변의 모든 시선이 다 무섭고 도움을 청하지 못함
-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비난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경험하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도움을 청함

내가 사랑해서 어쨌거나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용서해 버리는 거 또는 남들이 뭐라고 할까 봐 말하지 못하는 거. (...) 그래서 정말 끝까지 갔을 때 너무 힘들어 졌을 때 이때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사례 4)

- 가해자의 협박, 보복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함

상담할 때 가장 주저하는 게. 죽을까 봐요. 나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하고, 사회에서 매장 시키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진짜로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고,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뭐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섭기만 한 거예요. (사례 4)

4) 정책 욕구

가) 교육의 내실화 필요

- 제주 지역의 성교육이나 폭력 예방 교육이 내실화가 필요함

다른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교육청에 성교육을 학교에서 직접 해 봤던 그런 전문직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그런 쪽의 교육 자료도 많이 만들어 내고, 교육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 제주도는. 성교육이 굉장히(...) 그냥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땀땀하는 그런 교육이 된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례 2)

-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범죄 예방교육도 전 국민들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저는 예방 교육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 성인들의 교육도 필요하고, 또 아동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는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지금은 공공기관을 내에서는 이게 의무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가 아닌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것을 전부 의무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 교육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거고, 교육 때문에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보고 또 느꼈으니까 전화가 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례 5)

-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데이트 폭력에 방관하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막상 길에서 묻지마 폭력?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신고 해주잖아요. 근데 아직도 여자친구다. 이렇게 얘기 했을 때 (...) 정말 신고를 잘 해줄까? (...) 그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 그냥 방관해버리는 거죠. 저 사람들의 일로. (사례 4)

-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 개념들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디지털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

애들도 핸드폰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웃긴 모습 이런 거를 찰이라고 해가지고 막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요새 유튜브 하는 일이 많으니까 유튜브에 좀 더 기이하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것들을 올리는 그거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거 같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변의 친구들도 남의 얼굴을 함부로 올리는 게 잘못된 거다. 라는 인식도 못 할 뿐더러 (...)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디지털성폭력예방 방법 중의 하나는 어쨌든 뭔가 나의 사진이나 남의 사진을 공용의 공간에 올릴 때는 꼭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올려서도 상대방이 내려 달라고 하면 바로 내려 주는 이런 거는 철칙같이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례 2)

- 교육을 통해 디지털성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리고, 현실 세계에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지금은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면 뭔가 처벌받는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성추행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 직접 하는 거는 되게 큰 죄, 그다음에 디지털에서 내가 한 거는 그냥 가벼운 거고. (사례 2)

- 데이트 폭력에서 정서적인 폭력이 나타날 경우에 신체적 폭력과 다르게 피해를 사소

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이 꼭 필요함

전에는 이게 폭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맞아야만, 죽기 직전까지 가야만 폭력이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들에서는 우리가 좀 커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 그렇지만 그래도 정서적인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유 그까짓 거 하거나, 그거는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하고 하거나. 신체적인 폭력은 때리면 안 되지 하지만 정서적인 폭력은 그 여자가 좀 다르게 했으면, (...) 폭력으로 안 보는 경향이 아직 반은 있는 것 같아요. (...)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정서적인 폭력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사례 4)

나) 기관 협력 필요 : 공공기관 협업 강조

- 도의 성평등정책관실 등 주무부서와 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성교육 및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함

도에는 성평등정책관 그런 게 생겼잖아요. 저는 그게 생긴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를 부여를 하고요. (...) 도에 성평등정책관이 생겼으면 도교육청에 성 관련 부서, 전담부서가 아니면 팀이라도 하나가 생기면 참 서로 협력해서 같이 짜서 같이 학부모 교육하고, 학부모 교육한 내용도 아이들한테 똑같은 교육을 하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 그래서 유치원부터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이 두 개의 바퀴가 잘 짜여서 돌아가야 될 거 같아요. (사례 2)

-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단체 및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특히 디지털성폭력 관련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이 아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제가 여성단체나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러 가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 이런 쪽 강사들은 굉장히 성적인 그런 지식이나 인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도에서 만약에 이제 뭔가 성교육 센터라든가 이걸 하게 돼서 교육 자료를 만들게 된다면, 학교와 꼭 협력해서 만들어서 사회에서의 앞서가는 인식을 학교에 뿌려줄 필요가 있고. (사례 2)

그때 당시에는 지역사회 쪽 여성 범죄에 대한 협력체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거랑 다르게 디지털 성폭력은 지역 정책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중앙 정부 차원에서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사례 14)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전담팀 구성이 필요함

전담팀이 완전히 잡혀서 학교에서 성 사안이 발생하면 이 분이 가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 여성 단체에서 도의화하고 같이 손을 잡고, 교육청에 성 전담부서를 만들고, (...) 교육청에 성 교육 전담팀이 마련이 되면 이럴 때 상담은 이 사람, 이럴 때 학교에 뭐 썼을 때 성 관련 강사 누구. 이렇게 짝 그런 명단들이 있으면 이렇게 여성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뭔가 체계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학교에서도 너 일, 내 일 미루는 거면 여기다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여기 이 분이랑 연결을 해 주겠다.” 그렇게 딱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그러면 팀 하나 운영을 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그리고 도의 성평등정책관이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인식을 바꾸거나 뭐 이런 거가 주지만 여기는 당장 SOS팀 역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례 2)

○ 경찰 등 안전망 확보를 위한 협업 필요

-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담 경찰관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지원,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상담기관과 연결할 수 있도록 경찰의 관심이 필요함

-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담 경찰관이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을 인식하는 거랑 데이트 폭력을 인식하는 거는 다를 것 같아요. (...) 남녀 관계. 연애하는 사이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왜 둘이 그걸 조절을 못 해? 헤어지면 되지. 뭐 이런 식. (...) 데이트 폭력 전담경찰관들이 데이트 폭력의 시작이 어땠고, 과정이 어땠고, 끝이 어떤지를 아는 분들이 그 조사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증명해낼지, 어느 정도가 정서적인 학대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경찰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사례 4)

-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를 상담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경찰의 관심이 필요함

경찰서 가서 우리 데이트 폭력 치료비 드릴 수 있으니까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있으면 알려줘라. 그러면 저희가 가서 상담하고, 치료비도 내고, 계속 만나겠다. 수십 번을 찾아갔는데요. 경찰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경찰들은 왜 연결을 안 하는 걸까? (사례 4)

-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피해자가 경험하는 두려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야 함

지금은 URL이 필요한데 그때는 URL조차도 아니고 원본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원본이 또 그 얼굴이 나타나는 즉시 대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 얼굴이 보이는 걸, 다 보인다는 거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신고를 두려워하고 그냥 신고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사례 5)

응답 순찰 이런 게 조금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 그래도 만약 피해자가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디지털성폭력에 강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피해자는 조그만 피해도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 피해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례 5)

다) 상담 지원 체계 마련

-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상담 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소리를 내도 자신한테 보복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안전한 장치 이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그리고 애들이 우리도 뭔가 자신이 피해를 당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얘기를 했대 그게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일이 있고, 단지 지지를 받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는 거 같아요. “너의 심정을 이해한다.” 이 정도의 지지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누구 어느 선생님이든 그런 게 뭔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례 2)

-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의 홍보 및 협력 강화

- 상담소에서는 디지털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신속한 삭제지원을 비롯한 처리가 아직까지 충분히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해바라기센터와 상담소 그리고 경찰과의 협력으로 신속한 삭제와 법적인 처리가 진행되지만 일선 상담소와 경찰, 중앙정부의 영상물 삭제지원 등이 충분히 현장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음

삭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 지원부터 같이 (...) 삭제 지원이나 아니면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걸 그게 이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 (사례 5)

삭제지원도 하고, (...) 최초 수사 단계에서 증거 수집하고 피해자 접촉 최소화, 왜냐하면 피해자를 자주 접촉할수록 피해는 더 생기는 거니까. 원스톱으로 피해 조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디지털성폭력은 SNS인데 그 추적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례 14)

-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심리지원과 의료지원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

디지털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심리지원이 중요할 것 같아요. (...) 이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을 다시 만날 때도 그게 그 피해가, 계속 피해 때문에 힘들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치유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례 5)

-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쉼터 마련 및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보호 쉼터가 필요함

(피해자 보호 공간) 개인의 공간이 필요해요. (...) 좀 좁더라도 개별적인 방들이 좀 여러 개 있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 전문적인 심리치료사는 따로 또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 정말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도 한두 분 계셨으면 좋겠다. (사례 4)

쉼터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 긴급피난처가 있긴 한데 (...) SNS를 사용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회사를 다니게 되면 그게 조금 차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분간은 회사를 못 다니게 된다, 좀 심리안정을 위주로 하자. 라고 하는데, 그분들 디지털성폭력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직장생활 다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게, 20대도 있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쉼터가 있으면 거기에서 좀 바깥 활동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쉼터가 있으면, 좀 그분한테는 훨씬 더 좀 자유롭게 활동하면서도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 외부로부터 제약도 조금은 풀어 주고 자기가 SNS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쉼터 있잖아요. (사례 5)

○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공백이 많은 상황이며, 의료비와 보호시설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함

일상 영역에서 30일 보호하고 뭐 이런 것 밖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따로 있

는 게 아니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례 4)

라) 법적 제도 마련 필요

○ 데이트 폭력에 대한 독자적 제재 규정이 필요

- 데이트 폭력 관련하여 법적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보완이 필요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이랑 똑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 형사사건에 가서 이게 처벌이 되고 이러려면 죽도록 맞아야 돼요. (...) 그런데 합의해서 끝나버리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 겉으로 드러난 그런 물리적인 피해 말고, 정서적인 피해가 어떤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을 처벌하고, 분리하고, 이런 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법들도 사실은 있어야 되겠죠. (사례 4)

○ 합리적 처벌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어야 함

그래도 어느 정도 가해자에게 처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미미하니까 해 봤자 소용도 없고 다시 또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사례 5)

5. 소결

가. 피해자 심층면접 결과

1)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안 피해

- 참여자들은 대부분 막연한 일상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의 피해사례를 접할 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학교나 길거리, 공원 등 공공영역에서 화장실 사용에 대한 불안 등 일상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 참여자들이 느끼는 일상적인 불안은 직접경험이 아닌 언론 보도 등을 통한 간접경험을 통해서도 느끼게 됨
- 면접자들은 학교행사나 교사와의 관계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적 굴욕감·성적 불쾌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진 사건보다 자신이 속한 학교에

서 발생했거나 지인이 연관된 성폭력 사건을 중요하게 언급함

- 일터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도 나이가 어린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객이나 학생에게 성희롱 피해를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길거리 등 대중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경험을 진술하기도 함

2) 디지털성폭력 피해 및 대응

가) 피해 유형 : 여성혐오, 불법촬영 및 유포, 그루밍 등

- 디지털 공간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 특히 커뮤니티 내에서 나타나는 혐오 현상이 심각함
- 디지털 공간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난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게시물 등에서 성적 대상화를 통한 모욕과 비하 댓글이 나타나고 있고 페미니즘을 표현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 만연
- 불법 촬영, 몸캠
 - 3명의 면접자가 화장실 불법촬영 경험이 있었고 시간이 지난 뒤에도 피해경험에 대한 감정적 고통이 있었음
 - 성적인 사진을 전송하라고 강요하면서 이별 통보나 협박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사례가 있음
- 유포 및 유포 불안
 - 불법 촬영물 유포를 목격하는 사례가 있고, 주로 단톡방이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유포되었으며 데이트 관계에서 촬영을 하고, 촬영물이 유포되는 사례도 있었음
 - 유포불안은 어떤 촬영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할 불안감이 매우 크지만,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촬영물을 요구하지는 못하고 성적 촬영물의 경우 타인에게 전송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매우 큼
- 단톡방 등에서 외모에 대한 언급과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실제 비난이나 조롱 피해로 이어지기도 함.
- 익명성을 기반으로 사진 도용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타인의 계정 프로필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가는 경우도 나타남

- 온라인 그루밍으로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조건만남에 노출되는 중학생이 다수 있음

나)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

- 디지털성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
 -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일종의 놀이처럼 인식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몸을 보여주고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음
 - 가해자와 계속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친밀한 관계인 경우에는, 사건으로 처리하기가 힘들고 간단하게 사과만 받고 끝내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도 함
-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는 남성이라도 남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감하는 발언을 하기가 어려움

다)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및 대응

-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하거나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며,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하며 자책하고, 자신의 몸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음
-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보고 심리적·정서적·신체적으로 두려운 반응을 경험함
- 신뢰하던 관계에서 불법 촬영이나 유포의 피해를 경험했을 때에는 누구도 믿지 못하여 대인관계를 불신하게 됨
- 피해 경험 시 누구에게도 드러내기 힘들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고, 친한 친구에게만 어려움을 이야기 함
- 피해 이후 두려움이 지속되고 피해를 재경험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일상에 영향을 줌
 - 계속해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고, 피해가 두려워 SNS 등을 차단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등 온라인 활동에 제약이 생김.
- 제주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소문이 퍼지고 피해 사례가 공유되면서 개인 정보가 드

러나거나 피해자가 특정되기도 함

3)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

- 이별 통보했을 때 폭력을 경험하며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지속하기도 함.
- 스토킹 피해 경험 시 1인 여성 가구의 경우 공간을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피해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음
-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 동아리 활동 중단, 외출금지, 옷차림 단속, 휴대폰 검사 등 행위통제 경험 사례가 나타남
- 남성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길거리에서 강제추행을 경험하지만 화를 낼까 봐 거절하지 못하고 손을 치우는 방법이나 돌려 말하는 등의 소극적으로 대응함
- 데이트 폭력에서 여성이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방어능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며, 성적 소문으로 인해 남성보다 피해를 더 크게 경험함
- 피해 경험 시 사적인 문제로 보고 개인적으로 해결하거나, 친구들에게 경험을 나누고 있고 상담기관은 잘 알지 못하며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상담 및 치료에 부담감 있음
- 가해자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평판이 좋은 경우에는 드러내기가 어렵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 피해자 지원 기관에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상담하는 것이 어려움
- 헤어지고 난 후에 상대와의 일상적인 경험 중 데이트 폭력임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4) 정책 욕구

-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인식개선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이 필요함
- 피해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폭력 행위가 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예방교육이 필요함
- 피해 청소년들은 상담이나 신고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드러낼 수 없어 보호자 동의 절차 없이 익명으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

련이 필요함

- 트라우마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 가해자와의 신속한 분리조치,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에게 생계비 지원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보완되어야 함
- 디지털성폭력을 예방하고 여성혐오 현상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 청소년 또래 문화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함

나. 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1) 피해 발생 양상

가) 디지털성폭력

- 유포 피해로 대인관계 문제 등 다른 심각한 문제가 파생되고 실제 영상물의 존재 여부를 떠나 막연한 두려움, 유포 불안으로 인해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피해를 지속시키는 경향이 있음
- 저연령 피해자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그루밍 피해가 심각하며 20대는 데이트 관계나 선후배 관계에서 디지털성폭력이 다수 발생

나) 데이트 폭력

- 통제 폭력과 신체 폭력, 협박까지 동반되어 나타나지만 피해자가 관계를 단절하기가 어렵고 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반복된 폭력으로 무감각해짐
- 데이트 관계에서 강제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동의 촬영물을 유포 협박의 도구로 사용함

2) 피해자 심리적 상태 및 피해의 영향

- 당혹감, 대인관계불신, 자신을 원망하며 데이트 관계에서 반복된 용서하기를 통해 악순환이 지속되고 스토킹 피해에도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함
- 가해자를 벗어나기 힘든 구조 때문에 결혼까지 연결되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함
-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계속 쫓겨다니는 상황으로 인해 거주 공간에 대한 불안감이

많고 이동이 잦음

3) 대응이 어려운 이유 : 알려질까봐 두려움, 촬영물 유포불안, 심리적 고립

- 피해자는 지역 사회에 알려질까 두려워서 상담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불안해 함
- 데이트 폭력에서도 주변인의 경우 지역 사회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있어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함
- 촬영물의 유포 협박이나 유포 불안으로 인해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심리적·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황으로 피해자와 주변의 모든 시선이 다 무섭고 도움을 청하지 못함

4) 정책 욕구

- 제주 지역의 성교육이나 폭력 예방 교육이 내실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 개념 및 디지털성폭력 예방 교육 중요함
- 도의 성평등정책관실 등 주무부서와 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성교육 및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함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전담팀 구성이 필요함
- 경찰 등 안전망 확보를 위한 협업 필요
 -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담 경찰관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지원,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상담기관과 연결할 수 있도록 경찰의 관심이 필요함
-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상담 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의료비와 보호시설 등 보완방안 마련
-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적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보완이 필요

정책제안

- 1.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2. 정책제안

1.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가.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디지털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련법과 제도의 인식 부족

-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적인 환경에서 정보통신 윤리교육 경험은 전체적으로 절반(43.2%)정도가 수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응답자의 10.6%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연령별로는 10대(59.0%)가 가장 높고 40대(31.4%)가 가장 낮게 나타나 여전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필요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할 수 있음
- 폭력예방교육이나 성평등 교육 경험은 전체적으로 74.5%로 정보통신 윤리교육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30대 71.9%, 40대 60.7%) 폭력예방교육 경험이 적어 공직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일반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할 수 있음
-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약 14%,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 75.3%를 차지하여 새롭게 개정된 조항이 많은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는 대체로 부족하다 할 수 있음, 특히 ‘음란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 항목에서 79.2%가 안다고 응답해 가장 인지도가 낮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법에 대한 인지가 낮게 조사되어 음란물 영상 전달이나 상대방 몰래 영상물을 촬영하는 행위가 명확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2) 디지털성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에서 성별차이 크고 여성들의 불안감 높음

- 사이버 상에서 성적 메시지 혹은 음란물을 받거나 성희롱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12.6%를 차지하였고 음란 메시지 발신자는 기타(알 수 없음 22.6%)와 온라인을 통해 아는 사람(22.6%)이 가장 높게 나타나 사이버 상의 성폭력 가해대상이 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모르는 사람 30.3%, 주변지인 13.3%)이 남성(온라인을 통해 아는 사람 30.3%, 게임 혹은 동호회 멤버 27.3%) 보다 익명의 대상

으로부터 경험하는 디지털성폭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불안으로 행위가 위축되는 경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SNS 계정의 공개설정 범위 재설정’(36.3%), ‘몰래카메라가 두려워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장소 이용 주저함’(33.1%) ‘온라인에서 일상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음’(27.1%) 항목이 높게 나타나 여성들의 디지털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다 할 수 있음
- 디지털성폭력 피해 시 대응 방법으로 여성은 해당 사이트 완전 탈퇴(14.3%)와 아이디 새로 작성 재사용(12.5%) 순으로 응답한 반면, 남성은 경찰에 신고(17.9%)와 전문상담기관에 도움 요청(14.3%) 순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고,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여성(29.4%)은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남성(66.7%)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은 사이버 상의 이용방법이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반면, 남성은 디지털성폭력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3) 사이버 상 10대의 야한농담, 부모비하 많고 가해행위는 게임이나 채팅을 통해 실행

- 디지털성폭력 가해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 ‘야한농담’이나 ‘부모비하’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남성(9.9%)이 여성(2.8%)에 비해 높았고 특히 1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10대 청소년의 야한 농담이나 부모비하가 가해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채 사용되고 있다 할 수 있음
- 디지털성폭력 가해행위 경험은 성별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성은 이메일이나 문자·전화(30.8%)를 통한 행위가 많고 남성은 게임채팅(53.8%)을 통한 가해행위 경험이 많아 매체의 이용에 성별패턴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고, 가해행위 후 심리적 반응으로는 여성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55.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38.1%), ‘별일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23.8%)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로 감정적인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

4) 디지털성폭력 발생원인 및 필요한 지원

- 디지털성폭력 피해 시 원하는 도움에 관한 응답으로는 1순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법적 제제(여성 40.4%, 남성 26.8%), 피해자 보호 및 지원(남성 27.7%, 여성 20.2%),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여성 18.6%, 남성 15.0%)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고 여성들은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영상물 삭제를 더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음

5) 데이트 폭력 경험 및 대응 : 성별로 매우 다르고 소극적, 관계 안에서 해결 경향 높음

- 데이트 폭력 경험 조사 결과 여성은 '웃차림 간섭이나 제한'(9.1%), '휴대폰이나 이메일·SNS 점검' (7.9%)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휴대폰이나 이메일·SNS 점검'(10.3%),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사용'(8.5%)에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데이트 폭력의 피해가 여성만의 일이 아니지만 여성과 남성의 폭력인식과 경험 유형은 매우 상이하 다 할 수 있음
- 데이트 폭력 경험 시 상대와의 관계 대응에서 여성은 주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32.5%),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감'(15.7%)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주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거나'(36.6%), '가만히 있는'(17.1%)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들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남성은 데이트 폭력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음
- 데이트 폭력 경험 이후 외부적 조치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51.9%)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헤어지겠다고 통보 후 연락 두절'(15.4%), '가족·친구에게 알리고 도움 청함'(14.4%) 순으로 나타났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기관 방문은 매우 적어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처음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매우 심각한 피해가 있어야 외부로 사건을 드러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6) 젠더폭력 정책 수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방지 점검(62.4%),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40.0%),

불법촬영물 삭제지원(39.8%), 여성폭력 핫라인대응시스템 구축·운영(39.7%) 순으로 나타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이나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되는 여성폭력 핫라인대응 시스템에 대한 홍보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를 위한 영상물 삭제지원 확대(31.9%), 디지털성폭력 신고 포상제 실시(14.2%),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13.9%) 순으로 높게 나타나 관련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심층면접 조사 결과 시사점

1)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안감 :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님

- 심층면접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수시로 느끼며 주변 사람들의 경험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접한 정보 등이 불안감의 원인으로 작용함
- 일상적 불안 피해는 실제로 자신의 주변 지인들이 겪은 피해를 내면화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촬영된 영상물이 유포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상시적으로 존재함

나) 디지털 환경에서 10대와 20대의 범죄인식 부족, 여성혐오와 성적 대상화 만연

- 디지털 환경에서 여성혐오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심각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10대나 20대 젊은 세대 구성원들이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장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불법 행위인 줄 알면서도 남성끼리는 피해자를 공감하는 발언을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남아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도 가부장적 분위기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다) 10대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채팅어플 상 피해 심각함

- 피해경험 사례는 불법촬영, 몸캠, 피해 영상물 유포, 사이버 성희롱, 이미지 합성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의 온라인 그루밍 피해, 채팅 어플에서의 피해가 심각하다 할 수 있음

-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의 경우 처음엔 자기 탓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의 두려움이 컸으며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없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됨

라) 소극적 대응 : 가부장적 인식과 지역의 특성으로 드러내기 어려움

- 피해자들은 디지털성폭력과 데이트 폭력 피해를 외부에 드러내기 어려워 개인적으로 해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음
- 데이트 폭력을 드러내기 어려워 강제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피해 촬영물 유포 불안으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함
- 기관 종사자들은 피해자들의 소극적 대응은 지역의 특성 상 금방 개인 신상이 드러나고 소문날까 두려워 피해 경험 이후 신고나 상담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됨
 - 공동체 문화가 강한 특성으로 주변인들도 도움을 주지 않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음

마) 인식개선 교육 : 피해자 책임, 2차 피해, 피해상황 대처법, 폭력행위 개념 교육 필요

- 피해자는 폭력피해가 자기 탓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일부는 연인과 헤어지고 난 후에 폭력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폭력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함
- 심층면접 조사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소문날까 두려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폭력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 의한 2차 피해의 두려움이라 할 수 있음
- 피해자와 기관 종사자들이 강조하는 인식개선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피해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폭력행위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와 맥락, 피해자 책임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현실적인 내용임

2. 정책제안

가. 제주지역 디지털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언

1) 조례 제(개)정을 통한 디지털성폭력 대응 체계 구축

□ 목적 및 필요성

-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에 따라 여성폭력의 범위가 디지털성폭력이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행위 등을 포함할 수 있게 되었음
- 관련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는 ‘기본법’의 목적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디지털성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있지 않음
-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디지털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신종 여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 법령 정비를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관련조항을 추가 하거나 디지털성폭력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디지털성폭력 방지 조례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성폭력 정의 : 새로 개정된 관련법 내용을 포함하되 불법촬영물 제작, 유포, 공유, 소지 행위는 물론 편집, 가공, 합성, 소지 ○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 :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가해자 교정, 실태조사 등 ○ 예방교육 및 홍보 :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실시 ○ 협력체계 구축 : 경찰, 공공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 피해상담, 영상물 삭제, 법률·의료·심리지원 체계 구축 |
|---|

○ 조례 제(개)정 주요 방향 및 내용

- 2020년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전반적인 젠더폭력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지역 내 관련기관의 협력강화를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협력의 정례화
- 디지털 성폭력 등 일상적인 불안에 대한 피해지원 추가
- 종사자 교육 등 전문 교육기관의 기능 및 역할 명시

□ 주요 추진 주체 : 여성가족청소년과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 추진체계 마련

□ 목적 및 필요성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결과 피해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확대, 디지털신고 포상제, 폭력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확대, 그리고 삭제지원, 수사 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을 단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 단위에서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고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에 대응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진흥원의 피해영상물 삭제 및 피해자 지원이 지역단위 피해자들이 이용하기 불충분 할 수 있음
 - 사이버 상으로 진행되는 피해 영상물의 삭제지원 뿐 아니라 의료·심리지원, 법률지원 등 피해경험에 대한 맥락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상담 및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비롯하여 관련업무 기관 간 연계망을 구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

□ 주요 사업 내용

-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원 및 관련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양성, 보수교육)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
- 관련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컨트롤타워 기능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사업
-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지원(디지털성폭력 감시단 운영,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 추진 방법 및 추진 주체

- 관련시설 설치에 필요한 규정(조례 등) 마련
- 디지털성폭력 관련 분야 전문 인력 배치
- 추진 주체 :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3)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목적 및 필요성

- 디지털성폭력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담소에서 전문적인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종사자들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임
-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내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욕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 내용

- 기관 종사자들이 욕구 수렴을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용 도출
- 지역 내 피해자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주요 추진 주체

- 예산지원 :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주체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4) 디지털성폭력 모니터링단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디지털 환경에서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감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 시민 모니터링단은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업무와 디지털성폭력 감시하여 해당 콘텐츠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일을 담당함

□ 주요 사업 내용

○ 모니터링단 운영의 주요 내용¹⁹⁾

- 도민 감시단 모집 및 사전교육에 필요한 매뉴얼 제작
- 모니터링단 모집 및 운영
 - ※ 자원봉사 활동 시간 인정 및 소정의 자원봉사 비용 지급 제안
- 디지털성폭력 감시 및 신고 등 모니터링 후 활동보고서 제출
 - ※ 구글 및 포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커뮤니티 사이트 등
- 도민대상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 및 정책제안
- 감시단은 도에서 위촉, 우수활동가 표창, 신고활동을 위한 온·오프 모임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사이버 상담창구 운영(디지털성폭력 관련 정보 제공 및 피해 예방, 피해 시 지원 안내)
 - ※ 여성폭력 피해지원 시설 협의체(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및, 제주 해바라기센터, 제주지방경찰청 등과 업무 협력

19) 서울시 '인터넷 감시단' 사업 내용 참조 (서울시 '다시 함께' 상담센터 사업담당자와의 면담자료를 정리함)

□ 추진 방법 및 추진 주체

○ 운영절차

- 모니터링단의 감시 및 신고 ⇒ 신고 된 콘텐츠 취합 및 검증 ⇒ 규제처리 및 형사고발
- ※ 신고 된 콘텐츠를 검증하고 처리할 전문 인력 채용 및 관련기관 간 협력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주체 :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5) 청소년 디지털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에서의 10대의 섹드립(야한농담) 페드립(부모비하) 행위 경험이 상당비율(10대 응답자의 12.0%)을 나타내고 있어 디지털 소통과정에 있어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심층면접 결과 피해 청소년들은 상담이나 신고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드러낼 수 없었다고 하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자해나 자살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 동의 절차 없이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한 체계가 필요함
- 디지털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구제 절차와 장치가 필요하며,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지원 체계로 수립되어야 함
 - 청소년은 디지털성폭력 피해 경험 시 혼자 전전궁궁하다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나, 부모나 양육자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의 단톡방 사건 등 디지털성폭력 발생에 따른 심각성에 비해 청소년 지원 체계에서는 별도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주요 사업 내용

- 교육청 양성평등 조례 제정을 통한 추진기반 마련
 - 전담부서 설치, 성평등 교육에 디지털 교육 추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 포함

- 교육청 내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 구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담 체계 구축

□ 주요 추진 주제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협력주체 :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내 양성평등 전담부서의 설치(안)
 - 설치목적
 - 제주지역 학생의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
 - 도내 양성평등 교육 정책 수립 및 성과향상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양성평등 전담부서의 업무내용
 - 양성평등 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성교육, 디지털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 인식개선 교육 실시, 홍보 및 캠페인)
 - 학교 성폭력 대응 및 사안 처리
(성폭력, 성희롱 스쿨미투 등 사안처리, 관련 통계관리 등)
 - 성 주류화 제도 정책 발굴·운영 및 성인지 정책 이행점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실행 및 성과관리)
 - 추진체계
 - 도교육청 교육국 내 민주시민교육과 양성평등팀 설치·운영²⁰⁾
 - 담당인원 : 양성평등 교육 전문가,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 최소 2명 영입

6)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의 내실화

□ 목적 및 필요성

- 조사결과 디지털성폭력에 관한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

20) · 서울시 교육청 : 평생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운영(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http://buseo.sen.go.kr/web/services/staff/BuseoStaffList.action?searchBean.searchVal=80>)
 · 인천시교육청 : 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성인식개선팀 운영(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ice.go.kr/charge/info.do?&m=21&s=ice&depart=2>)

도 낮은 편이라 할 수 있고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이수경험 비율도 높지 않아 관련 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함

-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 중 디지털성폭력에서 여성의 이미지가 거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불법 촬영물의 수요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범죄 양상과 문제의 원인을 인권적 관점·성인지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함

□ 주요 사업 내용

- 성인지 관점의 정보통신 윤리교육 및 디지털성폭력 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점진적으로 수준별, 단계별 프로그램 구성 및 배급
 - 내용 :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 제도,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뿐만 아니라 소비를 통한 가담 행위(게시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시청, 댓글 달기, 저장, 소지 등) 등

□ 주요 추진 주체

- 주요 추진 주체 : 성평등정책관
- 협력주체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도 교육청

7) 디지털성폭력으로부터의 일상적 불안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

□ 목적 및 필요성

- 설문조사 결과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불안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온라인상에서의 공개범위 재설정, 불법촬영의 두려움으로 공공장소 이용을 주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디지털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일상적인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됨
- 심층면접 결과 디지털성폭력은 피해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여성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며,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시설 시용에 불안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일상적으로 느끼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및 유포 우려에 대하여 불안한 내담자들을 유형화 하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피해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범죄 불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 내용

- 유포 불안 등 일반적 피해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불안 상담 지원
- 관련정보 제공, 사이버 상에서 함께 검색, 피해자 지원내용 및 절차 안내 등²¹⁾

□ 주요 추진 주체

- 예산지원 :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주체 :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도내 성폭력상담소 등

8) 젠더폭력 현황과약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

□ 목적 및 필요성

- 디지털성폭력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적인 통계가 부족함, 특히 디지털성폭력 관련 범죄가 유형화되어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사건에 대한 새로운 유형화와 통계생산이 필요함

□ 주요 사업 내용

- 지역의 대표적인 조사인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디지털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관련내용은 추가를 통한 현황파악
- 젠더폭력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21) 일부 디지털성폭력 전문상담소에서는 직접적인 폭력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피해 불안에 대한 잠재적 피해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상적인 불안감소를 위해 만약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어떤 제목 일지를 상상해서 내담자와 함께 검색하고 일련의 검색과정과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내담자들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종사자와의 면담자료를 정리함)

□ 주요 추진 주체

- 주요 추진주체 :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추진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나. 제주지역 데이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언

1)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목적 및 필요성

- 피해자 지원 기관의 경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법적 근거가 없고 지침도 없으며 상해가 있어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독자적인 제재 규정이 마련이 시급하며, 데이트 폭력의 법적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보완이 필요함
- 지난 국회부터 현재 다수의 데이트 폭력 처벌법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이 여성폭력으로 명시됨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관련정책에 데이트 폭력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게 됨
- 데이트 폭력에 관한 처벌조항이 따로 없어 현재 경찰청에서는 가해자 중 연인이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한 검거 사례를 데이트 폭력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각 경찰서의 '데이트 폭력 근절' TF 팀에서 처리한 현황을 수기로 취합하는 정도임(3장 참조)

□ 주요 사업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정비 및 관련시책 마련을 통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 여성폭력방지 조례 안에 관련 내용 추가 검토

□ 주요 추진 주체 : 여성가족청소년과

2) 피해자 지원 강화

☐ 목적 및 필요성

-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통계에 의하면 2019년 데이트 폭력 상담건수는 무려 321건(1366 제주센터 홈페이지 <http://www.hotline1366.or.kr/>)에 달하고 있으나 가정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체계가 없어 의료지원 및 상담지원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근거 마련 및 피해지원이 필요함
-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지역 사회에 알려질까 두려워서 상담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상담 채널을 확보하거나, 상담요청 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공간 등을 제공하여 상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어야 함
-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공백이 많은 상황이며, 의료비와 보호시설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함

☐ 주요 사업 내용

- 기존의 여성폭력 피해지원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데이트 폭력 추가지원
- 필요 시 인력 및 예산 확대

☐ 주요 추진 주체 : 여성가족청소녀과

3)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다각화 및 예방교육 내실화

☐ 목적 및 필요성

- 데이트 폭력을 피해자는 피해 당시에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고 시간 경과 후 당시의 경험을 폭력으로 알아차리고 있음, 따라서 데이트 폭력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꼭 필요하며 특히 성인기를 시작하는 대학생 등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의 특정 교육 대상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함
- 데이트 폭력 예방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대상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에 맞는 교육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함

- 여성들은 데이트 폭력과 함께 일상적인 범죄 불안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고, 스스로 방어 능력이 낮다는 생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피해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기방어훈련을 통해 불안감을 낮추고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인 교육이 필요함

□ 주요 사업 내용

-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다각적 홍보
 - 대학가나 기타 핫스팟을 중심으로 데이트 폭력의 유형과 대처방법 등 매뉴얼 제작 및 홍보
 - 미디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 전 도민 대상 홍보도 필요함
- 데이트 폭력 특성을 반영한 폭력예방교육 및 성평등 교육 실시

□ 주요 추진 주체

- 주요 추진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주체 : 제주 양성평등교육센터, 제주도 교육청, 각급학교 등

다. 젠더폭력 가해자 교정 지원 확대

□ 목적 및 필요성

- 여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해자 교정은 매우 중요함
- 현재 여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은 검찰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자,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 및 수강명령과 보호처분이 결정된 사람 등이 대상이고 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자, 지적장애인 가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른바 존스쿨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디지털성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 가해자 대상 교정 프로그램

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제주지역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 교정과 성매매 구매자 교육은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은 상담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법적인 처벌 뿐 아니라 기업, 대학, 공공기관 및 단체의 성폭력 대책위원회에서 교육을 결정한 가해자에 대한 교육도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함, 이를 위해 도정의 지원이 필요함
 - 지역에서 상시적인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집합교육으로 진행되고 현재 이를 담당할 기관이 부족하고 운영도 부실함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행위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 행위자 및 관련 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등 관련 내용을 교정 프로그램에 우선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 내용

- 제주보호관찰소와 일선 성폭력 상담소, 교육청, 경찰청, 전문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을 교정 프로그램에 추가
- 디지털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정 사업을 확대 추진
 - 법적 처벌 뿐 아니라 기관 추천 및 위탁자 등으로 교육 대상 확대
 - 강사 역량강화 및 전문기관 지원을 통한 교육 기반 마련

□ 주요 추진 주체 : 여성가족청소년과

참고문헌

- 강희영. 2017. 「서울시 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5. 「국제개발협력과 젠더용어해설집」.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젠더분과 보고서.
- 김영주. 2018. 「타 시도 젠더폭력 시책 사례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제3판」. 아카데미프레스.
- 김경화·김수아. 2019.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 교육부.
- 박선영. 2019.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입법 의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제 24차 젠더와 입법포럼. 국회 아동·여성 인권정책 포럼
- 서울특별시. 2018. 「디지털성폭력유통실태 보고서 - 2018서울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최종결과보고서」.
- 신상숙. 2018.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연속선 : 통합적 접근의 모색”. 「페미니즘연구」 18권 1호 p. 267-301.
- 안정민. 2018.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조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승미. 2017. 「디지털성폭력 방지 방안 연구」. 서울여성가족재단.
- 이화진.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 -성폭력 실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화진. 2015. 「제주지역 여성폭력 총합적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화진 외. 2017. 「여성폭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 장미혜 외.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장미혜 외. 2017.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전윤정. 2020.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 1690호.
- 정지숙. 2018. 「경상북도 젠더폭력 실태 및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정혜원. 2018. 「경기도 데이트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주혜잔·김성곤. 2019. 「대전광역시 20대 여성의 안전인식 및 실태조사」.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 홍미영. 2018. 「데이트폭력,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여성가족 브리프 제 37호.
- 홍영오·연성잔·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정임 외. 2018.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여성가족부.
- 경찰청. 2019. “경찰, 사이버 조직·인력을 대폭 늘려서 사이버 성폭력·도박 등 총력 대응”. (2019.1.25.)
보도자료.
- 교육부. 2019. “2019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2019.8.26.)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0. “디지털성폭력,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2020.4.23.)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2020. “여가부, 텔레그램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 소홀함 없도록 끝까지 지원한다”. (2020.4.1.) 보도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2018. “제주도, ‘미투’ 확산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 나서”. (2018.3.23.) 보도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2018. “지역협력체계 운영으로 폭력 없는 안전 제주 실현”. (2018.3.30.) 보도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2020. “만·관·경 협력하여 디지털성폭력 예방한다!”. (2020.5.3.) 보도자료.
- 제주지방경찰청. 2019. “제주지방경찰청, 성범죄 유관기관 합동정책 간담회 개최”. (2019.11.21.) 보도자료.
- 제주지방경찰청. 2020. “제주경찰청, 디지털성폭력 유관기관 협업 간담회 개최”. (2020.4.8.) 보도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 “도교육청,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온라인 조사)결과”. (2019.8.28.) 보도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0.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 제주지방경찰청. 2020. 내부자료.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buseo.sen.go.kr/web/services/staff/BuseoStaffList.action?searchBean.searchVal=80>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ice.go.kr/charge/info.do?&m=21&s=ice&depart=2>

대검찰청 범죄통계 <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경찰청 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3_2019.jsp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21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 http://www.mogef.go.kr/io/ind/io_ind_s044d.do?mid=info310

미국 사이버 인권 기구 홈페이지 <https://www.cybercivilrights.org/>

<https://esi.swgfl.org.uk/Home/Swgfl/Index>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UN General Assembly 1993. 12. 20). A/RES/48/104. <http://www.un-documents.net/a48r104.htm>

Henry, Nicola & Powell, Anastasia & Flynn, Asher & Gendered Violence and Abuse Research Alliance & RMIT University. Centre for Global Research et al. (2017). Not just ‘revenge pornography’ ; Australians’ experiences of image-based abuse; A summery report. RMIT Univerdity, Melbourne. e Safety Office Research.

부 록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RPE20200717

ID A1-4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	4
--	--	--	--	---	---

안녕하십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제주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상대 성(性)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으로 주로 여성폭력을 말함,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대표적 형태)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제주지역의 여성폭력의 피해현황과 지원 및 관련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06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조사대상 : 제주도 거주 성인 남·여
- 연구기관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책임연구 : 이화진 연구위원 (☎ 720-4932)
- 조사기관 : 리서치플랜비(주) ☎ 010-2015-0240, withplanb@gmail.com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의 인적 사항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이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일반 사항 및 특성			
1.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③ 기타	()
2. 연령	만 ()세			
3. 최종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대졸	④ 대학원수료이상
4. 거주지	()시 ()읍(면,동)			
	① 제주시 동지역	② 애월읍/한림읍/한경면/추자면	③ 구좌읍/조천읍/우도면	
	④ 서귀포시 동지역	⑤ 남원읍/표선면/성산읍	⑥ 대정읍/안덕면	
5. 결혼유무	①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② 배우자 없음	
6. 직업	① 학생	② 전업주부	③ 직장인	④ 프리랜서
	⑤ 자영업	⑥ 무직	⑦ 기타	

I. 폭력에 대한 인식

문1. 다음은 폭력 인식에 관한 항목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 스킨십은 상대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불법촬영물(몰래카메라)을 다운받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2.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다음과 같은 젠더 폭력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없음	1~3회	4~10회	11회 이상
1) 성추행 (신체적 접촉, 강제키스, 성기접촉, 애무 등)	①	②	③	④
2) 성희롱 (음란한 말, 눈짓, 몸짓 등)	①	②	③	④
3) 강간	①	②	③	④

① 대응하지 않음 ② 가족에게 도움 요청 ③ 친구 또는 동료에게 도움 요청

④ 전문상담기관에 도움 요청 ⑤ 경찰에 신고 ⑥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알림

⑦ 선생님, 직상상사에게 도움 요청 ⑧ 기타 ()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③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문9. 귀하는 다음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과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항목	안다	모른다
1) 통신매체(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범죄이다	①	②
2)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였으나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했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받는다	①	②
3)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의 복사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 된다	①	②
4)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①	②
5) 누군가의 얼굴사진에 신체가 노출된 타인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다	①	②
6)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①	②

문10. 다음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은 그 사진(영상)을 찍은 여성의 잘못이다	①	②	③	④
2) 성관계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어도 피해자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3) 가해자를 밝히는 것이 너무 어려우며 처벌도 매우 가볍다	①	②	③	④
4) 피해 사진이나 동영상 삭제 서비스는 완전하게 처리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11.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 혹은 음란물을 받거나 성적인 희롱/비하/공격하는 댓글, 쪽지, 문자 등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광고성 스팸문자나 스팸메일 제외)

- ① 받아본 적이 있다 [☞ 12번으로 이동] ② 받아본 적 없다 [☞ 15번으로 이동]

문12. [☞ 11번 ① 응답자] 최근 1년 동안 경험이 있다면 그 빈도는 얼마나 됩니까?

- ① 1-3회 이하 ② 4-10회 ③ 11-20회 ④ 21회 이상

문13. [☞ 11번 ① 응답자] 귀하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중복 응답]

- ① 온라인을 통해 아는 사람(SNS 친구 등) ② 카페(팬클럽 포함) 회원이나 블로거
③ 게임 또는 동호회 멤버 ④ 선생님 혹은 직장상사

- ⑤ 주변지인(종교, 이웃 포함)
- ⑥ 현재 연인 혹은 헤어진 연인
- ⑦ 이성 친구
- ⑧ 동성친구
- ⑨ 가족 및 친척
- ⑩ 기타()

문14. [☞ 11번 ① 응답자] 귀하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중복 응답]

- ① 개인방송(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 ②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 ③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메신저 등)
- ④ 커뮤니티 게시판(게시글, 댓글 포함)
- ⑤ 게임채팅
- ⑥ 채팅어플
- ⑦ 블로그/카페 게시판
- ⑧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

문15. 귀하는 지금까지 불법촬영물의 유포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16번으로 이동]
- ② 없다 [☞ 19번으로 이동]

문16. [☞ 15번 ① 응답자] 귀하가 지금까지 경험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는 어느 것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중복 응답]

- ① 불법 촬영물을 허락 없이 유포
- ② 불법 촬영물의 유포 협박
- ③ 촬영에 동의했으나 허락 없이 유포
- ④ 동의한 촬영물의 유포 협박
- ⑤ 기타 ()

문17. [☞ 15번 ① 응답자] 귀하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중복 응답]

- ① 온라인을 통해 아는 사람(SNS 친구 등)
- ② 카페(팬클럽 포함) 회원이나 블로거
- ③ 게임 또는 동호회 멤버
- ④ 선생님 혹은 직장상사
- ⑤ 주변지인(종교, 이웃 포함)
- ⑥ 현재 연인 혹은 헤어진 연인
- ⑦ 이성 친구
- ⑧ 동성친구
- ⑨ 선배나 후배
- ⑩ 가족 및 친척
- ⑪ 전혀 모르는 사람
- ⑫ 기타()

문18. [☞ 15번 ① 응답자]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중복 응답]

- ① 개인방송(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 ②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 ③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메신저 등)
- ④ 커뮤니티 게시판(게시글, 댓글 포함)
- ⑤ 채팅 사이트(게임채팅, 채팅어플 등)
- ⑥ 블로그/카페 게시판
- ⑦ 성인사이트 혹은 웹하드
- ⑧ 기타()

문19. 귀하는 지금까지 불법촬영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20번으로 이동]

② 없다 [☞ 22번으로 이동]

문20. [☞ 19번 ① 응답자] 불법촬영을 경험했다면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중복 응답]

① 온라인을 통해 아는 사람

② 게임 또는 동호회 멤버

③ 선생님 혹은 직장상사

④ 주변지인(종교, 이웃 포함)

⑤ 현재 연인 혹은 헤어진 연인

⑥ 친구

⑦ 선배나 후배

⑧ 가족 및 친척

⑨ 전혀 모르는 사람

⑩ 기타()

문21. [☞ 19번 ① 응답자] 귀하가 지금까지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장소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중복 응답]

① 집(나의 집, 가해자의 집, 제3자의 집)

② 주택가나 골목(아파트 단지, 도시 및 마을 주택 주변)

③ 학교 및 주변(교실, 복도나 계단, 화장실 등)

④ 인구밀집 지역(시장, 상가, 식당, 유흥가, 극장 등)

⑤ 공공기관, 사무실, 광장 등

⑥ 야외, 유원지, 공원, 주차장 등

⑦ 대중교통 시설(버스, 택시 등)

⑧ 기타 ()

문22. 귀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우려되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있다	없다
1) 내 사진이 잘못 사용될까봐 SNS 계정의 공개설정 범위를 확인하고 재설정했다	①	②
2) 온라인에서 누군가 나를 엿보거나 감시할까봐 내 일상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	①	②
3) 온라인에 유포된 내 사진이나 영상을 본 사람이 있을까봐 외출을 자제했다	①	②
4)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공격을 받을까봐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웠다	①	②
5) 몰래카메라가 있을까봐 두려워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장소 이용을 하지 않은 적이 있다	①	②
6) 나의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의 두려움으로 억지로 연인관계를 유지한 적이 있다	①	②

Ⅲ. 디지털 성범죄 대응

- ③ 피해자 지원 기관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④ 개인 정보보호와 2차 가해 방지
 ⑤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⑥ 학교 또는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
 ⑦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적 제재
 ⑧ 기타 ()

문28. 귀하께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주된 원인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
 ② 성인권이나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③ 디지털 기기사용에 대한 윤리의식 부족
 ④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심코 업로드
 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처 부족
 ⑥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낮은 사회적 관심
 ⑦ 관련법의 처벌조항 미비함
 ⑧ 기타 ()

문29. 귀하는 최근 1년 사이 무심코 아래 항목에 대한 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있다	없다
1) 온라인에서 섹드립(야한농담)이나 패드립(부모 비하)	①	②
2) 노출 사진이나 성관계영상에 지인 얼굴을 합성	①	②
3)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다리, 가슴 등) 혹은 성관계 동영상 촬영	①	②
4)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혹은 영상을 전송하거나 온라인 게시	①	②
5) 상대방의 신체 또는 성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함	①	②
6) 성행위나 신체노출을 촬영하자고 또는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	①	②
7) 나의 신체일부 또는 자위행위를 촬영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 혹은 온라인 게시	①	②

문30. [☞ 29번 하나라도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는 어디에서 이러한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중복 응답]

- ① 개인방송(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②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③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다이렉트 메시지 등)
 ④ 커뮤니티 게시판(게시글, 댓글 포함)
 ⑤ 게임채팅
 ⑥ 채팅어플
 ⑦ 블로그/카페 게시판
 ⑧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

문31. [☞ 29번 하나라도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위의 경험을 한 후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문32. 다음은 연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념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문33. 다음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연인의 일정을 통제하고 옷차림을 제한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①	②	③	④
② 연인과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①	②	③	④
③ 연인의 말에 위협과 모욕을 느낀다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④ 호의로 빌려준 돈이라도 갚지 않는다면 경제적 폭력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을 정도라면 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⑥ 바람을 피우면 연인에게 맞을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⑦ 원하지 않는 섹스동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찍는 것도 폭력이다	①	②	③	④
⑧ 나의 기분과 상관없는 성적 행위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① 여성을 비하하는 분위기 ② 여성안전에 대한 정책 부족 ③ 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 소홀

④ 신종 피해에 대한 정책 부족 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약 ⑥ 가부장적 사고와 문화

⑦ 기타 ()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619-01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발행일 2020년 10월 31일

발행인 원 희 룡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건설회관 4층)

T.064-710-6512 F.064-710-6519

<http://www.jeu.go.kr>

인쇄소 한그루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